



---

# 의정활동보고서

---



제278회 정례회(2015. 6. 10 ~ 6. 26)



경 상 북 도 의 회



## 개 회 사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관용 도지사님을 비롯한 이영우 교육감님,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도민의 아낌없는 성원과 기대 속에 출범한 제10대 경상북도의회가 전반기 1년을 되돌아보면서 오늘부터 17일 간 일정으로 제278회 제1차 정례회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비회기 중에 선진국의 주요정책 및 성공사례 등을 비교하는 선진행정 체험연수, 지방자치법 개정 서울 토론회 참석, 연구단체 세미나 개최, 도민의 의견수렴을 위한 현장방문 등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쳐 왔습니다.

특히 지난 5월 27일 경주에서 전라남도 의회와 동서화합을 통한 국민 대통합과 지역감정을 해소하고 상생발전을 위한 동반자적 연대의식을 확인하는 자리를 함께 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도의회와 집행부는 보다 더 나은 내일을 향한 두 지역의 미래비전 공유와 새로운 시너지 창출을 위해 상호협력에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바쁜 지역구 활동에도 화합행사에 적극 동참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장두욱 의원님을 비롯한 김봉교 대표 의원님, 안희영 간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지금 우리들 앞에는 함께 고민하고 풀어가야 할 과제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침체된 지역경기 회복을 위하여 투자유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한·중 FTA 시대에 경북도가 큰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각 분야별 맞춤형 전략수립과 대응체계를 갖추는 한편, 상대적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농업 분야에 세심한 배려로 농업인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실질적인 정책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메르스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하고 확산되어 도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집행부에서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더욱 철저히 대비하여 도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행정력을 모아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도내 일부지역에서는 가뭄으로 인해 농작물 피해는 물론 식수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가뭄지역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와 비상급수 대책 마련을 위해 선제적인 대응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올 여름 태풍과 집중호우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주변에 재난 취약시설과 위험지역을 미리 살펴 도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재해요인을 미리 점검하고 철저한 대비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는 도정질문과 추경안 심사와 지난해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과 각종 조례안 등 안전심의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도정질문 시 심도 있는 질문과 함께 효율적인

정책집행을 유도하는 등 생산적인 질문과 정책대안을 많이 제시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성실하고 책임성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과 결산심사에는 충분한 토론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도민의 입장에서 최선의 선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정례회가 어려운 경제와 무더위로 지친 도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알차고 내실 있는 회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건승과 행복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6월 10일

**경상북도의회의장 장 대 진**

# 차 례

I. 개 황	9
II. 의사일정	12
III. 의안처리	20
IV. 민원처리	21
V. 본회의 보고사항	23
VI. 기타 의정활동	28
VII. 5분 자유발언	58
□ 조주홍 의원(농수산위원회)	58
□ 최태림 의원(행정보건복지위원회)	62

부 록

<input type="checkbox"/> 조 례 안(19건) .....	69
<input type="checkbox"/> 규 칙 안( 1건) .....	259
<input type="checkbox"/> 예 · 결 산 안( 3건) .....	263
<input type="checkbox"/> 동의 · 승인안( 2건) .....	269

## I. 개 황

경상북도의회 제278회 제1차 정례회는 2015년 6월 10일 오후 1시 30분에 본회의를 개최하여 6월 26일까지 17일간의 회기 동안 3차의 본회의와 12회에 걸친 상임위원회와 4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정례회 본회의 의사운영 내용을 개관해 보면, 제1차 본회의는 6월 10일(수) 오후 1시 30분에 개의하여 『제278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014회계연도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교육청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보고』, 『2015년도 경상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휴회의 건』 등의 안건을 처리하였으며,

이어진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에는 농수산위원회 이흥희 의원의 『경북도 성과관리 및 평가 관련』, 『도내 골프장 난립 및 경영악화 관련』, 『경북경제 활성화 관련』, 『구미 양포지구 고등학교 신설 관련』, 건설소방위원회 박문하 의원의 『도청 이전 사전 준비 관련』, 『경상북도 도시기본계획안 관련』, 『행정구역 개편과 읍면동 통폐합 관련』, 『도 산하 위원회 운영 관련』, 교육위원회 광경호 의원의 『도내 개발제한구역(GB) 해제 관련』, 『도내 슬레이트 철거 관련』, 『도의회 예산심의 등 의정활동 방해 관련』,

『도내 학교 건축물 석면 관리 관련』 등 다양한 분야의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폭넓은 질문과 답변이 이어졌다.

2차 본회의는 6월 11일(목)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기획경제위원회 김위한 의원의 『도 예산편성 관련』, 『대경연구원 운영 정상화 관련』, 『낙동강 수질 오염 관련』, 행정정보복지위원회 김정숙 의원의 『교통약자 이동 편의시설 관련』, 『경북도 산하 출자·출연기관의 장애인 고용 관련』, 『교육현장의 인조잔디 유해성 관련』, 문화환경위원회 이진락 의원의 『도 부채 관리 및 상환 관련』, 『교육청 부채 관리 및 상환 대책 관련』, 『경북도 잦은 조직개편 억제방안 관련』, 『지방도 945호선 개설과 지방도 904호선 선형 개량 계획 관련』 등 다양한 분야의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폭넓은 도정질문이 이어졌다.

3차 본회의는 6월 26일(금)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먼저 조주홍 의원의 『농축수산 분야 예산비율 축소 문제점 및 증액 촉구』에 이어 행정정보복지위원회 최태림 의원의 『도청이전신도시 광역개발계획수립 관련』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이 있었다.

이어서 조례안 19건, 규칙안 1건, 예산안 1건, 결산안 2건, 동의·승인안 2건, 규칙안 1건 총 26건에 대한 안전심사가 이루어졌으며 조례안중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5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안』은 수정 가결되었으며 나머지 안건은 모두 원안 가결되었다.

이번 278회 제1차 정례회는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과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경안 심사와 지난해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과 각종 조례안 등 안건심의가 있었고 도정질문 시에는 생산적인 질문과 함께 효율적인 정책집행을 유도하는 등 정책대안을 많이 제시했고 집행부에서도 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성실하고 책임성 있는 답변을 하였다.

특히, 추경과 결산심사에는 충분한 토론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도민의 입장에서 최선의 선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며 어려운 경제와 무더위로 지친 도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알차고 내실 있는 회기가 되었다.

## II. 의사일정

### 1. 소 집

- 가. 집회구분 : 정례회
- 나. 소집근거 : 지방자치법 제44조
- 다. 집회일시 : 2015년 6월 10(수) 13:30

### 2. 회 기

- 가. 회의기간 : 2015년 6월 10일 ~ 6월 26일(17일간)
- 나. 개의횟수
  - 본회의 : 3회(누계 26회)
  - 위원회

(단위: 횟수)

구 분	계	의회 운영	기획 경제	행 정 보건복지	문화 환경	농수산	건설 소방	교육	특 위	
									예결	기타
금 회	16	1	2	2	2	1	1	3	4	0
누 계	150	10	18	21	18	15	16	15	25	12

※ 누계는 제10대 의회 개의횟수

### 3. 활 동

#### 가. 본회의

개 의 일 시	심 의 안 건	비 고
6. 10(수) 13:30 (제1차)	<input type="checkbox"/> 안전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278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li> <li>○ 2014회계연도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교육청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보고</li> <li>○ 2015년도 경상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li> <li>○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li> <li>○ 휴회의 건</li> </ul> <input type="checkbox"/>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흥희 의원(농수산위원회)</li> <li>○ 박문하 의원(건설소방위원회)</li> <li>○ 광경호 의원(교육위원회)</li> </ul>	
6. 11(목) 11:00 (제2차)	<input type="checkbox"/>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김위한 의원(기획경제위원회)</li> <li>○ 김정숙 의원(행정보건복지위원회)</li> <li>○ 이진락 의원(문화환경위원회)</li> </ul>	
6. 26(금) 11:00 (제3차)	<input type="checkbox"/> 5분 자유발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주홍 의원(농수산위원회)</li> <li>○ 최태림 의원(행정보건복지위원회)</li> </ul> <input type="checkbox"/> 안전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li> <li>○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li> <li>○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li> </ul>	

개 의 일 시	심 의 안 건	비 고
<p>6. 26(금) 11:00 (제3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상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li> <li>○ 경상북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li> <li>○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li> <li>○ 2015년도 수시분(2차)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li> <li>○ 경상북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li> <li>○ 경상북도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li> <li>○ 경상북도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li> <li>○ 경상북도 천연가스자동차 구입 의무화 시행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li> <li>○ 경상북도 농식품 수출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li> <li>○ 경상북도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li> <li>○ 경상북도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li> <li>○ 대구도시철도 1호선 하양연장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li> <li>○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li> <li>○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모범공무원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li> <li>○ 경상북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 소속 기관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li> </ul>	

개 의 일 시	심 의 안 건	비 고
6. 26(금) 11:00 (제3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상북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li> <li>○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li> <li>○ 2015년도 경상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li> <li>○ 경상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li> <li>○ 경상북도의회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li> <li>○ 2014회계연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li> <li>○ 2014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li> <li>○ 2015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li> </ul>	

## 나. 위원회

### <의회운영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의 안 건	비 고
6. 15(월) 13: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nput type="checkbox"/>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li> <li>○ 제279회 임시회 회기협의를 건</li> <li>○ 경상북도의회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li> <li>○ 2014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li> <li>○ 경상북도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li> </ul>	

〈기획경제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의 안 건	비 고
6. 12(금) 14:00 (제1차)	<input type="checkbox"/> 안전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li> <li>○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li> <li>○ 경상북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li> <li>○ 경상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li> </ul> <input type="checkbox"/> 2014회계연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획조정실</li> </ul>	
6. 15(월) 11:00 (제2차)	<input type="checkbox"/> 2014회계연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창조경제산업실, 일자리민생본부, 대변인, 미래전략기획단, 투자유치실, 경북개혁추진단</li> </ul>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의 안 건	비 고
6. 15(월) 11:00 (제1차)	<input type="checkbox"/> 2014회계연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독립대학교, 공무원교육원, 여성가족정책관, 복지건강국</li> </ul> <input type="checkbox"/> 안전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li> <li>○ 2015년도 수시분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li> <li>○ 경상북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li> </ul> <input type="checkbox"/> 2014회계연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전행정국, 인재개발정책관, 감사관</li> </ul>	

<문화환경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의 안 건	비 고
6. 11(목) 11:00 (제1차)	<input type="checkbox"/> 2014회계연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input type="checkbox"/> 환경산림자원국 및 관련 사업소 <input type="checkbox"/> 문화관광체육국	
6. 12(금) 11:00 (제2차)	<input type="checkbox"/> 안전심사 <input type="checkbox"/> 경상북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input type="checkbox"/> 경상북도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input type="checkbox"/> 경상북도 미세먼지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input type="checkbox"/> 경상북도 천연가스자동차 구입 의무화 시행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input type="checkbox"/> 2014회계연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input type="checkbox"/> 환경산림자원국 및 관련 사업소 <input type="checkbox"/> 문화관광체육국	

<농수산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의 안 건	비 고
6. 11(목) (본회의 종료후)	<input type="checkbox"/> 안전심사 <input type="checkbox"/> 경상북도 농식품 수출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input type="checkbox"/> 경상북도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input type="checkbox"/> 경상북도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input type="checkbox"/> 2014회계연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input type="checkbox"/> 농축산유통국 <input type="checkbox"/> 동해안발전본부 <input type="checkbox"/> 농업기술원	

〈건설소방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의 안 건	비 고
6. 12(금) 14:00 (제1차)	<input type="checkbox"/> 대구도시철도1호선 하양연장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input type="checkbox"/> 2014회계연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지역균형건설국 ○ 소방본부 ○ 도청신도시본부	

〈교육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의 안 건	비 고
6. 15(월) 11:00 (제1차)	<input type="checkbox"/> 안전심사 ○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교육청 주요업무 보고의 건(추가) ○ 경상북도교육청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교육감소속 모범공무원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 소속 기관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15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6. 16(화) 11:00 (제2차)	<input type="checkbox"/> 안전심사 ○ 2014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6. 17(수) 11:00 (제3차)	<input type="checkbox"/> 안전심사 ○ 2015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의 안 건	비 고
6. 22(월) (제22차)	<input type="checkbox"/> 2014회계연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안전행정국, 인재개발정책관, 공무원교육원, 경북도립대학교 ○ 감사관, 여성가족정책관, 복지건강국 ○ 대변인, 미래전략기획단, 경북개혁추진단, 기획조정실 ○ 투자유치실, 창조경제산업실, 일자리민생본부	
6. 23(화) (제23차)	<input type="checkbox"/> 2014회계연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문화관광체육국, 환경산림자원국, 보건환경연구원 ○ 농축산유통국, 동해안발전본부, 농업기술원 ○ 의회사무처 ○ 도청신도시본부, 지역균형건설국, 소방본부	
6. 24(수) (제24차)	<input type="checkbox"/> 2014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교육청	
6. 25(목) (제25차)	<input type="checkbox"/> 2015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 교육청 <input type="checkbox"/>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 Ⅲ. 의안처리

※ ( )내는 제10대 의회 누계임

구 분	접수 (부의)	심의·의결					철 회	계 류	비 고
		계	가 결		부 결	폐 안			
			원 안	수 정					
계	30 (185)	29 (183)	27 (156)	2 (27)	(1)		1 (1)		
조 례 안	소 계	20 (96)	19 (94)	18 (78)	1 (16)	(1)		1 (1)	
	의 회 제 안	7 (45)	7 (45)	6 (38)	1 (7)				
	도지사 제 출	7 (33)	7 (33)	7 (25)	(8)				
	교육감 제 출	6 (18)	5 (16)	5 (15)	(1)	(1)		1 (1)	
규 칙 안	1 (2)	1 (2)	1 (2)						
예산·결산	3 (12)	3 (12)	2 (6)	1 (6)					
동의·승인	2 (15)	2 (15)	2 (10)	(5)					
건 의 안	(1)	(1)	(1)						
결 의 안	(13)	(13)	(13)						
기 타 안	4 (46)	4 (46)	4 (46)						

#### □ 상임위 계류 중인 안건

- 경상북도교육청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5. 5. 29, 교육감, 교육위원회 유보)

## IV. 민원처리

### 1. 청 원

구 분	접 수			처 리	처리중
	계	이 월	금 회		
금 회					
누 계	1		1	1	

※ 누계는 제10대 의회 실적

### 2. 진 정

#### 가. 접 수

위원회	계	행정	사회문화	교통	건설	교육	경제	환경	농어업	기타
계	7 (41)	1 (20)	2 (4)	(2)	3 (5)	(1)	(4)	(3)		1 (2)
의 회 운 영										
기 회 경 제	(2)						(2)			
행 정 보 건 복 지	3 (9)	1 (3)	2 (4)		(1)		(1)			
문 화 환 경	(6)	(5)						(1)		
농 수 산	(3)	(2)					(1)			
건 설 소 방	4 (15)	(6)		(2)	3 (4)			(2)		1 (1)
교 육	(6)	(4)				(1)				(1)
특 별 위 원 회										

※ ( )내는 제10대 의회 실적

나. 처 리

위원회	처 리					처리중
	계	처 리	불수리	취 하	타기관이송	
계	5 (39)	5 (39)				2
의회운영						
기획경제	(2)	(2)				
행 정 보건복지	3 (9)	3 (9)				
문화환경	(6)	(6)				
농 수 산	(3)	(3)				
건설소방	2 (13)	2 (13)				2
교 육	(6)	(6)				
특별위원회						

※ ( )내는 제10대 의회 실적

## V. 본회의 보고사항

### 1. 의안접수 : 29건

- 조례안 19, 규칙안 1, 예·결산안 3, 동의·승인안 2, 기타안 4

### 2. 처리안건 : 29건

- 가결 29건 - 조례안 19, 규칙안 1, 예·결산안 3, 동의안 2, 기타안 4
- ※ 원안유보 - 1건(경상북도교육청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위원회 및 의원발의 조례·규칙안 : 7건

- (1) 경상북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2015. 5. 29, 김봉교 의원 외 11인)
- (2) 경상북도자연휴양림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5. 5. 29, 김영호 의원 외 9인)
- (3) 경상북도 농식품 수출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2015. 5. 29, 안희영 의원 외 6인)
- (4) 경상북도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5. 5. 29, 한창화 의원 외 1인)
- (5) 경상북도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5. 5. 29, 이흥희 의원 외 4인)
- (6)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5. 6. 15, 의회운영위원회)
- (7) 경상북도의회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조례안  
(2015. 6. 15, 의회운영위원회)

#### 4. 의안 접수 내용

제출·발의자 (접수일)	의안명	소관위원회
경상북도지사 (15. 5. 29)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경제위원회
경상북도지사 (15. 5. 29)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경제위원회
경상북도지사 (15. 5. 29)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경제위원회
경상북도지사 (15. 5. 29)	경상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경제위원회
김봉교 의원 외 11인 (15. 5. 29)	경상북도 북한 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경상북도지사 (15. 5. 29)	2015년도 수시분(2차)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김명호 의원 외 9인 (15. 5. 29)	경상북도자연환경휴양림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문화환경위원회
경상북도지사 (15. 5. 29)	경상북도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화환경위원회
경상북도지사 (15. 5. 29)	경상북도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문화환경위원회
경상북도지사 (15. 5. 29)	경상북도 천연가스 자동차구입 의무화 시행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문화환경위원회
안희영 의원 외 6인 (15. 5. 29)	경상북도 농식품 수출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농수산위원회
한창화 의원 외 1인 (15. 5. 29)	경상북도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농수산위원회
이흥희 의원 외 4인 (15. 5. 29)	경상북도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농수산위원회
경상북도지사 (15. 5. 29)	대구도시철도 1호선 하양연장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건설소방위원회
경상북도지사 (15. 6. 4)	2014회계연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각 상임위에 결특위 (교육위 제외)

제출·발의자 (접수일)	의안명	소관위원회
경상북도교육감 (15. 5. 29)	경상북도교육청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위원회
경상북도교육감 (15. 5. 29)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위원회
경상북도교육감 (15. 5. 29)	경상북도 교육감 소속 모범공무원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위원회
경상북도교육감 (15. 5. 29)	경상북도 교육청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 소속 기관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교육위원회
경상북도교육감 (15. 5. 29)	경상북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교육위원회
경상북도교육감 (15. 5. 29)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위원회
경상북도교육감 (15. 5. 29)	2015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교육위원회
경상북도교육감 (15. 5. 29)	2014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교육위원회
경상북도교육감 (15. 5. 29)	2015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교육위원회 예결특위
의회운영위원장 (15. 6. 15)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운영위원회
의회운영위원장 (15. 6. 15)	경상북도의회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운영위원회

## 5. 조례공포 사항 : 19건

이 송 일	이 송 처	건 명	공 포 일
'15. 6. 29	경상북도 지 사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15. 7. 2 (제3630호)
'15. 6. 29	경상북도 지 사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	'15. 7. 2 (제3631호)
'15. 6. 29	경상북도 지 사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	'15. 7. 13 (제3632호)
'15. 6. 29	경상북도 지 사	경상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	'15. 7. 13 (제3633호)
'15. 6. 29	경상북도 지 사	경상북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15. 7. 13 (제3634호)
'15. 6. 29	경상북도 지 사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	'15. 7. 13 (제3635호)
'15. 6. 29	경상북도 지 사	경상북도자연휴양림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	'15. 7. 13 (제3636호)
'15. 6. 29	경상북도 지 사	경상북도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	'15. 7. 13 (제3637호)
'15. 6. 29	경상북도 지 사	경상북도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15. 7. 13 (제3638호)
'15. 6. 29	경상북도 지 사	경상북도 천연가스자동차 구입 의무화 시행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	'15. 7. 13 (제3639호)
'15. 6. 29	경상북도 지 사	경상북도 농식품 수출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15. 7. 13 (제3640호)
'15. 6. 29	경상북도 지 사	경상북도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	'15. 7. 13 (제3641호)
'15. 6. 29	경상북도 지 사	경상북도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15. 7. 13 (제3642호)
'15. 6. 29	경상북도 지 사	경상북도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15. 7. 13 (제3643호)

이 송 일	이 송 처	건 명	공 포 일
'15. 6. 29	경상북도 교 육 감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7. 2 (제3644호)
'15. 6. 29	경상북도 교 육 감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모범공무원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7. 2 (제3645호)
'15. 6. 29	경상북도 교 육 감	경상북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 소속 기관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7. 13 (제3646호)
'15. 6. 29	경상북도 교 육 감	경상북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7. 13 (제3647호)
'15. 6. 29	경상북도 교 육 감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7. 13 (제3648호)

## 6. 위원회 및 의원연구단체 활동

위원회	일 자	장 소	참석의원	활 동 내 용
행정보건복지 위 원 회	'15. 6. 1	행복위 회의실	위원장 외 6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포항·안동 의료원장 등 임명 추진 현안 논의</li> <li>○ 경상북도 여성정책개발원 관련 감사결과 및 향후 계획 청취</li> </ul>
교육위원회	'15. 5. 27	경주	위원장 외 5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 교육청 업무보고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5년도 교육비특별회계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li> <li>- 2014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검사 결과</li> <li>- 2015년도 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li> </ul> </li> </ul>
미 래 창 조 연 구 회	'15. 6. 1 ~ 6. 2	구미, 부산, 진해	김수용 의원 외 10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창조경제활성화 관련 연구단체회원(의원, 외부전문가), 집행부 등 참석 세미나 개최</li> </ul>

## VI. 기타 의정활동

### 【도 단위 행사】

- 제4회 경북농업마이스터대학 참외과정 과실품평회
  - 일 시 : 2015. 5. 7(목) 11:00
  - 장 소 : 성주 과채류시험장
  - 참 석 : 정영길 위원장
  
- IT의료융합기술센터 준공식
  - 일 시 : 2015. 5. 7(목) 13:30
  - 장 소 : 구미 금오테크노밸리
  - 참 석 : 윤창욱 부의장, 김봉교 의원
  
- 지방자치법 개정 수도권 토론회
  - 일 시 : 2015. 5. 7(목) 14:00
  - 장 소 : 서울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
  - 참 석 : 장대진 의장, 장경식 부의장, 홍진규, 윤성규, 이영식, 배한철, 구자근, 최병준 위원장, 김응규, 도기욱, 박영서, 이진락, 조현일 의원
  
- SK플라즈마 안동혈액제공장 기공식
  - 일 시 : 2015. 5. 7(목) 14:00
  - 장 소 : 안동풍산 바이오산업단지
  - 참 석 : 김인중 의원

○ 제53회 도민체전 환영 리셉션 및 개회식

- 일 시 : 2015. 5. 8(금) 16:30
- 장 소 : 영주 시민운동장
- 참 석 : 장대진 의장 등 도의원 44명

○ 제125주년 세계노동절 기념대회

- 일 시 : 2015. 5. 9(토) 11:30
- 장 소 : 경산 실내체육관
- 참 석 : 장경식 부의장

○ 제53회 경북도민체육대회 폐회식

- 일 시 : 2015. 5. 11(월) 18:00
- 장 소 : 영주 국민체육센터
- 참 석 : 박성만, 황병직 의원

○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검사

- 일 시 : 2015. 5. 11(월)~30(목) 10:00
- 장 소 : 결산검사장 및 시군 등 현지 검사장
- 참 석 : 장두욱, 김봉교, 안희영 의원

○ 제27회 경상북도지사기 노인게이트볼 대회 개회식

- 일 시 : 2015. 5. 13(수) 10:30
- 장 소 : 문경 영강체육공원
- 참 석 : 고우현, 박영서 의원

- **베폐사그룹-경상북도, 포항시 투자양해각서 체결식**
  - 일 시 : 2015. 5. 13(수) 11:00
  - 장 소 : 포항시청 회의실
  - 참 석 : 김희수, 이정호 위원장, 박문하, 박용선 의원
  
- **국방신뢰성센터 유치 MOU체결**
  - 일 시 : 2015. 5. 14(목) 15:00
  - 장 소 : 도청 제1회의실
  - 참 석 : 윤창욱 부의장
  
- **제34회 스승의 날 기념식**
  - 일 시 : 2015. 5. 15(금) 10:00
  - 장 소 : 도교육청 별관회의실
  - 참 석 : 장경식 부의장
  
- **2015 경상북도 가정의 달 기념식**
  - 일 시 : 2015. 5. 15(금) 14:00
  - 장 소 : 칠곡군 교육문화회관
  - 참 석 : 윤창욱 부의장, 김정숙 의원
  
- **2015년 미스코리아 경북 선발대회**
  - 일 시 : 2015. 5. 17(일) 18:00
  - 장 소 : 영덕 축산항
  - 참 석 : 황재철 의원

- **해경-해양과학고 해상재난훈련**
  - 일 시 : 2015. 5. 18(월) 11:00
  - 장 소 : 포항해역
  - 참 석 : 장경식 부의장
  
- **경주 스마트 미디어 센터 착공식**
  - 일 시 : 2015. 5. 18(월) 14:00
  - 장 소 : 경주시 천군동
  - 참 석 : 장경식 부의장, 배진석, 이진락 의원
  
- **韓-中 우호 상징탑 제막식**
  - 일 시 : 2015. 5. 18(월) 15:00
  - 장 소 : 중국 산시성 시안
  - 참 석 : 윤창욱 부의장
  
- **2015 전국 조사료 생산 연사회**
  - 일 시 : 2015. 5. 20(수) 14:00
  - 장 소 : 구미시 고아읍 물목들
  - 참 석 : 윤창욱 부의장, 김봉교 의원
  
- **제11회 대한민국 청소년박람회 개막식**
  - 일 시 : 2015. 5. 21(목) 14:00
  - 장 소 : 구미 컨벤션센터
  - 참 석 : 윤창욱 부의장, 이태식, 장영석 의원

- **경상북도의회 제3회 청소년 의회교실**
  - 일 시 : 2015. 5. 22(금) 10:00
  - 장 소 : 본회의장
  - 참 석 : 고우현, 박영서 의원
  
- **한국유네스코 경북협회주관, 제7회 영어응변대회**
  - 일 시 : 2015. 5. 22(금) 14:00
  - 장 소 : 경북학생문화회관
  - 참 석 : 장경식 부의장
  
- **경북 SW융합클러스터 조성공모사업 현장실사 격려**
  - 일 시 : 2015. 5. 22(금) 14:00
  - 장 소 : 포항 TP
  - 참 석 : 김희수 위원장
  
- **농식품부장관 모내기 행사**
  - 일 시 : 2015. 5. 23(토) 11:00
  - 장 소 : 경주 안강읍 육통리
  - 참 석 : 이동호 의원
  
- **대한미용사회 경상북도지회 정기총회**
  - 일 시 : 2015. 5. 26(화) 11:00
  - 장 소 : 구미 호텔금오산
  - 참 석 : 윤창욱 부의장

- **경북형 한옥포럼 창립 총회**
  - 일 시 : 2015. 5. 26(화) 14:00
  - 장 소 : 도청강당
  - 참 석 : 장대진 의장, 윤성규 위원장, 박문하 의원
  
- **「국회지방살리기 포럼」 현장 세미나**
  - 일 시 : 2015. 5. 26(화) 14:30
  - 장 소 : 구미 상공회의소
  - 참 석 : 윤창욱 부의장
  
- **2015년 일자리한마당 개막식**
  - 일 시 : 2015. 5. 27(수) 10:30
  - 장 소 : 경주 화백컨벤션센터
  - 참 석 : 배진석 의원
  
- **제17회 도 수산업경영인 대회**
  - 일 시 : 2015. 5. 27(수) 11:00
  - 장 소 : 경주 한수원 원자력공원
  - 참 석 : 장경식 부의장, 한창화 위원장, 장두욱, 이동호, 장용훈, 조주홍 의원
  
- **국립멸종위기종 복원센터 착공식**
  - 일 시 : 2015. 5. 27(수) 13:30
  - 장 소 : 영양군 대천리
  - 참 석 : 남천희 의원

- **전남·경북도의회 상생발전 화합대회**
  - 일 시 : 2015. 5. 27(수) 14:00
  - 장 소 : 경주 교원드림센터
  - 참 석 : 장대진 의장 등 도의원 60명
  
- 「**광역지자체 간 상생협력 활성화**」 세미나
  - 일 시 : 2015. 5. 27(수) 14:00
  - 장 소 : 대구 엑스코
  - 참 석 : 구자근 위원장
  
- **한국원자력연구원 양성자가속기연구센터 빔이용연구동  
및 산업체 R&D 통합지원센터 개관식**
  - 일 시 : 2015. 5. 27(수) 15:00
  - 장 소 : 양성자가속기연구센터 빔이용연구동
  - 참 석 : 최병준 위원장
  
- **제17회 경북장애인체육대회 개회식**
  - 일 시 : 2015. 5. 28(목) 10:30
  - 장 소 : 문경시민운동장
  - 참 석 : 장대진 의장, 장경식 부의장, 김명호 위원장,  
고우현, 강영석, 박영서 의원
  
- **경제자유구역청 조합회의**
  - 일 시 : 2015. 5. 28(목) 11:00
  - 장 소 : 경제자유구역청
  - 참 석 : 김희수 위원장

○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경북지부장 취임 기념식**

- 일 시 : 2015. 5. 28(목) 11:00
- 장 소 : 영천 SD웨딩컨벤션
- 참 석 : 장두욱 의원

○ **미래경북전략위원회 소속 기획총괄분과위원회**

- 일 시 : 2015. 5. 28(목) 11:00
- 장 소 : 도청 제1회의실
- 참 석 : 배진석 의원

○ **2015 경북신보 기업인발전협의회 총회**

- 일 시 : 2015. 5. 28(목) 11:00
- 장 소 : 구미 호텔금오산
- 참 석 : 윤창욱 부의장

○ **보잉 항공전자 MRO 센터 준공식**

- 일 시 : 2015. 5. 28(목) 13:30
- 장 소 : 영천 보잉 항공전자 MRO센터
- 참 석 : 한혜련, 김수용, 장두욱 의원

○ **경상북도 도민참여 교육**

- 일 시 : 2015. 5. 28(목) 14:00
- 장 소 : 의성 군민회관
- 참 석 : 최태림, 김수문 의원

○ **경북농공단지협의회 ‘우문현답 감성프로젝트’**

- 일 시 : 2015. 5. 28(목) 18:30
- 장 소 : 안동 리첼호텔
- 참 석 : 장대진 의장

○ **경북도립교향악단 행복콘서트**

- 일 시 : 2015. 5. 28(목) 19:30
- 장 소 : 구미문화예술회관
- 참 석 : 윤창욱 부의장, 이태식 의원

○ **21세기 인문가치 포럼 개막식**

- 일 시 : 2015. 5. 29(금) 10:00
- 장 소 : 안동 예술의 전당
- 참 석 : 장대진 의장, 김명호 위원장, 김위한, 김인중 의원

○ **제20회 바다의 날 기념 행사**

- 일 시 : 2015. 5. 29(금) 13:00
- 장 소 : 울진 후포항 왕돌초 광장
- 참 석 : 황이주 위원장, 장두욱, 장용훈 의원

○ **제6회 전국휠체어 럭비 대회**

- 일 시 : 2015. 5. 29(금) 14:00
- 장 소 : 구미 장애인체육관
- 참 석 : 윤창욱 부의장

- 2015 경북 전통발효식품 산업대전
  - 일 시 : 2015. 5. 29(금) 14:00
  - 장 소 : 문경새재 야외공연장
  - 참 석 : 정영길 위원장, 고우현, 박영서 의원
  
- 새마을여인상 시상식 및 행복한 가정가꾸기 실천대회
  - 일 시 : 2015. 5. 29(금) 15:00
  - 장 소 : 영천 시민회관
  - 참 석 : 한혜련 의원
  
- 대구텍스타일콤플렉스 개관식
  - 일 시 : 2015. 5. 29(금) 15:00
  - 장 소 : DTC 다목적홀
  - 참 석 : 장두욱 의원
  
- 제2회 국제학생 축제
  - 일 시 : 2015. 5. 30(토) 14:30
  - 장 소 : 경주 엑스포
  - 참 석 : 박권현 위원장, 이진락 의원
  
- 제9회 경북자율방법연합회 경북지킴이 다짐대회
  - 일 시 : 2015. 5. 31(일) 10:00
  - 장 소 : 성주 선남생활체육공원
  - 참 석 : 정영길 위원장, 이수경 의원

- 제10회 새마을오픈 배드민턴대회
  - 일 시 : 2015. 5. 31(일) 11:30
  - 장 소 : 구미 박정희체육관
  - 참 석 : 윤창욱 부의장
  
- 21세기 인문가치포럼 2015 폐막식 및 환송만찬
  - 일 시 : 2015. 5. 31(일) 15:30
  - 장 소 : 안동 예술의 전당&리첼호텔
  - 참 석 : 장대진 의장, 김인중 의원
  
- 경상북도의회 제4회 청소년 의회교실
  - 일 시 : 2015. 6. 1(월) 10:00
  - 장 소 : 본회의장
  - 참 석 : 홍진규 운영위원장
  
- 경상북도여성단체협의회 & 인천광역시 여성단체협의회 교류행사
  - 일 시 : 2015. 6. 2(화) 10:00
  - 장 소 : 안동 노송정 종택
  - 참 석 : 김인중 의원
  
- 2015 교통사고 줄이기운동 범국민대회
  - 일 시 : 2015. 6. 2(화) 14:00
  - 장 소 : 경북교통문화연수원
  - 참 석 : 윤창욱 부의장

- **한국서화 평생교육원 개원식**
  - 일 시 : 2015. 6. 2(화) 16:00
  - 장 소 : 한국서화 평생교육원
  - 참 석 : 장대진 의장, 홍진규 위원장
  
- **2015 할매·할배의 날 밥상머리교육**
  - 일 시 : 2015. 6. 2(화) 16:00
  - 장 소 : 구미 문화예술회관
  - 참 석 : 윤창욱 부의장
  
- **2015 원자력 클러스터 포럼**
  - 일 시 : 2015. 6. 2(화) 16:30
  - 장 소 : 경주 화백센터
  - 참 석 : 김희수 위원장, 장두욱, 이동호, 이진락, 최병준 의원
  
- **2015 국제탄소포럼 개최식**
  - 일 시 : 2015. 6. 3(수) 17:00
  - 장 소 : 구미 구미코
  - 참 석 : 장대진 의장, 윤창욱 부의장, 장영석 의원
  
- **2015 경북·전남 생활체육교류 환영연**
  - 일 시 : 2015. 6. 3(수) 18:00
  - 장 소 : 구미 구미웨딩
  - 참 석 : 장대진 의장, 윤창욱 부의장

○ **국회·지방의회 의정자료 공유 통합시스템 개통식 및 국회의장과의 오찬간담회**

- 일 시 : 2015. 6. 4(목) 11:00
- 장 소 : 국회 접견실(317호)
- 참 석 : 장대진 의장

○ **경북동부 FTA 활용지원센터 개소식**

- 일 시 : 2015. 6. 4(목) 11:00
- 장 소 : 포항상공회의소
- 참 석 : 장경식 부의장, 김희수, 이정호 위원장, 장두욱, 박문하, 박용선 의원

○ **미래경북전략위원회 농수산분과회의**

- 일 시 : 2015. 6. 4(목) 11:00
- 장 소 : 경상북도 농업기술원
- 참 석 : 안희영 의원

○ **2015 경북어르신 생활체육대회**

- 일 시 : 2015. 6. 4(목) 11:30
- 장 소 : 구미 박정희체육관
- 참 석 : 윤창욱 부의장, 김봉교 의원

○ **도민참여교육**

- 일 시 : 2015. 6. 4(목) 14:00
- 장 소 : 포항평생학습원
- 참 석 : 장경식 부의장

- **2015 대구·경북 지역경제 세미나**
  - 일 시 : 2015. 6. 4(목) 14:30
  - 장 소 : 한국은행 대구경북 본부
  - 참 석 : 장두욱 의원
  
- **2015년 지방세 발전포럼**
  - 일 시 : 2015. 6. 5(금) 09:00
  - 장 소 : 경주 The-K 호텔
  - 참 석 : 배진석 의원
  
- **제28회 교육감기 특수학교 교직원 체육대회**
  - 일 시 : 2015. 6. 5(금) 10:00
  - 장 소 : 포항 실내체육관
  - 참 석 : 김희수 위원장, 장두욱 의원
  
- **중동호흡기증후군 대응 유관기관 합동회의**
  - 일 시 : 2015. 6. 5(금) 10:00
  - 장 소 : 도청강당
  - 참 석 : 장대진 의장
  
- **제60회 현충일 추념식**
  - 일 시 : 2015. 6. 6(토) 10:00
  - 장 소 : 영천시 충혼탑
  - 참 석 : 장대진 의장
  
- **제11회 통일염원 전국 길거리 농구대회**
  - 일 시 : 2015. 6. 7(일) 09:30
  - 장 소 : 낙동강체육공원
  - 참 석 : 윤창욱 부의장

## **【시·군 단위 행사】**

### **○ 늘푸른초등학교 성인 문해교실 도서관 방문**

- 일 시 : 2015. 5. 7(목) 10:00
- 장 소 : 경상북도립안동도서관 용상분관
- 참 석 : 이영식 위원장

### **○ 제11회 칠곡군민의 날 기념식**

- 일 시 : 2015. 5. 7(목) 16:00
- 장 소 : 칠곡 교육문화회관
- 참 석 : 김창규 의원

### **○ 의성읍민체육대회 참석**

- 일 시 : 2015. 5. 8(금) 10:00
- 장 소 : 의성군 종합운동장
- 참 석 : 최태림 의원

### **○ 제43회 어버이날 기념식 및 축하공연**

- 일 시 : 2015. 5. 8(금) 10:30
- 장 소 : 포항문화예술회관
- 참 석 : 장경식 부의장, 김희수 위원장, 박문하, 박용선 의원

### **○ 제43회 어버이날 기념식 및 축하공연**

- 일 시 : 2015. 5. 8(금) 11:30
- 장 소 : 경산시민회관
- 참 석 : 윤성규 위원장, 오세혁 의원

- 제43회 어버이날 기념 행사
  - 일 시 : 2015. 5. 8(금) 14:00
  - 장 소 : 칠곡 교육문화회관
  - 참 석 : 김창규 의원
  
- 제53회 경북도민체전 경산시 선수단 출정식
  - 일 시 : 2015. 5. 8(금) 13:30
  - 장 소 : 경산시청
  - 참 석 : 조현일 의원
  
- 제25회 흥해 이팝꽃축제 및孝 대잔치
  - 일 시 : 2015. 5. 9(토) 10:00
  - 장 소 : 포항 흥해읍 향교산 일원
  - 참 석 : 한창화 위원장
  
- 2015 아카시아 꽃 축제
  - 일 시 : 2015. 5. 9(토) 10:00
  - 장 소 : 칠곡군 지천면 신동재 일원
  - 참 석 : 김정숙 의원
  
- 근로자의 날 기념행사
  - 일 시 : 2015. 5. 9(토) 11:30
  - 장 소 : 경산 실내체육관
  - 참 석 : 오세혁 의원

- 2015 삼강주막 주말상설공연 개막공연
  - 일 시 : 2015. 5. 9(토) 14:00
  - 장 소 : 예천 삼강주막 일원
  - 참 석 : 안희영 의원
  
- 제36회 송설총동창회장기 기별축구대회
  - 일 시 : 2015. 5. 10(일) 10:00
  - 장 소 : 김천 김천고운동장
  - 참 석 : 김응규, 나기보 의원
  
- 구룡포 푸른바다 가꾸기 향만대청소
  - 일 시 : 2015. 5. 11(월) 09:00
  - 장 소 : 포항 구룡포 수협활어위판장
  - 참 석 : 이정호 위원장
  
- 금오서원 전사청 및 교육관 건립 기공식
  - 일 시 : 2015. 5. 11(월) 11:00
  - 장 소 : 선산 금오서원
  - 참 석 : 윤창욱 부의장, 김봉교, 이태식 의원
  
- 완산동 경로효잔치
  - 일 시 : 2015. 5. 12(화) 11:00
  - 장 소 : 영천 공설시장
  - 참 석 : 김수용 의원

- 제34회 스승의 날 기념 일일특강
  - 일 시 : 2015. 5. 14(목) 11:00
  - 장 소 : 포항 오천초등학교
  - 참 석 : 이정호 위원장
  
- 2015년 2분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영덕군협의회 정기회의
  - 일 시 : 2015. 5. 14(목) 11:00
  - 장 소 : 영덕군청 제1회의실
  - 참 석 : 황재철 의원
  
- 농식품 수출 현장간담회 및 비전토크
  - 일 시 : 2015. 5. 14(목) 16:30
  - 장 소 : 청도 대흥농산
  - 참 석 : 정상구 의원
  
- 고령군 상인 사관학교 입학식
  - 일 시 : 2015. 5. 14(목) 17:00
  - 장 소 : 고령 상인교육관
  - 참 석 : 박정현 의원
  
- 2015 성주생명문화축제
  - 일 시 : 2015. 5. 14(목) 19:00
  - 장 소 : 성주 성밖숲
  - 참 석 : 정영길 위원장, 이수경 의원

○ 제34회 스승의 날 기념 교직원 한마음 배구대회

- 일 시 : 2015. 5. 15(금) 10:00
- 장 소 : 청송중고등학교
- 참 석 : 윤종도 의원

○ 가정의 달 기념행사

- 일 시 : 2015. 5. 15(금) 14:00
- 장 소 : 칠곡 교육문화회관
- 참 석 : 김창규 의원

○ 제8회 영덕물가자미 축제 개막식

- 일 시 : 2015. 5. 15(금) 16:00
- 장 소 : 영덕 축산항 일원
- 참 석 : 조주홍, 황재철 의원

○ 불기 2559년 부처님오신 날 봉축탑 점등식

- 일 시 : 2015. 5. 15(금) 19:00
- 장 소 : 경주역
- 참 석 : 배진석 의원

○ 제2회 치매극복 가족걷기대회

- 일 시 : 2015. 5. 16(토) 09:30
- 장 소 : 구미 동락공원
- 참 석 : 이태식, 장영석 의원

- 2015 후포수협 어업인 체육대회
  - 일 시 : 2015. 5. 16(토) 10:00
  - 장 소 : 울진 후포생활체육공원
  - 참 석 : 장용훈 의원
  
- 불기 2559년 부처님오신 날 기념 연등축제
  - 일 시 : 2015. 5. 17(일) 19:00
  - 장 소 : 포항 죽도초등학교
  - 참 석 : 김희수 위원장
  
- 불기 2559년 부처님오신 날 봉축 연등행사
  - 일 시 : 2015. 5. 17(일) 17:00
  - 장 소 : 구미 금오천 공영주차장
  - 참 석 : 이흥희 의원
  
- 제43회 성년의 날 포항시 집체 성년례
  - 일 시 : 2015. 5. 18(월) 14:00
  - 장 소 : 포항 전통문화체험관
  - 참 석 : 김종영 의원
  
- 2015 영주 한국선비문화축제 개막식
  - 일 시 : 2015. 5. 20(수) 19:00
  - 장 소 : 영주 서천둔치
  - 참 석 : 황병직 의원

○ 가정의 달 기념 '2015년 건강가정 대축제'

- 일 시 : 2015. 5. 22(금) 10:00
- 장 소 : 포항 환호공원 일원
- 참 석 : 김희수 위원장, 장두욱 의원

○ 제4회 대한노인회경산시지회장기 노인게이트볼대회 개최식

- 일 시 : 2015. 5. 22(금) 10:00
- 장 소 : 생활체육공원
- 참 석 : 윤성규 위원장

○ 울진지역자활센터 자활가족 체육대회

- 일 시 : 2015. 5. 22(금) 10:30
- 장 소 : 울진 군민체육관
- 참 석 : 황이주 위원장

○ 제5회 영천시장기 게이트볼대회

- 일 시 : 2015. 5. 22(금) 11:00
- 장 소 : 영천 게이트볼장
- 참 석 : 김수용 의원

○ 울진읍발전협의회 창립총회 및 회장단 취임식

- 일 시 : 2015. 5. 22(금) 11:00
- 장 소 : 울진읍사무소 회의실
- 참 석 : 장용훈 의원

- **청도 운문산 생태탐방안내센터 개관식**
  - 일 시 : 2015. 5. 22(금) 14:00
  - 장 소 : 운문산생태탐방안내센터
  - 참 석 : 정상구 의원
  
- **청송세계지질공원 등재추진 주민공청회 및 학술연구용역  
중간보고회**
  - 일 시 : 2015. 5. 22(금) 14:00
  - 장 소 : 청송 군청회의실
  - 참 석 : 윤종도 의원
  
- **세누리당-봉화군, 2015년 봉화발전을 위한 당정협의회**
  - 일 시 : 2015. 5. 22(금) 11:00
  - 장 소 : 봉화군청 강당
  - 참 석 : 박현국 의원
  
- **왜관산업단지 출/퇴근 순환버스 발차식**
  - 일 시 : 2015. 5. 22(금) 15:00
  - 장 소 : 칠곡 근로자종합복지관
  - 참 석 : 김정숙 의원
  
- **불탄절 전통연등 문화축제**
  - 일 시 : 2015. 5. 22(금) 16:30
  - 장 소 : 생활체육공원 어귀마당
  - 참 석 : 윤성규 위원장

○ 봉황대 뮤직스퀘어

- 일 시 : 2015. 5. 22(금) 20:00
- 장 소 : 경주 봉황대 특설무대
- 참 석 : 이진락 의원

○ 제20회 형산강사랑 포항시민 걷기대회

- 일 시 : 2015. 5. 23(토) 09:00
- 장 소 : 해도공원
- 참 석 : 장경식 부의장, 김희수, 이정호 위원장,  
박문하, 박용선 의원

○ 다둥이 가족사랑 한마음 잔치

- 일 시 : 2015. 5. 23(토) 10:00
- 장 소 : 영천 강변둔치
- 참 석 : 한혜련 의원

○ 가정의 달 기념 '2015년 건강가정 대축제'

- 일 시 : 2015. 5. 23(토) 10:00
- 장 소 : 포항 환호공원 일원
- 참 석 : 박문하 의원

○ 제8회 세계인의 날 기념 '2015 안동 다문화 한마음축제'

- 일 시 : 2015. 5. 23(토) 11:00
- 장 소 : 안동 예술의 전당 옆
- 참 석 : 김명호 위원장

○ 2015 백두대간 예술제(영주)

- 일 시 : 2015. 5. 23(토) 13:00
- 장 소 : 영주 순흥, 봉수각
- 참 석 : 황병직 의원

○ 제21회 청소년 화랑문화제

- 일 시 : 2015. 5. 23(토) 13:30
- 장 소 : 경주 황성공원 일원
- 참 석 : 이동호 의원

○ 불탄절 전통 연등 문화축제

- 일 시 : 2015. 5. 23(토) 16:30
- 장 소 : 경산시민회관 대강당
- 참 석 : 배한철 위원장

○ 제3회 신세계-이마트 전국컬링대회 개회식

- 일 시 : 2015. 5. 24(일) 10:00
- 장 소 : 의성컬링센터
- 참 석 : 김수문 의원

○ 제23회 LG기 주부배구대회

- 일 시 : 2015. 5. 24(일) 10:30
- 장 소 : 구미 전자공업고등학교
- 참 석 : 윤창욱 부의장, 김봉교, 이태식 의원

- **부처님 오신날 봉축법요식**
  - 일 시 : 2015. 5. 25(월) 09:00
  - 장 소 : 김천 직지사
  - 참 석 : 배영애 의원
  
- **제12회 상주시 근로자 화합 체육대회**
  - 일 시 : 2015. 5. 25(월) 09:00
  - 장 소 : 상주 남장사
  - 참 석 : 이운식 의원
  
- **부처님 오신날 봉축법요식**
  - 일 시 : 2015. 5. 25(월) 09:00
  - 장 소 : 포항 황해사
  - 참 석 : 이상구 의원
  
- **부처님 오신날 봉축법요식 및 연등축제**
  - 일 시 : 2015. 5. 25(월) 18:00
  - 장 소 : 안동 용부공원
  - 참 석 : 장대진 의장, 김위한, 김인중 의원
  
- **제48회 울릉군민 체육대회**
  - 일 시 : 2015. 5. 28(목) 10:00
  - 장 소 : 울릉 공설운동장
  - 참 석 : 남진복 의원

- **농업인행복버스 사업**
  - 일 시 : 2015. 5. 29(금) 10:00
  - 장 소 : 영양 군민회관
  - 참 석 : 남천희 의원
  
- **할매·할배의 날 노인시설 방문행사**
  - 일 시 : 2015. 5. 29(금) 14:00
  - 장 소 : 성주군 노인시설 6개소
  - 참 석 : 이수경 의원
  
- **포항 의병의 날 기념행사**
  - 일 시 : 2015. 5. 30(토) 09:00
  - 장 소 : 포항 흥해읍 곡강서원 일원
  - 참 석 : 박문하, 박용선 의원
  
- **할매·할배의 날 행사**
  - 일 시 : 2015. 5. 30(토) 10:00
  - 장 소 : 청도 풍각면
  - 참 석 : 정상구 의원
  
- **청소년 문화센터 개관 2주년 기념식**
  - 일 시 : 2015. 5. 30(토) 10:00
  - 장 소 : 안동 청소년문화센터
  - 참 석 : 김위한 의원

- **할매·할배의 날 맛이 직원가족 격대공감 한마음 소통행사**
  - 일 시 : 2015. 5. 30(토) 11:00
  - 장 소 : 영천시 생활체육관
  - 참 석 : 김수용 의원
  
- **제5회 의병의 날 기념식 및 제2회 포항의병체험대회**
  - 일 시 : 2015. 5. 30(토) 11:00
  - 장 소 : 포항 흥해읍 곡강서원 일원
  - 참 석 : 한창화 위원장
  
- **제16회 문경시장기 생활체육대회**
  - 일 시 : 2015. 5. 30(토) 11:00
  - 장 소 : 문경 실내체육관
  - 참 석 : 고우현, 박영서 의원
  
- **군위군민화합한마당 행사**
  - 일 시 : 2015. 5. 30(토) 14:00
  - 장 소 : 팔공산 하늘공원
  - 참 석 : 홍진규 위원장
  
- **2015 백두대간 예술제**
  - 일 시 : 2015. 5. 30(토) 19:00
  - 장 소 : 예천 한천일원
  - 참 석 : 도기욱 의원

- 제20회 바다의 날 기념 및 제21회 호미바다예술제
  - 일 시 : 2015. 5. 31(일) 10:00
  - 장 소 : 포항 호미곶광장
  - 참 석 : 장경식 부의장
  
- 시각장애우와 함께 등산 및 자연보호 캠페인 행사
  - 일 시 : 2015. 5. 31(일) 10:00
  - 장 소 : 구미 금오산
  - 참 석 : 구자근 위원장
  
- 제19회 영주시배드민턴연합회장기대회 겸 연합회장 이·취임식
  - 일 시 : 2015. 5. 31(일) 11:00
  - 장 소 : 영주 국민체육센터
  - 참 석 : 박성만 의원
  
- 제2회 우리밀애 축제
  - 일 시 : 2015. 5. 31(일) 11:00
  - 장 소 : 예천 풍양면 우리밀애 가공공장 일원
  - 참 석 : 안희영 의원
  
- TBC 고택음악회
  - 일 시 : 2015. 5. 31(일) 18:00
  - 장 소 : 군위 부계 대울리 남천고택
  - 참 석 : 홍진규 위원장

- 포항 북구 새누리당 도·시의원 워크숍
  - 일 시 : 2015. 6. 1(월) 14:30
  - 장 소 : 포항 기계봉좌마을
  - 참 석 : 김희수 위원장
  
- 이서중 6.25참전 전물학도병 추모식
  - 일 시 : 2015. 6. 2(화) 10:30
  - 장 소 : 이서중·고교 교정
  - 참 석 : 박권현 위원장
  
- 한동대학교-한국은행 공동주최 금융세미나
  - 일 시 : 2015. 6. 2(화) 13:45
  - 장 소 : 한동대 올네이션스홀
  - 참 석 : 장두욱 의원
  
- 밥상머리 교육
  - 일 시 : 2015. 6. 2(화)
  - 장 소 : 구미 문화예술회관
  - 참 석 : 이태식 의원
  
- 제10회 화북면민 화합 체육대회
  - 일 시 : 2015. 6. 2(화)
  - 장 소 : 화북중학교
  - 참 석 : 강영석 의원
  
- 경북장애인종합복지관 영양분관 개관식
  - 일 시 : 2015. 6. 3(수) 11:00

- 장 소 : 영양군 종합복지회관
- 참 석 : 남천희 의원

○ 石山 김영철 화백 작품전시회 개막식

- 일 시 : 2015. 6. 4(목) 14:00
- 장 소 : 구미 문화예술회관
- 참 석 : 윤창욱 부의장

○ 제60회 현충일 박대통령 생가 참배

- 일 시 : 2015. 6. 6(토) 09:00
- 장 소 : 구미 박대통령 생가
- 참 석 : 윤창욱 부의장, 김봉교 의원

○ 제60회 현충일 추념식

- 일 시 : 2015. 6. 6(토) 10:00
- 장 소 : 지역 충혼탑(포항, 구미, 영천, 경산, 군위, 의성, 청도, 성주, 영양)
- 참 석 : 장경식 부의장, 홍진규, 김희수, 윤성규 위원장, 김수용, 장영석, 김수문, 남천희, 박문하, 박용선, 이수경, 정상구 의원

○ 제16회 경북태권도 협회장기 대회 및 제96회 전국체전 1차 평가대회 개최식

- 일 시 : 2015. 6. 6(토) 11:00
- 장 소 : 영주 군민체육센터
- 참 석 : 황병직 의원

## VII. 5분 자유발언

□ 2015년 6월 26일 제278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 조주홍 의원(농수산위원회) ◎

<<농축수산 분야 예산비율 축소 문제점 및 증액 촉구>>

3백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농수산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비례대표 조주홍 의원입니다.

중동호흡기증후군(MERS)와 지난 밤사이 꿀맛 같은 단비가 왔습니다만, 심각했던 가뭄으로 도민 한 분 한 분이 근심걱정으로 하루를 보내는 이 시점에 도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을 위해 집행부와 도의회가 혼연일체로 당면한 위기를 슬기롭게 이겨내자는 기대와 희망을 전하면서,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5분 발언을 하고자 하는 것은 전체 도예산 대비 농축산 및 수산부문의 예산편성 비율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문제점을 강력하게 제기하고, 다가올 2016년부터 농축산 및 수산 부문의 예산편성 확대를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농업은 식량안보와 환경보전,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농식품 연관산업의 발전뿐만 아니라 국민의 기초생활과 국가경제에 직결되는 중요한 산업으로 세계 주요 국가에서는 농업에 대한 각종 지원과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농업은 농산물 시장개방과 식생활 패턴 변화, 기후 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고령화 등으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북은 농가인구가 가장 많고, 과수, 축산 등 농산물의 최대 생산지로 대내외적인 농업환경변화에 따른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도지사께서도 3선 재임기간 동안 내내 경북을 ‘농도’라고 자처하시면서 농업의 가치와 중요성을 강조하고 실천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농업예산 등 각종 지표를 통해서 바라본 경북의 농어업·농어촌의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난 제273회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존경하는 성주 출신 이수경 의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2014년도 경북의 농업예산은 6,917억원으로 도예산 6조 2,359억원의 11.1%에 불과해 전남 14.4%, 충남 13.8%, 전북 13.1%와 비교했을 때 터무니없이 낮다는 사실과 전체 예산 규모가 8,500억원이나 적은 전남과 비교 시 경북이 전남보다 농업예산이 무려 600억원이나 적다는 믿기 어려운 사실을 알았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경북도의 전체 예산 대비 농축산 및 수산  
부문의 예산편성비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경북도 전체 예산 규모는 2010년 4조 7,430억원에서 5년이 지난  
지금 6조 7,500억원으로 42%나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농축산  
및 수산부문 예산은 6,982억원에서 7,836억원으로 겨우 12%  
증가에 그쳤습니다.

우리 양쪽 PPT 자료화면에서 볼 수 있듯이 전체 예산 대비  
농축산 비율이 2010년 13.6%에서 점차 줄어들어 2015년에는  
10.5%로 3% 넘게 줄었으며, 수산부문 예산편성 비율도 2010년  
1.2%에서 2015년에는 1.12%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경북도가 농어업·농어촌을 중요시한다는 지금까지의  
주장과는 동떨어진 현실로 우리 경북도의 농어업인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얼마나 많은 실망감과 허탈함을 느끼겠습니까?  
전국에서 가장 면적이 넓고 농업종사자가 많은 경북의 농어업  
예산 비율이 낮아지면 경북 농어업의 경쟁력은 갈수록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경북의 농축산 및 수산부문 예산 비율을 5년  
전인 2010년 수준으로 올리고 2,000억원 이상의 예산을 추가  
확보해서 소규모 농어가 등을 위한 평균적이고, 실질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농어업 정책에 투입되어야 합니다.

본 의원은 농축산 및 수산부문의 예산비율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불편한 진실을 접하면서 정부의 고강도 재정개혁 기조와 다양한 현실적 수요에 따른 예산편성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우리의 농어촌이 지속가능한 미래경북 발전의 전진기지가 되기 위해서 능동적이고 선제적인 예산투자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들녘에서, 바다에서 농어업인들이 흘리는 굶은 땀방울이 헛되지 않게 하고, 미래경북의 새로운 농어업의 패러다임을 실현하기 위해 내년부터라도 농축산 및 수산부문 예산 편성비율을 단계적으로 꼭 높여야 함을 강력하게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2015년 6월 26일 제278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 최태림 의원(행정보건복지위원회) ◎

<<도청이전신도시 광역개발 계획 수립 관련>>

존경하는 3백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성 출신 최태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신도청 시대를 눈앞에 두고 새롭게 열어나가는 신도시가  
단편적인 도시개발에서 벗어나 문화와 역사, 그리고 경제가 살아  
움직이는 경북의 심장부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  
종합 발전 계획의 수립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도청 신도시는 단순한 청사이전에 따른 새로운 도시의 형성이  
아니라 화합과 통일된 마음으로 경북인의 자긍심을 불러 일으켜  
찬란한 새 천년의 시대를 열어나가고, 국가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공간으로 가꾸어 가야 할 역사적 과제를 우리는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광역적 차원의 정책

비전과 도시 성격에 걸 맞는 공간적 구성 등 도시기능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도청 신도시는 기존의 수요 대응형 도시가 아니라 개발의 수요를 스스로 창출해가면서도 신도시 본래의 기능을 잃지 않은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이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경상북도 개발공사가 2012년 7월에 내놓은 '경북도청 이전 신도시 건설사업 개발계획'을 보면 신도시는 역사와 전통이 살아 있는 문화도시, 저탄소녹색성장을 주도하는 전원형 생태도시, 경북에 신성장을 이끌어가는 첨단명품행정도시 조성을 목표로 2027년까지 3단계로 추진한다고 계획되어 있습니다.

특히 행정, 교육, 산업이 어우러진 신도시 건설로 지역균형 발전을 선도하기 위하여, 10만명 자족도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10만명의 도시 규모로는 수요 창출형 도시를 조성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2015년 6월 현재까지 도청 신도시 계획관리 구역 내는 어느 정도 당초의 계획대로 추진이 되고 있으나, 그마저도 여러 기반 시설의 부족으로 인해 도청이전의 시기가 이미 한 차례 연기된 바 있습니다.

무엇보다 자족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행정기능 외에 교육, 문화, 산업, 레저 등 시민들의 생활에 필요한 각각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고, 이것이 기존의 역사와 문화자원 등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룰 때, 신도시 조성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음에도 단순히 신도시 내에서의 계획만 수립되어 있고, 지역내 자원과 연계하는 방안이 없는 현재 상태로는 신도시 조성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신도시 주변지역의 난개발 방지와 체계적인 개발을 위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에도, 현재까지는 이와 같은 광역개발계획은 전혀 마련된 바 없습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신도시 주변지역에 축사와 모텔, 묘지가 무분별하게 조성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태가 지속적으로 진행될 경우 도시의 성장과 발전에 상당한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인식 하에 내포신도시로 이전한 충남도청의 경우, 2013년 2월에 이미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여 광역계획권 전체의 발전 잠재력을 발굴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 수립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만, 경북도는 광역개발에 대한 어떠한 계획도 없어 본 의원은 실로 답답한 마음입니다.

도청 신도시는 경상북도 발전 축을 완성시킬 수 있는 중심 공간으로서 그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합니다. 특히 북부권 중심

허브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선택과 집중을 통한 도시기반시설과 경관계획도 이루어져야 하며, 인접 지역들과의 광역적 도시계획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먼저, 명실상부한 미래 천년 경북도읍지로써, 더 나아가 대한민국을 가장 모범적인 도시로의 도약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좁은 시각에서의 신도시 구역내에서 만의 관리에서 벗어나, 좀 더 미래 지향적인 비전을 가지고 안동, 예천뿐만 아니라 필요시에는 인근 시군을 포함한 광역도시계획을 조속히 수립해야 합니다.

둘째, 이처럼 미래 천년 경북도읍지의 발전을 위하여는 단순히 안동과 예천의 기초 자치단체 수준에서 다루기보다는 경북도 차원에서 거시적으로 접근하여 북부권 광역개발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다각적인 발전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광역개발을 위해 신도시를 진·출입하는 도로가 현재 공사중인 안동방면 동측도로와 예천방면 북측도로 외에는 의성방면 남측도로와 구미방면 서측도로는 구체적 건설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군을 연결하는 지역간 도로는 물론 세종시 등 타 시도를 연결하는 광역도로 건설계획도 함께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국 정신문화의 꽃을 피우며, 창조적 역량을 통한 경제부흥으로 경북도청 신도시가 300만 도민의 꿈을 이야기 하는 무대가 될 수 있도록 광역개발 계획의 조속한 수립을 김관용 도지사님께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농업기술원 이전은 언제 시작할 것인지, 이 또한 도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부 록



- 조 례 안 : 19건
- 규 칙 안 : 1건
- 예 · 결산안 : 3건
- 동의 · 승인안 : 2건



## ▣ 조 례 안

-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 경상북도자연휴양림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천연가스자동차 구입 의무화 시행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경상북도 농식품 수출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 경상북도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모범공무원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  
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장 대 진

2015년 6월 26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4조제3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한다.

제5조 중 “기획조정실·창조경제산업실·일자리민생본부·안전  
행정국”을 “기획조정실·도민안전실·창조경제산업실·일자리  
민생본부·자치행정국”으로 한다.

제6조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규제개혁, 공공기관 개혁, 행정개혁에 관한 사항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도민안전실) 도민안전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안전기획, 안전문화, 안전교육훈련 및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에 관한 사항
2. 생활안전, 사회재난 대응지원 및 특별사법경찰에 관한 사항
3. 시설물 안전점검 및 유도선 관리에 관한 사항
4. 자연재난 예방, 재난대응 및 재난복구에 관한 사항
5. 국가기반보호, 민방위 비상대비 및 경보통제소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재난안전에 관한 사항

제9조의 제목 “(안전행정국)”을 “(자치행정국)”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6. 공무원의 임용·표창·징계·후생에 관한 사항
7. 국내·외 새마을운동, 민간협력에 관한 사항
8. 민원실 운영, 자연보호, 자원봉사,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
9. 공사·물품구매 계약 및 지출에 관한 사항
10. 관용차량·중장비 및 관공선, 국·공유재산,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
11. 도정 정보화사업, 사이버 정보보안, 행정시스템 및 통신

운영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다른 실·국·본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9조제13호부터 제17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3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 사회보장·사회서비스에 관한 사항

조례 제3573호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부  
칙 제2조 중 “2015년 8월 31일”을 “2016년 8월 31일”로  
한다.

별표 2 명칭란 중 고령소방서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고령소방서	고령군 대가야읍 벽화길 18	고령군 일원
-------	-----------------	--------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서 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해 부서 신설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사무가 분리 및 변경되는 부서의 명칭은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의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경상북도 아동·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6항 중 “여성정책관”을 “여성가족정책관”으로 한다.

② 경상북도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3항제1호, 제42조제1항 및 제61조제2항 중 “여성정책관”을 “여성가족정책관”으로 한다.

③ 경상북도 여성인력개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각 호외의 부분 중 “여성정책관”을 “여성가족정책관”으로 한다.

④ 경상북도 다문화가족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다문화가족지원 담당과장”을 “다문화가족지원 담당”으로 한다.

⑤ 경상북도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제3호 중 “보건복지국장”을 “여성가족정책관”으로 개정한다.

⑥ 경상북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국장”을 “본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투자유치단장”을 “투자유치실장”으로 한다.

- ⑦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소관별 란의 “경제교통정책과”를 “민생경제교통과”로 한다.
- ⑧ 경상북도 장애인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정무부지사”를 “경제부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장”을 “본부장”으로 한다.
- ⑨ 경상북도 향토뿌리기업 및 산업유산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국장”을 “본부장”으로 한다.
- ⑩ 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 중 “정무부지사”를 “경제부지사”로 한다.
- ⑪ 경상북도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정무부지사”를 “경제부지사”로 하고, “투자유치 본부장”을 “일자리민생본부장”으로 한다.
- ⑫ 경상북도 숙련기술자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정무부지사”를 “경제부지사”로 한다.
- ⑬ 경상북도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각 호외의 부분 중 “정무부지사”를 “경제부지사”로

하고, “일자리투자본부장”을 “일자리민생본부장”으로 한다.  
제11조제1항1호 중 “일자리투자본부장”을 “일자리민생본부장”으로 한다.

⑭ 경상북도 공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제9조, 제10조제1항·제2항, 제12조,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중 “행정지원국장”을 각각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⑮ 경상북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행정지원국장”을 “도민안전실장”으로 한다.

⑯ 경상북도 6·25전쟁 남북피해 진상규명 및 남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⑰ 경상북도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⑱ 경상북도 포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2제1항제2호 중 “행정지원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⑲ 경상북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0조제2항 중 “보건복지국장”을 “복지건강국장”으로 한다.
- ⑳ 경상북도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제1항제1호 중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복지건강국장”으로 한다.
- ㉑ 경상북도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2항 중 “보건복지국장”을 “복지건강국장”으로 한다.
- ㉒ 경상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0조제3항 중 “건설도시방재국장”을 “지역균형건설국장”으로 한다.
- ㉓ 경상북도 도립공원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제2항 중 “환경산림국장”을 “환경산림자원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국장, 농축산국장, 환경산림국장, 건설도시방재국장”을 “자치행정국장, 농축산유통국장, 환경산림자원국장, 지역균형건설국장”으로 한다.
- ㉔ 경상북도대중교통발전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2항 중 “행정부지사”를 “경제부지사”로 한다.
- ㉕ 경상북도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2항 중 “정무부지사”를 “경제부지사”로, “창조경제산업실장”을 “일자리민생본부장”으로 한다.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b>제4조(부지사) ①·② (생 략)</b></p> <p>③ 경제부지사는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p> <p>1. (생 략)</p> <p>2. <u>규제개혁, 공공기관개혁, 행정개혁에 관한 사항</u></p> <p>3. ~ 5. (생 략)</p>	<p><b>제4조(부지사) ①·② (현행과 같음)</b></p> <p>③ _____.</p> <p>—</p> <p>1. (현행과 같음)</p> <p><u>&lt;삭 제&gt;</u></p> <p>2. ~ 4. (현행 제3호부터 제5호까지와 같음)</p>
<p><b>제5조(실·국·본부의 설치) 도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u>기획조정실·창조경제산업실·일자리민생본부·안전행정국·문화관광체육국·농축산유통국·환경산림자원국·복지건강국·지역균형건설국·동해안발전본부(한시기구)·도청신도시본부(한시기구) 및 소방본부를 둔다.</u></b></p>	<p><b>제5조(실·국·본부의 설치) —</b></p> <p>_____ <u>기획조정실·도민안전실·창조경제산업실·일자리민생본부·자치행정국</u> _____</p> <p>_____</p> <p>_____</p> <p>_____.</p>
<p><b>제6조(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b></p> <p>1. ~ 5. (생 략)</p> <p><u>&lt;신 설&gt;</u></p> <p>6. (생 략)</p>	<p><b>제6조(기획조정실) _____</b></p> <p>_____.</p> <p>1. ~ 5. (현행과 같음)</p> <p>6. <u>규제개혁, 공공기관 개혁, 행정개혁에 관한 사항</u></p> <p>7. (현행 제6호와 같음)</p>

현행	개정안
<p>〈신설〉</p> <p>제9조(안전행정국) 안전행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p>1. ~ 5. (생략)</p> <p>6. <u>자체방호 및 예비군 훈련</u></p> <p>7. <u>안전기획, 안전문화 등 안전정책에 관한 사항</u></p> <p>8. <u>사회재난, 자연재난 관리 및 재난상황실 및 경보통제소 운영에 관한 사항</u></p> <p>9. <u>국가기반보호 및 민방위 비상대비에 관한 사항</u></p>	<p>제6조의2(도민안전실) 도민안전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p>1. <u>안전기획, 안전문화, 안전교육훈련 및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에 관한 사항</u></p> <p>2. <u>생활안전, 사회재난 대응지원 및 특별사법경찰에 관한 사항</u></p> <p>3. <u>시설물 안전점검 및 유도선 관리에 관한 사항</u></p> <p>4. <u>자연재난 예방, 재난대응 및 재난복구에 관한 사항</u></p> <p>5. <u>국가기반보호, 민방위 비상대비 및 경보통제소 운영에 관한 사항</u></p> <p>6. <u>그 밖에 재난안전에 관한 사항</u></p> <p>제9조(자치행정국) 자치행정국장—————.</p> <p>1. ~ 5. (현행과 같음)</p> <p>6. <u>공무원의 임용·표창·징계·후생에 관한 사항</u></p> <p>7. <u>국내·외 새마을운동, 민간협력에 관한 사항</u></p> <p>8. <u>민원실 운영, 자연보호, 자원봉사,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u></p> <p>9. <u>공사·물품구매 계약 및 지출에 관한 사항</u></p>

현 행	개 정 안
<p>10. 시설물 안전점검 및 유도선 관리에 관한 사항</p> <p>11. 공무원의 임용·표창·징계·후생에 관한 사항</p> <p>12. 국내·외 새마을운동, 민간협력에 관한 사항</p> <p>13. 민원실 운영, 자연보호, 자원봉사, 민간협력, 평생교육, 학교협력에 관한 사항</p> <p>14. 공사·물품구매 계약 및 지출에 관한 사항</p> <p>15. 관용차량·중장비 및 관공선, 국·공유재산,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p> <p>16. 도정 정보화사업, 사이버 정보보안, 행정시스템 및 통신 운영에 관한 사항</p> <p>17. 그 밖에 다른 실·국·본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p>	<p>10. 관용차량·중장비 및 관공선, 국·공유재산,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p> <p>11. 도정 정보화사업, 사이버 정보보안, 행정시스템 및 통신 운영에 관한 사항</p> <p>12. 그 밖에 다른 실·국·본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p> <p>〈삭 제〉</p> <p>〈삭 제〉</p> <p>〈삭 제〉</p> <p>〈삭 제〉</p> <p>〈삭 제〉</p>
<p><b>제13조(복지건강국)</b> 복지건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p>1. (생 략)</p> <p>2. <u>국민기초생활보장 및 이재민구호, 사회보장·사회서비스에 관한 사항</u></p> <p>3. ~ 10. (생 략)</p>	<p><b>제13조(복지건강국)</b> _____</p> <p>_____.</p> <p>1. (현행과 같음)</p> <p>2. <u>국민기초생활보장, 사회보장·사회서비스에 관한 사항</u></p> <p>3. ~ 10.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부칙(조례 제3573호, 2014.10.27.)  <b>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b>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동해안발전본부의 존속기한은 2015년 8월 31일까지로 하고, 도청신도시본부의 존속기한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b>[별표 2]</b> <b>소방서의 명칭 · 위치 및 관할구역</b> <b>(제32조제2항 관련)</b>	부칙(조례 제3573호, 2014.10.27.)  <b>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b> ----- ----- 2016년 8월 31일----- ----- -----. <b>[별표 2]</b> <b>소방서의 명칭 · 위치 및 관할구역</b> <b>(제32조제2항 관련)</b>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명   칭</th> <th style="text-align: center;">위           치</th> <th style="text-align: center;">관   할   구   역</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고령 소방서</td> <td style="text-align: center;">고령군 고령읍 벽화길 18</td> <td style="text-align: center;">고령군 일원</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r> </tbody> </table>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	⋮	⋮	고령 소방서	고령군 고령읍 벽화길 18	고령군 일원	⋮	⋮	⋮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명   칭</th> <th style="text-align: center;">위           치</th> <th style="text-align: center;">관   할   구   역</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고령 소방서</td> <td style="text-align: center;">고령군 대가야읍 벽화길 18</td> <td style="text-align: center;">고령군 일원</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r> </tbody> </table>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	⋮	⋮	고령 소방서	고령군 대가야읍 벽화길 18	고령군 일원	⋮	⋮	⋮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	⋮	⋮																							
고령 소방서	고령군 고령읍 벽화길 18	고령군 일원																							
⋮	⋮	⋮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	⋮	⋮																							
고령 소방서	고령군 대가야읍 벽화길 18	고령군 일원																							
⋮	⋮	⋮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  
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장 대 진

2015년 6월 26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5,160명”을 “5,217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1,955명”을 “1,975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  
호 중 “3,059명”을 “3,094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103명”을 “105명”으로 한다.

별표 3 및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개정으로 정원을 초과한 현원은  
그 초과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별표 3]

경상북도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단위 : 명)

직급별	기관별	합 계	본 청	의 회	직속기관	사업소	경제자유 구역청
합 계		5,217	-				
정 무 직		1	-				
반 직	소 계	1,837	-				
	2 ~ 3급	2	1	1			
	3 급	11	10		1		
	3 ~ 4급	2	2				
	4급	80	58	7	5	9	1
	5급 이하	1,731	-				
	전문경력관	11	-				
별 정 직	소 계	14	-				
	1급상당	1	1				
	4급상당	3	1	2			
	5급상당 이하	10	-				
연 구 직	소 계	201	-				
	연구관	39	1		37	1	
	연구사	162	-				
지 도 직	소 계	27	-				
	지도관	10			10		
	지도사	17	-				
소 방 직	소 계	3,094	-				
	소방정	21	4		17		
	소방령 이하	3,073	-				
교 원	소 계	43	-				
	총 장	1			1		
	교 수	31			31		
	조 교	11	-				

[별표 4]

한시 정원표(제6조 관련)

기 관 별	정 원(명)		존 속 기 한	비 고
	계	내 역		
합 계	4	일반직 : 3급 2, 5급 이하 2		
문화관광체육국	2	일반직 : 5급 이하 2	2015. 12. 31	문경세계 군인체육 대회지원
동해안발전본부	1	일반직 : 3급 1	2016. 8. 31	
도청신도시본부	1	일반직 : 3급 1	2016. 12. 31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원의 총수) 도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u>5,160명</u>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집행기관의 정원 : <u>1,955명</u></p> <p>2. 소방본부·소방학교·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 <u>3,059명</u></p> <p>3. (생략)</p> <p>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u>103명</u></p> <p><b>[별표 3]</b> 경상북도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p> <p style="text-align: right;">(단위 : 명)</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기관별 직급별</th> <th style="text-align: center;">합 계</th> <th style="text-align: center;">본청</th> <th style="text-align: center;">의회</th> <th style="text-align: center;">직속 기관</th> <th style="text-align: center;">사업소</th> <th style="text-align: center;">경제자유 구역청</th> </tr> </thead> <tbody> <tr><td style="text-align: center;">합 계</td><td style="text-align: center;"><u>5,160</u></td><td></td><td></td><td></td><td></td><td></td></tr> <tr><td style="text-align: center;">:</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 style="text-align: center;">소 계</td><td style="text-align: center;"><u>1,815</u></td><td></td><td></td><td></td><td></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 <tr><td style="text-align: center;">2-3급</td><td style="text-align: center;"><u>1</u></td><td></td><td style="text-align: center;">1</td><td></td><td></td><td></td></tr> <tr><td style="text-align: center;">3급</td><td style="text-align: center;">11</td><td style="text-align: center;">10</td><td></td><td style="text-align: center;">1</td><td></td><td></td></tr> <tr><td style="text-align: center;">3~4급</td><td style="text-align: center;">2</td><td style="text-align: center;">2</td><td></td><td></td><td></td><td></td></tr> <tr><td style="text-align: center;">4급</td><td style="text-align: center;"><u>78</u></td><td style="text-align: center;"><u>56</u></td><td style="text-align: center;">7</td><td style="text-align: center;">5</td><td style="text-align: center;">9</td><td style="text-align: center;">1</td></tr> <tr><td style="text-align: center;">5급 이하</td><td style="text-align: center;"><u>1,712</u></td><td></td><td></td><td></td><td></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 <tr><td style="text-align: center;">전문 경력관</td><td style="text-align: center;">11</td><td></td><td></td><td></td><td></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 <tr><td style="text-align: center;">:</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 style="text-align: center;">소 계</td><td style="text-align: center;"><u>3,059</u></td><td></td><td></td><td></td><td></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 <tr><td style="text-align: center;">소방정</td><td style="text-align: center;"><u>20</u></td><td style="text-align: center;"><u>3</u></td><td></td><td style="text-align: center;">17</td><td></td><td></td></tr> <tr><td style="text-align: center;">소방령 이하</td><td style="text-align: center;"><u>3,039</u></td><td></td><td></td><td></td><td></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 <tr><td style="text-align: center;">:</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body> </table>	기관별 직급별	합 계	본청	의회	직속 기관	사업소	경제자유 구역청	합 계	<u>5,160</u>						:							소 계	<u>1,815</u>					-	2-3급	<u>1</u>		1				3급	11	10		1			3~4급	2	2					4급	<u>78</u>	<u>56</u>	7	5	9	1	5급 이하	<u>1,712</u>					-	전문 경력관	11					-	:							소 계	<u>3,059</u>					-	소방정	<u>20</u>	<u>3</u>		17			소방령 이하	<u>3,039</u>					-	:							<p>제2조(정원의 총수) ----- -----<u>5,217명</u>----- -----.</p> <p>1. ----- : <u>1,975명</u></p> <p>2. ----- ----- : <u>3,094명</u></p> <p>3. (현행과 같음)</p> <p>4. ----- : <u>105명</u></p> <p><b>[별표 3]</b> 경상북도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p> <p style="text-align: right;">(단위 : 명)</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기관별 직급별</th> <th style="text-align: center;">합 계</th> <th style="text-align: center;">본청</th> <th style="text-align: center;">의회</th> <th style="text-align: center;">직속 기관</th> <th style="text-align: center;">사업소</th> <th style="text-align: center;">경제자유 구역청</th> </tr> </thead> <tbody> <tr><td style="text-align: center;">합 계</td><td style="text-align: center;"><u>5,217</u></td><td></td><td></td><td></td><td></td><td></td></tr> <tr><td style="text-align: center;">:</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 style="text-align: center;">소 계</td><td style="text-align: center;"><u>1,837</u></td><td></td><td></td><td></td><td></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 <tr><td style="text-align: center;">2-3급</td><td style="text-align: center;"><u>2</u></td><td style="text-align: center;"><u>1</u></td><td style="text-align: center;">1</td><td></td><td></td><td></td></tr> <tr><td style="text-align: center;">3급</td><td style="text-align: center;">11</td><td style="text-align: center;">10</td><td></td><td style="text-align: center;">1</td><td></td><td></td></tr> <tr><td style="text-align: center;">3~4급</td><td style="text-align: center;">2</td><td style="text-align: center;">2</td><td></td><td></td><td></td><td></td></tr> <tr><td style="text-align: center;">4급</td><td style="text-align: center;"><u>80</u></td><td style="text-align: center;"><u>58</u></td><td style="text-align: center;">7</td><td style="text-align: center;">5</td><td style="text-align: center;">9</td><td style="text-align: center;">1</td></tr> <tr><td style="text-align: center;">5급 이하</td><td style="text-align: center;"><u>1,731</u></td><td></td><td></td><td></td><td></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 <tr><td style="text-align: center;">전문 경력관</td><td style="text-align: center;">11</td><td></td><td></td><td></td><td></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 <tr><td style="text-align: center;">:</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 style="text-align: center;">소 계</td><td style="text-align: center;"><u>3,094</u></td><td></td><td></td><td></td><td></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 <tr><td style="text-align: center;">소방정</td><td style="text-align: center;"><u>21</u></td><td style="text-align: center;"><u>4</u></td><td></td><td style="text-align: center;">17</td><td></td><td></td></tr> <tr><td style="text-align: center;">소방령 이하</td><td style="text-align: center;"><u>3,073</u></td><td></td><td></td><td></td><td></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 <tr><td style="text-align: center;">:</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body> </table>	기관별 직급별	합 계	본청	의회	직속 기관	사업소	경제자유 구역청	합 계	<u>5,217</u>						:							소 계	<u>1,837</u>					-	2-3급	<u>2</u>	<u>1</u>	1				3급	11	10		1			3~4급	2	2					4급	<u>80</u>	<u>58</u>	7	5	9	1	5급 이하	<u>1,731</u>					-	전문 경력관	11					-	:							소 계	<u>3,094</u>					-	소방정	<u>21</u>	<u>4</u>		17			소방령 이하	<u>3,073</u>					-	:						
기관별 직급별	합 계	본청	의회	직속 기관	사업소	경제자유 구역청																																																																																																																																																																																																													
합 계	<u>5,160</u>																																																																																																																																																																																																																		
:																																																																																																																																																																																																																			
소 계	<u>1,815</u>					-																																																																																																																																																																																																													
2-3급	<u>1</u>		1																																																																																																																																																																																																																
3급	11	10		1																																																																																																																																																																																																															
3~4급	2	2																																																																																																																																																																																																																	
4급	<u>78</u>	<u>56</u>	7	5	9	1																																																																																																																																																																																																													
5급 이하	<u>1,712</u>					-																																																																																																																																																																																																													
전문 경력관	11					-																																																																																																																																																																																																													
:																																																																																																																																																																																																																			
소 계	<u>3,059</u>					-																																																																																																																																																																																																													
소방정	<u>20</u>	<u>3</u>		17																																																																																																																																																																																																															
소방령 이하	<u>3,039</u>					-																																																																																																																																																																																																													
:																																																																																																																																																																																																																			
기관별 직급별	합 계	본청	의회	직속 기관	사업소	경제자유 구역청																																																																																																																																																																																																													
합 계	<u>5,217</u>																																																																																																																																																																																																																		
:																																																																																																																																																																																																																			
소 계	<u>1,837</u>					-																																																																																																																																																																																																													
2-3급	<u>2</u>	<u>1</u>	1																																																																																																																																																																																																																
3급	11	10		1																																																																																																																																																																																																															
3~4급	2	2																																																																																																																																																																																																																	
4급	<u>80</u>	<u>58</u>	7	5	9	1																																																																																																																																																																																																													
5급 이하	<u>1,731</u>					-																																																																																																																																																																																																													
전문 경력관	11					-																																																																																																																																																																																																													
:																																																																																																																																																																																																																			
소 계	<u>3,094</u>					-																																																																																																																																																																																																													
소방정	<u>21</u>	<u>4</u>		17																																																																																																																																																																																																															
소방령 이하	<u>3,073</u>					-																																																																																																																																																																																																													
:																																																																																																																																																																																																																			

현 행					개 정 안				
<b>[별표 4]</b> <b>한시 정원표(제6조 관련)</b>  (단위: 명)					<b>[별표 4]</b> <b>한시 정원표(제6조 관련)</b>  (단위: 명)				
기 관 별	정 원(명)		존 속 기 한	비 고	기 관 별	정 원(명)		존 속 기 한	비 고
	계	내 역				계	내 역		
합 계	4	일반직 : 3급 2, 5급 이하 2			합 계	4	일반직 : 3급 2, 5급 이하 2		
문화관광 체육국	2	일반직 : 5급 이하 2	2015. 12. 31	문경세계 군인체육 대회지원	문화관광 체육국	2	일반직 : 5급 이하 2	2015. 12. 31	문경세계 군인체육 대회지원
동해안 발전본부	1	일반직 : 3급 1	2015. 8. 31		동해안 발전본부	1	일반직 : 3급 1	2016. 8. 31	
도청신도시 본부	1	일반직 : 3급 1	2016. 12. 31		도청신도시 본부	1	일반직 : 3급 1	2016. 12. 31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장 대 진

2015년 6월 26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 부터 별표 5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처리 중인 사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항				【별표 1】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항			
소 관 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입 기관	소 관 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입 기관
여 성 정 책 관	(생략)	(생략)	시장 · 군수	여 성 가 준 정 책 관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시장 · 군수
세 정 과	<u>1. 도 수입증지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판매인의 지정</u>  <u>나. 판매인의 명의, 위치, 변경, 판 매 폐지</u>  <u>다. 지정의 취소</u>  <u>라. 판매인의 승계</u>	<u>「경상북도 수입증지 조례」 제7조</u>  <u>같은 조례 제11조</u>  <u>같은 조례 제13조</u>  <u>같은 조례 제14조</u>	시장 · 군수	<삭 제>			
에 너 지 산 업 과	(생략)	(생략)	시장 · 군수	청 정 에 너 지 산 업 과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시장 · 군수

현행				개정안			
소관별	건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소관별	건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기업 노동사 지원과	<p>1. 안전관리대상 공산품 위반사항 등에 대한 판매 중지·개선·수거· 파기 명령 및 언론 매체 등을 통한 위해 사실 공표 와 교환·환불· 수리 등 이행 명령 권한</p> <p>2. 공산품의 제조업 자·외국제조업 자·수입업자· 판매업자에 대한 보고 명령·출입 ·검사·통지 및 질문 권한</p> <p>3. (생략)</p>	<p>「품질 경영 및 공산품 안전 관리법」 제31조 제1항 부터 제6항</p> <p>같은 법 제32조 제1항 부터 제4항</p> <p>같은 법 제41조 제10호 부터 제14호 같은 법 제41조 제3항</p>	시장 · 군수	기업 노동사 지원과	<p>1. 공산품의 안전관리 에 관한 다음의 권 한 가. 판매중지·개선· 수거 또는 파기 명령 및 언론매체 등을 통한 위해 사실 공표와 교환·환불· 수리 등 이행 명령 권한</p> <p>나. 제조·수입·판매 등에 관한 자료제출 ·보고명령·출입· 검사·통지 및 질문 권한</p> <p>2. (현행 제3호와 같 음)</p>	<p>「품질 경영 및 공산품 안전 관리법」 제31조</p> <p>같은 법 제32조</p> <p>같은 법 제41조 제3항 제2호</p>	시장 · 군수
국 제 비즈 니스 과	(생략)	(생략)	시장 · 군수	글로벌 통상 협력과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시장 · 군수

현행				개정안			
소관별	건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소관별	건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u>FTA</u> <u>농식품</u> <u>유통과</u>	(생략)	(생략)	시장 · 군수	<u>FTA</u> <u>농식품</u> <u>유통</u> <u>대책단</u>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시장 · 군수
환경 정책과	1. ~ 7. (생략)  8. 폐기물처리업 및 처리 시설에 관한 다음의 업무 가. ~ 처. (생략)  커. (생략)  터. ~ 허. (생략)	(생략)  (생략)  <u>같은법</u> <u>시행규칙</u> <u>제66조</u> <u>별표16</u>	시장 · 군수	환경 정책과	1. ~ 7. (현행 과 같음)  8. (현행과 같음)  가. ~ 처. (현행과 같음)  커.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u>같은법</u> <u>시행규칙</u> <u>제14조의3</u> <u>제2항</u> <u>별표5의2</u> <u>제2호</u> <u>나목</u>	시장 · 군수
	9. ~ 14. (생략)	(현행과 같음)			9. ~ 14.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소관별	건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소관별	건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환경 안전과	1. ~ 9. (생략) 10. 유독물영업의 등록 및 관리에 대한 다음의 사항 가. 유독물영업의 등록·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의 수리 및 필요한 조건의 부여 나. 유독물취급시설 에 대한 정기· 수시검사 또는 안전진단명령 다. 유독물영업자 에 대한 개선 명령 라. 유독물영업의 폐업 등의 신고 수리 및 유독물 영업자에 대한 조치명령 마. 유독물영업의 영업 정지 또는 등록 취소 바. 유독물영업의 관리·의무 승계 신고의 수리 사. 유독물관리자 또는 취급시설 의 공동 활용 에 관한 승인 또는 변경신고 의 수리 아. 자체방제계획 제출의 수리	(생략)	시장 · 군수	환경 안전과	1. ~ 9. (현행과 같음) 〈삭제〉		시장 · 군수
						「유해화학 물질관리 법」 제20조	
						같은 법 제22조 제1항, 제2항	
						같은 법 제23조	
						같은 법 제26조	
						같은 법 제27조	
						같은 법 제28조 제2항	
						같은 법 제30조	
						같은 법 제39조 제1항	

현행				개정안			
소관별	건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소관별	건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환경 안전과	<p>다. 보고·자료 제출 명령 또는 출입 검사 등 연차 보고서의 제출</p> <p>차. 과징금의 부과·징수</p> <p>카. 청문의 실시</p> <p>타. 과태료의 부과·징수</p> <p>11. ~ 16. (생략)</p>	<p>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6호 제7호 제13호 제14호 같은 법 제45조의2</p> <p>같은 법 제49조 제1항 제3항</p> <p>같은 법 제50조</p> <p>같은 법 제63조 (생략)</p>	시장·군수	환경 안전과	10. ~ 15. (현행 제11호 부터 현행 제16호 까지와 같음)	(현행 제11호 부터 현행 제16호 까지와 같음)	시장·군수
산림 녹지과	<p>1. 영림기술자의 배치</p> <p>2. (생략)</p> <p>3. 청원산림보호직원의 배치에 관한 다음 사항</p> <p>가. ~ 나. (생략)</p>	<p>「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생략)</p> <p>(생략)</p>	시장·군수	산림 자원과	<p>1. 산림기술자의 배치</p> <p>2. (현행과 같음)</p> <p>3. 청원산림보호직원의 배치에 관한 다음 사항 (단, 도유림의 경우는 제외)</p> <p>가. ~ 나. (현행과 같음)</p>	<p>「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p> <p>(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산림보호법」</p>	시장·군수

현				개				정				안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입 기관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입 기관								
산 립 녹지과	4. 보호수 관리 등에 관한 사항 (보호수의 지정 및 지정 해제는 제외한다)		시장·군수	산 립 자원과	4. 보호수 관리 등에 관한 사항 (경상북도 공유 재산일 경우는 제외한다)		시장·군수								
	가. (생략)	「산림보호법」 제13조 제1항, 제2항		가. (현행과 같음)	같은 법 제13조 제1항										
	나. 보호수에 대한 행위 제한, 보호수가 자라고 있는 토지의 매수 또는 교환 등	「산림보호법」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3조		나. 보호수의 지정 및 지정해제, 보호수에 대한 행위제한, 보호수가 자라고 있는 토지의 매수 또는 교환 등	같은 법 제13조 제2항										
	5. 산림보호구역에 대한 다음의 권한			5. 산림보호구역에 대한 다음의 권한 (경상북도 공유 재산일 경우는 제외한다)	「산림보호법」										
	가. (생략)	같은 법 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같은 법 제9조,		가. (현행과 같음)	같은 법 제7조										
	나. (생략)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나. (현행과 같음)	같은 법 제8조										

현행				개정안			
소관별	건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소관별	건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산림 녹지과	다. (생략)	같은 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제10조	시장·군수	산림 자원과	다. (현행과 같음)	같은 법 제9조	시장·군수
	라. (생략)	같은 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라. (현행과 같음)	같은 법 제11조	
	6. 가로수의 일반 국도, 지방도 (시의 읍·면, 군지역)관리청	가로수 조성 및 관리규정 제3조 제2항			6. (현행 제7호와 같음)	(현행 제7호와 같음)	
7. (생략)	(생략)		7. 산림사업법인에 관한 사항	「산림 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신설〉			〈삭제〉			
				가. 산림사업법인의 등록, 변경등록	같은 법 제24조		
				나. 산림사업법인의 지정명령,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등록취소 등	같은 법 제25조 제1항 부터 제3항		

현				행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입 기관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입 기관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산 립 산업과	1. 가로수의 일반국도, 지방도(시의 읍·면·군 지역) 관리청	가로수 조성 및 관리 규정 제3조제2항	시장 · 군수
사 회 복지과 노 인 복지과 다문화 행복과 보 건 정책과 공통사항	(생략)	(생략)	시장 · 군수	사 회 복지과 노인효 복지과 장애인 복지과 보 건 정책과 공통사항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시장 · 군수

현행				개정안			
소관별	건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소관별	건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도로 철도과	1. (생략)	「도로법」 제38조, 제38조의2, 제39조 부터 제43조	시장· 군수	도로 철도 공항공과	1. (현행과 같음)	「도로법」 제61조 부터 제63조, 제66조, 제68조 부터 제70조, 제72조, 제74조 같은 법 제110조	시장· 군수
	2. (생략)	도로법 제6조 및 같은 법시행 규칙 제3조			2. (현행과 같음)		
	3. (생략)	도로법 제83조			3. (현행과 같음)	같은 법 제96조	
	4. (생략)	도로법 제84조			4. (현행과 같음)	같은 법 제97조	
	5. 지방도상 타 공작물의 관리자 에 대한 공사시행 명령	도로법 제29조			5. 지방도상 타 공작물의 공사 시행	같은 법 제33조	
	6. (생략)	도로법 제31조			6. (현행과 같음)	같은 법 제35조	
	7. 지방도상 접도구역의 지정 등	도로법 제49조 제4항			7. 지방도상 접도구역의 지정 및 관리	같은 법 제40조	
	8. (생략)	도로법 제51조			8. (현행과 같음)	같은 법 제45조 및 제46조	
	9. 지방도의 공사와 유지 등	도로법 제23조			9. 지방도 공사와 유지·관리 등	같은 법 제31조	
	10. 부담금 등의 강제징수	도로법 제90조			10. 이행강제금 등의 부과· 징수	같은 법 제100조	

현 행				개 정 안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입 기관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입 기관
도 로 철도과	11. 비상재해시의 토지 등의 사용	도로법 제47조	시장·군수	도 로 철 도 공 항과	11. 재해발생 시 토지 등의 일시 사용 등	같은 법 제83조	시장·군수
	12. (생략)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조3			12. (현행과 같음)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13. (생략)	건설기계관리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5조2, 제6조, 제8조, 제9조			13. (현행과 같음)	「건설기계관리법」 제5조	
	14. (생략)	(생략)			14.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15. (생략)	건설기계관리법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15. (현행과 같음)	「건설기계관리법」 제7조	
	16. (생략) 가. (생략) 나.~다. (생략)	도로법 제46조 (현행과 같음)			16. (현행과 같음) 가. (생략) 나.~다. (생략)	「도로법」 제81조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소관별	건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소관별	건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도·로 철도과	17. 도가 시행하는 지방도로 사업 편입용지 등에 대한 보상 업무 중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1조부터 제69조	시장·군수	도·로 철도 공항과	17. 도가 시행하는 지방도로 사업 편입용지 등에 대한 보상업무 중 다음의 사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1조	시장·군수
	가. 토지 및 물건 조서 등의 작성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가.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같은 법 제14조		
	나. 보상협의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44조의2		나. (현행 마목과 같음)	같은 법 제15조		
	다. 보상평가의 의뢰 및 평가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다. 협의	같은 법 제16조		
	라. 보상청약, 협의, 계약체결, 지급 등	같은 법 제16조, 제17조, 제63조		라. 계약의 체결	같은 법 제17조		
	마. 보상계획의 열람 등	같은 법 제15조		마. 보상평가의 의뢰 및 평가, 재평가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7조 (현행 나목과 같음)		
	바. 편입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업무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부동산 등기법」 제27조, 제28조		바. (현행 나목과 같음)			
				사. (현행 바목과 같음)	(현행 바목과 같음)		

현행				개정안			
소관별	건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소관별	건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도로 철도과	<p><b>&lt;신설&gt;</b></p> <p>18. 지방도의 미불용지의 평가</p> <p>19. (생략)</p> <p>20. 건설기계 구조변경</p> <p>21. ~ 23. (생략)</p> <p>24. 건설기계 조종사의 면허 대장 비치</p>	<p>(생략)</p> <p>「건설기계 관리법」 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8조 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생략)</p> <p>같은 법 제26조</p> <p>같은 법 시행규칙 제78조</p>	<p>시장·군수</p>	도로 철도 공항공과	<p>18. 미불용지의 평가</p> <p>19. (현행과 같음)</p> <p>20. 건설기계 구조의 변경 등</p> <p>21. ~ 23. (현행과 같음)</p> <p><b>&lt;삭제&gt;</b></p>	<p>(현행과 같음)</p> <p>「건설기계 관리법」 제8조</p> <p>같은 법 제17조</p> <p>(현행과 같음)</p>	<p>시장·군수</p>

현				행				개				정				안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입 기관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입 기관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입 기관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입 기관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입 기관	
도 로 철·도과	25. 건설기계중조사 면허의 취소 정지 및 면허증 반납	같은 법 제2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 제80조	시장 · 군수	도 로 철·도 공항과	<삭제>		시장 · 군수	도 로				도 로				도 로				시장 · 군수
	26. 건설기계의 강제 처리 등	같은 법 제34조 의2, 같은 법시 행령 제17조의3			24. (현행 제26호와 같음)	같은 법 제34조의2			24. (현행 제26호와 같음)	같은 법 제34조의2			24. (현행 제26호와 같음)	같은 법 제34조의2						
	27. 건설기계 과태료 처분 및 청문, 행정 처분, 보고검사 등	「건설기계관리법」 제35조, 제35조 의2, 제36조, 제44조			25. (현행 제27호와 같음)	(현행 제27호 와 같음)			25. (현행 제27호와 같음)	(현행 제27호 와 같음)			25. (현행 제27호와 같음)	(현행 제27호 와 같음)						
	28. 지방도 교차방법과 다른 시설의 연결	「도로법」 제64조			26. (현행 제28호와 같음)	「도로법」 제51조, 제52조			26. (현행 제28호와 같음)	「도로법」 제51조, 제52조			26. (현행 제28호와 같음)	「도로법」 제51조, 제52조						
	29. 원인자 부담금	「도로법」 제76조			27. (현행 제29호와 같음)	「도로법」 제91조			27. (현행 제29호와 같음)	「도로법」 제91조			27. (현행 제29호와 같음)	「도로법」 제91조						
	30. 수수료의 징수	「도로법」 제89조			28. (현행 제30호와 같음)	「도로법」 제103조			28. (현행 제30호와 같음)	「도로법」 제103조			28. (현행 제30호와 같음)	「도로법」 제103조						
	31. 과오납금 반환	「도로법」 제91조			29. (현행 제31호와 같음)	「도로법」 제94조			29. (현행 제31호와 같음)	「도로법」 제94조			29. (현행 제31호와 같음)	「도로법」 제94조						
	32. 변상금의 징수	「도로법」 제94조			30. (현행 제32호와 같음)	「도로법」 제72조			30. (현행 제32호와 같음)	「도로법」 제72조			30. (현행 제32호와 같음)	「도로법」 제72조						
	33. 과태료	「도로법」 제101조 제2항, 제3항			31. (현행 제33호와 같음)	「도로법」 제117조			31. (현행 제33호와 같음)	「도로법」 제117조			31. (현행 제33호와 같음)	「도로법」 제117조						
	<신설>				32. <u>도유재산 관리에 대한 다음의 사항</u>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4조 및 「경상북도 공유 재산 관리조례」 제3조			32. <u>도유재산 관리에 대한 다음의 사항</u>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4조 및 「경상북도 공유 재산 관리조례」 제3조			32. <u>도유재산 관리에 대한 다음의 사항</u>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4조 및 「경상북도 공유 재산 관리조례」 제3조						
					가. <u>도유재산(행정 일반)의 실태조사</u>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4조			가. <u>도유재산(행정 일반)의 실태조사</u>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4조			가. <u>도유재산(행정 일반)의 실태조사</u>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4조						
					나. <u>도유행정재산에 대한 사용·수익허가</u>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나. <u>도유행정재산에 대한 사용·수익허가</u>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나. <u>도유행정재산에 대한 사용·수익허가</u>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현행				개정안			
소관별	건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소관별	건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치수 방재과	1. ~ 6. (생략) 7. 하천의 점용허가(법 제33조 제1항 제4호의 공작물중 교량(세월교포함) 취입보, 하천 복개제의) 및 고시 8. ~ 23.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시장· 군수	하천과	1. ~ 6. (현행과 같음) 7. 하천의 점용허가(법 제33조 제1항 제3호의 공작물중 교량(세월교포함) 취입보, 하천 복개제의) 및 고시 8. ~ 23.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시장· 군수
수산 진흥과	1. 보호수면의 관리 2. 육성수면의 관리 3. 해양수산부의 예산지원으로 도지사가 시설한 수산시설의 관리책임 등	「수산업법」 제66조  같은 법 제69조  「해양수산사업실시규정」 제43조	시장· 군수	수산 진흥과	〈삭제〉 〈삭제〉  1. (현행 제3호와 같음)	「해양수산보조 및 읍지사업에 관한 관리규정」 제32조	시장· 군수

현행				개정안				
【별표 3】 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별표 3】 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소관별	건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소관별	건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대응구조 구급과	<p>1. 소방시설업(소방시설설계업, 소방시설공사업, 소방공사감리업)에 관한 권한</p> <p>가. 소방시설업 등록 및 변경</p> <p>나. 지위승계신고 수리</p> <p>다. 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p> <p>라. 과징금 처분</p> <p>마.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의 재교부 및 반납</p> <p>2. (생략)</p> <p>3. (생략)</p> <p>4. 방염처리업에 관한 사항</p> <p>가. 방염처리업 등록 및 변경</p> <p>나. 지위승계신고 수리</p> <p>다. 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p> <p>라.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의 재교부 및 반납</p>	<p>「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및 제6조</p> <p>같은 법 제7조</p> <p>같은 법 제9조</p> <p>같은 법 제10조</p> <p>같은 법 제4조 제3항</p> <p>(생략)</p> <p>(생략)</p> <p>「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제16조</p> <p>같은 법 제17조</p> <p>같은 법 제19조</p> <p>같은 법 제14조 제3항</p>	소방 서장	대응구조 구급과	<삭제>	<p>1. (현행 제2호와 같음)</p> <p>2. (현행 제3호와 같음)</p> <p>&lt;삭제&gt;</p>	<p>1. (현행 제2호와 같음)</p> <p>2. (현행 제3호와 같음)</p>	소방 서장

현				행			
【별표 4】 사업소장 및 지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별표 4】 사업소장 및 지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소관별	건 명	근거 법령	수입 기관	소관별	건 명	근거 법령	수입 기관
도로 철도과	1. ~ 4. (생략)	(생략)	종합건설 사업소장	도로철도 공항과	1. ~ 4.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종합건설 사업소장

현행				개정안			
【별표 5】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별표 5】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소관 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입 기관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입 기관
체 육 진흥과	1. (생략) 가. ~ 바. (생략) 사. (생략) 아. (생략) 자. (생략) 차. (생략)	(생략) <u>같은 법 제32조</u> <u>같은 법 제33조</u> <u>같은 법 제40조</u> 〈신설〉	대구경북 경제자유 구역청장	체 육 진흥과	1. (현행과 같음) 가. ~ 바. (현행과 같음) 사. (현행과 같음) 아. (현행과 같음) 자. (현행과 같음) 차.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u>같은 법 제31조</u> <u>같은 법 제32조</u> <u>같은 법 제33조</u> <u>같은 법 제40조</u>	대구경북 경제자유 구역청장
환 경 안전과	1. ~ 7. (생략) 8. 유독물관리자 과정 및 양성 자과정의 교육 대상자 선발 및 통지 9. 유해화학물질 의 안전관리등 에 관한 다음 의 권한 가. 유독물영업 의 등록·변경 등록 또는 변경 신고의 수리 및 필요한 조건의 부여 취소	(생략) 「유해화학 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56조 「유해화학 물질관리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제1호	대구경북 경제자유 구역청장	환 경 안전과	1. ~ 7. (현행과 같음) 〈삭제〉	(생략)	대구경북 경제자유 구역청장

현행				개정안			
【별표 5】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별표 5】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소관별	건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소관별	건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환경안전과	<p>나. 유독물영업자에 대한 개선명령</p> <p>다. 유독물영업의 폐업 등의 신고수리 및 유독물영업자에 대한 조치명령</p> <p>라. 유독물영업의 영업정지 또는 등록</p> <p>마. 유독물관리자 또는 취급시설의 공동활용에 관한 승인 또는 변경신고의 수리</p> <p>바. 보고·자료 제출 명령 또는 출입검사 등</p> <p>사. 과징금의 부과·징수</p> <p>아. 청문</p> <p>자. 과태료의 부과·징수</p>	<p>같은 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3호</p> <p>같은 법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4호</p> <p>같은 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5호</p> <p>같은 법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7호</p> <p>같은 법 제45조 제1항제6호·제7호·제13호·제14호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제9호</p> <p>같은 법 제49조 제1항·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제10호</p> <p>같은 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제11호</p> <p>같은 법 제6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제12호</p>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환경안전과	<삭제>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별표 1]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항

소 관 별	건 명	근 거 법 령	수입기관
여성가족 정 책 관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사회복지법인의 정관변경 인가 (법인의 설립 목적과 주요사업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제외)</li> <li>2. 사회복지법인 임원 임면보고의 접수</li> <li>3. 사회복지법인 감사의 추천</li> <li>4. 사회복지법인 임시이사의 선임</li> <li>5.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의 처분 등에 관한 허가</li> <li>6. 사회복지법인 재산취득 보고의 접수</li> </ol>	<p>「사회복지사업법」 제17조제2항 같은 법 제52조제1항</p> <p>같은 법 제18조제6항 및 같은 법 제52조제1항</p> <p>같은 법 제18조제7항 및 같은 법 제52조제1항</p> <p>같은 법 제22조의3 제1항, 제3항 및 같은 법 제52조제1항</p> <p>같은 법 제23조제3항 및 같은 법 제52조제1항</p> <p>같은 법 제24조 및 같은 법 제52조제1항</p>	시장· 군수
민생경제 교 통 과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 등에 대한 보고검사</li> <li>2. 자동차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떼는 허가</li> <li>3. 자동차등록판 제작, 발급 및 봉인</li> <li>4.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 대행자의 지정 등</li> <li>5.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 대행자에 대 한 지정의 취소 또는 사업의 정지명령</li> </ol>	<p>「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9조</p> <p>「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2항</p> <p>같은 법 제19조</p> <p>같은 법 제20조</p> <p>같은 법 제21조</p>	<p>시장· 군수</p> <p>시장· 군수 철곡군수 (SOFA 자동차 관할)</p> <p>시장· 군수</p>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민생경제 교 통 과	6. 자동차 임시운행허가 및 임시 운행 허가증과 임시운행허가 번호판의 발급과 반납의 처리	같은 법 제27조	시장· 군수
	7. 자동차등록원부의 비치·관리와 멸실된 경우의 조치	같은 법 제7조	시장· 군수
	8. 자동차등록원부 및 그 기재 사항의 멸실, 훼손 기타 부정확 유출 등의 방지와 보존을 위한 조치	같은 법 제7조제3항	철곡군수 (SOFA 자동차 관할)
	9. 자동차등록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이나 열람 신청의 처리	같은 법 제7조제4항	
	10. 자동차 신규등록 및 등록증 발급 또는 재발급	같은 법 제8조 및 제18조제2항	
	11. 자동차 신규등록의 거부	같은 법 제9조	
	12.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부착·봉인 및 재발급	같은 법 제10조	
	13. 회수(반납)된 등록번호판 및 봉인의 폐기	같은 법 제10조 제6항	
	14. 자동차의 변경등록	같은 법 제11조	
	15. 자동차의 이전등록	같은 법 제12조	
	16. 자동차의 말소등록 처리와 등록증, 등록 번호판 및 봉인의 수납영치 및 폐기	같은 법 제13조	
	17. 폐차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동차의 인정	같은 법 제13조제1항	
	18. 수출이행여부의 신고사항 처리	같은 법 제13조제8항	
	19. 자동차 말소사실 증명서 발급	같은 법 제13조제9항	
	20. 자동차의 압류등록	같은 법 제14조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민생경제 교 통 과	21. 자동차 등록번호의 부여	같은 법 제16조	시장· 군수 철곡군수
	22. 자동차 등록에 관한 이의 신청의 처리	같은 법 제28조	
	23. 등록번호판 및 봉인의 제작·수불 교부와 봉인 시행 기록관리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SOFA 자동차 관할)
	24. 발급대행업무의 폐지신고 처리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25. 자동차 정기점검 기간의 조정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	
	26. 검사유효기간의 연장과 유예조치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	
	27. 자동차저당권에 관한 등록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4조	
	28. 계약국 자동차의 정비·검사 및 폐차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제7조	
	29. 국제교통자동차 운행표의 반납	같은 규칙 제8조	시장· 군수 철곡군수
	30. 도로외의 장소에서만 사용하는 자동차 제원 보유 현황 및 관리 실태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처리	같은 규칙 제20조제3항	
	3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자동차 사용 정지에 따른 자동차등록증 및 등록 번호판 반납, 영치, 반환 및 봉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9조	
	3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운용계획 수립·시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8조제5항	
	33. 자가용자동차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사용제한 또는 사용금지 나. 자동차등록증 및 번호판 반납, 영치, 반환 및 봉인 다. 과태료 부과징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3조 같은 법 제83조2항 (같은 법 제89조 준용) 같은 법 제94조	(SOFA 자동차 관할)
	34. 일반·개인택시 운수종사자의 자격 취소 또는 효력 정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민생경제 교 통 과	35. 도지사가 개설 명령한 버스노선의 평균승차인원 조사 및 운행 횟수 확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6조	시장·군수
	36. 여객자동차 터미널사업에 관한 다음 사항		
	가. 사업면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6조	
	나. 공사시행인가, 인가신청 기간 연장, 공사완료시설 확인	같은 법 제38조	
	다. 사용개시 신고수리	같은 법 제39조	
	라. 사용약관 신고수리	같은 법 제40조	
	마. 시설사용료 인가	같은 법 제41조	
	바. 사업자 금지행위 중지 명령과 구조·설비의 시정 명령	같은 법 제42조	
	사. 위치·규모 및 구조·설비 변경인가와 변경신고 수리	같은 법 제43조	
	아. 개선명령	같은 법 제44조	
	자. 사용명령	같은 법 제45조	
	차. 공사시행인가 및 공사 완료에 따른 시설확인시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 및 통보	같은 법 제47조	
	카. 양도·양수 및 법인합병 신고 수리	같은 법 제48조 (같은 법 제14조 준용)	
	타. 상속신고수리	같은 법 제48조 (같은 법 제15조 준용)	
	파. 휴업·폐업허가	같은 법 제48조 (같은 법 제16조 준용)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민생경제 교 통 과	하. 보고·검사 등	같은 법 제79조	시장· 군수
	거. 면허·인가·허가의 취소 및 사업 정지처분 등	같은 법 제8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너. 청문	같은 법 제86조	
	더. 과징금 부과처분 및 징수	같은 법 제88조	
	러. 과태료 부과·징수	같은 법 제94조	
	37. 자동차의 직권말소 통지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3항 부터 제6항	
	38. 도난차량 말소등록	같은 법 제13조제7항	
	39. 체약국 자동차관리 업무의 대행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제8조의2	
	40. 자가용화물자동차에 관한 다음의 권한		시장· 군수
	가. 사용신고·변경신고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55조	
	나. 유상운송허가·임대허가	같은 법 제56조	칠곡군수
	41. 노선 및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등록대상 사업에 한함)		(SOFA 자동차 관할)
	가. 사업등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단서조항)	시장· 군수
	나. 수송시설확인, 운송개시기일 연기 또는 개시기간 연장승인	같은 법 제7조	
	다. 운임·요금 신고수리	같은 법 제8조	
	라. 운송약관 및 약관변경 신고수리	같은 법 제9조	
	마. 사업계획 변경등록 및 신고수리, 사업계획 변경 제한	같은 법 제10조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민생경제 교 통 과	마. 사업관리위탁 신고수리 사. 사업양도·양수 신고수리 및 양도·양수 인가 제한, 법인합병 신고수리 아. 상속 신고수리 자. 사업휴지 또는 폐지허가, 신고수리 차. 중대한 교통사고 보고수리 및 처리 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개선명령 타. 차령연장 파. 사업등록의 취소, 정지명령 및 노선폐지·감차 등을 수반하는 사업 계획변경 명령 하. 청문 거. 과징금 부과처분 및 징수 너. 과태료 부과·징수  42. 자동차대여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등록 및 변경등록에 따른 등록 기준 시설 적합여부 확인 나. 대여약관 및 약관변경 신고수리 다. 사업관리 위탁허가 라. 사업개선명령 마. 양도·양수 및 법인합병 신고수리 바. 상속신고수리	같은 법 제13조 같은 법 제14조 같은 법 제15조 같은 법 제16조 같은 법 제19조 같은 법 제23조 같은 법 제84조 같은 법 제85조  같은 법 제86조 같은 법 제88조 같은 법 제94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 제65조 같은 법 제31조 같은 법 제32조 같은 법 제33조 같은 법 제35조 (제14조제1항, 제3항 준용) 같은 법 제35조 (제15조제1항 준용)	시장· 군수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민생경제 교 통 과	사. 차령연장 아. 등록취소(전부취소는 제외), 정지 명령, 사업계획 변경 명령 자. 청문 차. 과징금 부과처분 및 징수 카. 과태료부과·징수 43. 임시운행허가업무의 관리  44. 정기점검기간 경과 사실통지  45. 자동차정매장 개설·운영 승인 46. 검사기간 경과의 통지  47. 자동차 멸실사실 인정  48.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의 사무 가. 비법정계량단위로 표시된 계량기나 상품을 제작 또는 수입에 따른 내용기재 서류 접수 나. 계량기의 제작업 등의 등록 및 변경신고의 수리 다. 계량기의 수리 및 자체수리  라. 계량기 정기검사 및 수시(수리) 검사 마. 정기검사의 증인 표시 바. 보고 및 검사 등 사. 개선명령 아. 부정계량기의 처리	같은 법 제84조 같은 법 제85조  같은 법 제86조 같은 법 제88조 같은 법 제94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제3항 같은 법 제60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7조의 2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6항제7호  「계량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같은 법 제6조  같은 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같은 법 제32조  같은 법 제33조 같은 법 제34조 같은 법 제35조 같은 법 제37조	시장· 군수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민생경제 교 통 과	자. 계량기 제작업 등의 등록의 취소 및 사업의 정지 차. 청문 카. 과태료의 부과·징수 49. 대부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대부업 등록, 등록증 교부, 등록부 열람, 등록갱신, 등록증 반납 등 나. 대부업 변경등록 및 폐업신고 수리 등 다. 대부업자에 대하여 그 업무 및 업무와 관련된 보고, 자료제출 등 필요한 명령 및 검사 라. 둘 이상의 시·도에 영업소 설치한 경우 필요시 관할 시·도지사에게 영업소 검사(공동검사 포함) 요청 마. 전문적인 검사가 필요한 경우로서 금융감독원장에게 대부업자에 대한 검사요청 바. 감독상 필요한 명령 및 당해 명령의 내용 통보 사. 대부업자 등의 보고서 제출 아. 영업정지	같은 법 제38조 같은 법 제41조 같은 법 제51조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부터 제3조 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조3, 제2조의4 같은 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같은 법 제12조제1항 같은 법 제12조제2항 같은 법 제12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같은 법 제12조제7항 같은 법 제12조제9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3 같은 법 제13조의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4	시장· 군수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민생경제 교 통 과	자. 대부업자의 등록취소 및 소제확인을 위한 공고 차. 등록취소를 위한 청문 및 다른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미리 사실통보 카. 대부업자의 실태조사 등 타. 등록수수료 파. 관계기관에의 협조요청 하. 과태료의 부과·징수	같은 법 제13조제2항, 같은 법시행령 제8조 같은 법 제13조제3항 부터 제5항까지 같은 법 제16조 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같은 법 제18조의8 같은 법 제21조제1항 부터 제3항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시장· 군수
청 정 에 너 지 산 업 과	1. 에너지이용합리화에 관한 사무 중 다음에 관한 권한 가. 에너지다소비업자의 신고 등 나. 검사대상기기의 계속사용 검사 등 다. 검사대상기기의 검사면제 등 라. 검사대상기기 조종자의 선임·해임 신고 등 마. 에너지업무의 보고 및 검사 등 바. 시장·군수에게 위임한 사무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2.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허가에 관한 사무 중 다음의 권한 가. 사업의 허가 등 나. 허가의 세부기준 설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같은 법 제31조제1항 같은 법 제39조제5항 같은 법 제39조제6항, 제7항 같은 법 제40조제3항, 제4항 같은 법 제66조제1항 같은 법 제78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관리 및 사업법」 제3조제1항, 제3항 같은 법 제4조제1항, 제2항	시장· 군수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청 정 에 너 지 산 업 과	다. 사업의 휴지 등 신고의 수리 라. 사업의 승계 마. 허가의 취소 등  바. 과징금의 부과·징수  사. 안전관리규정승인, 변경명령  아. 안전관리자 선임·해임 등 신고의 수리  자. 위해방지조치의 명령 등  차. 보고·조사 등  카. 청문 타. 과태료부과·징수 3.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집단공급사업자 및 판매사업자에 대한 조정명령 4. 전기설비의 기술기준 적합 명령 5. 가스배관의 안전조치 등 6. 승강기 운행정지 명령 7. 승강기 소유자 등의 과태료 부과처분 및 징수 8.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업자 선정	같은 법 제7조 같은 법 제8조제3항 같은 법 제9조제1항, 제2항 같은 법 제10조제1항, 제3항 같은 법 제12조제1항, 제4항 같은 법 제16조제2항, 제5항, 제6항 같은 법 제29조제1항, 제2항 같은 법 제38조제1항, 제2항 같은 법 제40조 같은 법 제52조제4항 같은 법 제34조 「전기사업법」 제71조 「도시가스사업법」 제30조의7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 제18조제2항 같은 법 제28조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제8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시장· 군수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일 자 리 창 출 단	1. 협동조합설립신고에 관한 다음 업무 가. 협동조합 설립신고  나. 협동조합 정관변경 신고 다. 협동조합 합병 및 분할 신고 라. 협동조합 해산신고 마. 협동조합 과태료 부과·징수 바. 신고필증 교부	「협동조합기본법」 제15조 같은 법 제16조 같은 법 제56조 같은 법 제57조 같은 법 제1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시장· 군수
기업노사 지 원 과	1. 공산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판매중지·개선·수거 또는 파기 명령 및 언론매체 등을 통한 위해 사실 공표와 교환·환불·수리 등 이행명령 권한 나. 제조·수입·판매 등에 관한 자료 제출·보고명령·출입·검사·통지 및 질문 권한 2. 과태료의 부과·징수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제31조  같은 법 제32조  같은 법 제41조제3항 제2호	시장· 군수
글 로 벌 통 상 협 력 과	1. 시·군 공무원 공무국의여행 허가	「공무국의여행규정」 제3조제1항	시장· 군수
자 치 행 정 과	1. 2급 및 3급의 비밀취급의 인가	「보안업무규정」 제7조 제2항 「보안업무규정 시행요강」 제10조제2항	시장· 군수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회 계 과	<p>1. 도유재산 관리에 관한 다음 권한</p> <p>가. 도유일반재산의 대부</p> <p>나. 도유재산(행정, 일반)의 보존 관리 및 실태조사(도 본청 및 사업소에서 직접 사용 관리하고 있는 행정재산은 제외)</p> <p>2. 은닉된 도유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p> <p>3. 도유재산 중 도지사가 매각 승인한 일반재산의 처분</p>	<p>「경상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3조</p> <p>같은 조례 제64조</p> <p>같은 조례 제3조</p>	시장·군수
문 화 예 술 과	<p>1. 지방문화원(사단법인) 사무의 검사 및 지도감독</p> <p>2.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배급업에 관한 다음사항</p> <p>가. 신고수리 및 신고증 교부</p> <p>나. 변경신고 수리 및 신고증 갱신교부</p> <p>다. 폐업신고 수리 및 직권말소</p> <p>라. 영업폐쇄명령, 등록취소 처분, 영업정지명령, 시정조치 및 경고조치</p> <p>마. 영업소폐쇄 및 음반 등의 수거·폐기</p> <p>바. 청문</p> <p>사. 수수료</p> <p>아. 과태료의 부과·징수</p>	<p>「지방문화원진흥법」 제4조제1항</p> <p>「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4항, 같은 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0조</p> <p>같은 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p> <p>같은 법 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4조</p> <p>같은 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p> <p>같은 법 제29조</p> <p>같은 법 제30조</p> <p>같은 법 제31조</p> <p>같은 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p>	시장·군수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농업 정책과	1. 농지전용허가·협의 부지관리 (도지사의 허가·협의 처분건)	「농지법시행령」 제58조	시장· 군수
FTA농 식품 유통대책 단	1. 원산지 표시대상 농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수거 또는 조사 2. 「농산물품질관리법」 제38조2항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8조 같은 법 제38조	시장· 군수
친환경 농업과	1. 공동방제비용 부담통지서 교부 2. 농약검사공무원증 발급교부	「식물방역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농약관리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시장· 군수
농촌 개발과	1.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등록 2.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폐지	「농어촌정비법」 제17조 같은 법 제24조	시장· 군수
축산 경영과	1. 보호가축의 지정·고시 2. 동물용의약품도매상의 허가  3. 동물용의약품도매상의 관리 약사 등 변경신고 수리 4. 공수에 대한 업무위촉 및 지휘· 감독 5. 가축 전염성 질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 보고서 청구 6.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증 교부 7. 동물용의약품 등 취급자의 허가, 등록사항 보고 8. 동물보호시설의 설치·운영	「축산법」 제8조제1항 「약사법」 제35조제2항, 「동물용 의약품 등 취급 규칙」 제20조 동규칙 제20조제3항  「수의사법」 제21조  같은 법 제37조  「축산법」 제11조  「동물용 의약품 등 취급규칙」 제58조  「동물보호법」 제10조제1항 같은 법 제23조제2항	시장· 군수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환경 정책과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대기오염, 소음·진동 측정망 설치 및 상시측정</li> <li>2. 측정망 설치계획의 결정고시</li> <li>3.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li> <li>4. 관계기관 협의</li> <li>5. 대기오염 경보발령·해제 및 자동차의 운행제한 등 조치명령</li> <li>6. 보고 및 검사 등(위임된 권한에 관한 사항)</li> <li>7. 과태료 부과 징수 등(위임된 권한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다만 대기 환경보전법 제94조 제2항제4호, 제7호는 도에서도 병행)</li> <li>8. 폐기물처리업 및 처리시설에 관한 다음 업무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업(사업계획검토, 사업계획 적합 및 사업계획 면제대상 허가 여부 통보 포함)의 허가·변경허가(변경허가 여부 통보), 기타 필요한 조건부여, 영업구역 결정·제한, 허가신청기간 연장, 허가증 교부, 임시보관시설 승인(변경승인), 수집·운반증 발급(임시차량 사용 인정), 보관량 및 보관기간 초과 승인(인정), 폐기물 재위탁 승인, 폐기물처리업 기준 제외 인정 등</li> </ol> </li> </ol>	<p>「대기환경보전법」 제3조 제2항, 「소음·진동관리법」 제3조제2항</p> <p>「대기환경보전법」 제4조 제2항, 「소음·진동관리법」 제4조제2항</p> <p>「대기환경보전법」 제5조</p> <p>「소음·진동관리법」 제5조</p> <p>「대기환경보전법」 제8조</p> <p>「대기환경보전법」 제82조의 제1항 제7호, 제8호</p> <p>「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 제4항 제5호, 제6호</p> <p>「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제7항, 제12항, 제13항, 제1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별표 7, 제29조, 제30조, 제31조, 제32조 별표 8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 5</p>	시장· 군수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환경 정책과	나. 폐기물처리업 허가의 취소 및 영업의 정지명령	같은 법 제27조	시장· 군수
	다. 과징금 처분에 대한 부과·납부 (시군수입) 및 가중·감경, 채납 처분	같은 법 제28조, 제4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1조의2, 제23조의3	
	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신고 및 검사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마. 폐기물처리담당자 교육대상자 선발, 통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 제2항 제3항	
	바. 휴업·폐업 등의 신고수리 및 폐기 물처리 확인	같은 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 제59조 의2	
	사. 폐기물처리신고, 변경신고수리, 신고 필증 교부 및 기타 행정처분(폐쇄 명령, 폐기물처리 금지명령) 등	같은 법 제46조제1항, 제3항, 제7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	
	아. 폐기물 처리기간 예외인정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제7호	
	자. 처리능력 2톤/시 이상 소각 시설 의 계량시설 미설치 인정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 별표 9	
	차. 폐기물 최종처리시설의 계량 시설 및 세륜·세차 시설 미설치 인정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 별표 9	
	카. 관리형매립시설에 대한 유사 치수 시설 인정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 별표 9	
	타. 매립되는 지정폐기물외의 폐기물이 침출수 발생이 없거나 발생하는 침출수가 항상 기준이하로 배출 인정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 별표 9	
	파.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온도 지 시계 등 계측장비의 비정상 작동 인정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 11	
	하. 매립시설 주변 수질검사결과 보고 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환경영향 조사 결과 보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 11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 별표 13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환경 정책 과	나. 매립시설 사후관리 종료신청 및 권리자에 통보	같은 법 시행규칙 제70조	시장· 군수
	더. 매립시설 검사기관이 실시한 안정성 검토성적서의 제출	같은 법 시행규칙 제70조	
	러. 폐기물 처리 실적의 보고, 전산 입력 등	같은 법 제5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1조	
	머. 행정처분에 따른 청문 기회부여 및 행정처분의 감경 등 결정	같은 법 제6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	
	며. 폐기물처리업자, 공제조합 등에 방치 폐기물 처리명령, 조치명령(변경명령), 처리이행 보증금의 정산, 처리명령의 연기 등	같은 법 제40조제2항, 제3항, 제4항, 제10항, 제11항, 같은 법시행령 제20조, 제22조, 제23조	
	서. 방치폐기물의 처리이행보증보험금의 수령, 계약, 보험증서 원본 접수, 보험 계약의 갱신 명령 등	같은 법 제40조제8항, 제9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 또는 폐기물 처리업 허가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장과의 협의	같은 법 제32조제3항	
	저. 권리의무승계신고의 수리	같은 법 제33조제3항	
	처. 사업장, 지정폐기물 보관기준 완화 및 보관기간 예외인정, 재활용시설 기준 완화 인정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 5 제66조 별표 17	
	커.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사업장폐기물의 농지·저지대·연약지반 등의 이용에 대한 인정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3제2항 별표 5의2 제2호 나목	
터. 의료폐기물(인체조직과 동물의 사체)의 공설묘지중 매장할 수 있는 장소 인정, 의료폐기물 보관기간 연장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 5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환경 정책과	피. 폐기물 배출자 및 처리업자 등에 폐기물 처리명령 허. 사후관리아행보증금 반환금 신청서 접수 처리	같은 법 제39조의2, 제39 조의3 같은 법시행규칙 제75조	시장· 군수
	9. 토양환경보전에 관한 다음 업무 가. 토양보전 필요지역 토양 정밀조사 실시 나. 토지, 건축물 등의 수용 및 사용 다. 타인토지에의 출입 등 라. 타인토지에의 출입으로 인한 손실 보상 마. 토양오염방지 조치 명령 등 10. 도립공원에 관한 다음 업무 가. 공원구역내 산림 기타자원의 보호 및 안전관리대책 나. 도립공원사업의 시행 및 공원 시설 관리 다. 비공원관리청의 공원사업 시행 허가 및 공원시설 관리허가 라. 공원구역의 행위허가 마. 공원구역의 원상회복 면제승인, 예치비용 관리 원상회복 조치 바. 공원입장료 및 공원시설 사용료의 정수와 공원시설 사용료 징수 허가 사. 공원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징수 아. 부당이득금의 징수 자. 금지행위의 단속	「토양환경보전법」 제5조 제4항 같은 법 제7조제1항 같은 법 제8조 같은 법 제9조 같은 법 제15조제1항 「자연공원법」 제3조 같은 법 제19조 같은 법 제20조 같은 법 제23조 같은 법 제24조 같은 법 제37조 같은 법 제38조 같은 법 제38조 같은 법 제27조	시장· 군수 (팔공산 도립공원 구역은 제외)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환경 정책과	차. 공원구역의 출입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28조	시장· 군수 (팔공산 도립공원 구역은 제외)
	카. 자연자원의 조사	같은 법 제36조	
	타. 영업 기타 행위의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29조	
	파. 법령 등 위반에 대한 처분	같은 법 제30조	
	하. 대집행	같은 법 제31조	
	거. 사법경찰관리의 지명제청	같은 법 제34조	
	너. 허가에 관한 협의	같은 법 제71조	
	더. 타인의 토지의 출입과 사용 등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72조	
	러. 공원별 보전·관리 계획의 수립 등	같은 법 제17조의2	
	머.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73조	
	버. 주민지원사업	같은 법 제73조의2	
	11. 건설폐기물처리업 및 처리시설에 관한 다음 업무		시장· 군수
	가. 건설폐기물처리업의 허가(사업계획 적정통보), 변경허가, 허가의 취소, 영업정지 명령 등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2조, 제25조 같은 법시행령 제14조, 같은 법시행규칙	
	나. 허가조건 부여, 허가증교부(재교부), 허가기간 연장, 방치폐기물 적정 처리 조치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다. 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승인	같은 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3호	
라. 임시보관장소 승인(변경승인), 승인서교부, 승인사항 통보	같은 법시행규칙 제4조		
마. 건설폐기물의 재위탁금지 예외인정	같은 법 제23조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환경 정책과	바. 과징금의 처분 등 사.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 (변경승인) 및 신고(변경신고) 아. 승인서 및 신고필증 교부 자.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완료 및 사용 신고 차.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 기준(개선, 사용중지, 폐쇄명령 등) 카. 개선기간 연장, 완료보고 및 사용 중지 명령 철회 타. 관계행정기관과의 협의 파. 권리·의무의 승계 등 하. 휴·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 및 보고 검사, 폐기물처리 확인·점검 등 거. 방치폐기물의 예방조치 및 방치 폐기물 처리이행보증 서류 접수, 보험금수령 등 너. 방치폐기물의 처리명령 더. 방치폐기물의 처리책임을 승계한 자에 대한 조치·행정대집행 및 처리 이행보증 주체에 대한 조치, 공제 조합과 협의 등 러. 청문 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증 발급, 수집·운반차량 부착 또는 표기 크기 조정, 장기보관 필요성 인정, 건설오니, 폐토석 등 재활용에 따른 중간처리기준 인정	같은 법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같은 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8조 같은 법 제28조 같은 법시행규칙 제20조 같은 법 제29조, 같은 법시행규칙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제7호 같은 법 제30조제3항 같은 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같은 법 제33조, 제34조 같은 법시행규칙 제25조, 제26조 같은 법 제41조, 제4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0조 같은 법 제43조, 제45조 같은 법 제45조, 제46조 같은 법 제5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별표 1의2	시장· 군수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환 경 정 책 과	비. 행정처분기준 감경 등  12. 경상북도자동차공회전제함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공회전 제한지역의 지정  나. 단속담당공무원의 임명 및 관리· 감독 다. 공회전 단속업무  13.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개선명령  나. 보고 및 검사 등  다. 과태료 부과징수  14. 고행연료제품의 제조자와 사용자의 준수사항 등  가. 고행연료제품공급계획서 접수 나. 고행연료제품 사용자의 고행연료 제품 사용신고 다. 다이옥신 배출기준 초과에 따른 통보 및 개선사항 제출	같은 법 제6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2 별표 3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 「경상북도자동차공회전 제함에 관한 조례」 제10조  같은 법 제59조, 동조례 제10조  같은 법 제59조, 동조례 제10조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제16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5 조의3, 같은 법시행규칙 제20조의6 및 별표 8	시장· 군수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환경 안전과	<p>1. 배출시설별 배출원 및 배출량조사 등</p> <p>2. 사업장의 규모별 구분에 의한 3~5종 사업장 중 다음사항 (다만, 동일 사업장에 대기, 수질이 복합으로 설치된 사업장 중 1개 사업이라도 사업장 1~2종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p> <p>가. 배출시설 설치허가, 변경허가 및 신고·변경신고의 수리</p> <p>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 개시 신고 수리</p> <p>다. 사업자에 대한 보고명령 및 검사</p> <p>라. 배출시설에 대한 개선명령</p> <p>마. 배출시설에 대한 조업정지 등의 명령</p> <p>바. 배출부과금의 부과 및 징수</p> <p>사. 배출시설에 대한 허가의 취소 배출 시설의 폐쇄 및 조업정지 명령</p> <p>아. 위법시설에 대한 폐쇄 조치 등</p> <p>자. 과징금 부과</p> <p>3. 연료의 공급·판매·사용의 금지 또는 조치명령 등</p> <p>4. 고체연료의 제조, 판매 또는 사용 금지 및 고체연료 사용의 승인 등</p> <p>5. 청정연료의 사용 등</p> <p>6.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의 규제 등</p> <p>7. 보고 및 검사 등(위임된 권한에 관한 사항)</p>	<p>「대기환경보전법」 제17조</p> <p>같은 법 제23조</p> <p>같은 법 제30조제1항</p> <p>같은 법 제82조제1항</p> <p>같은 법 제33조</p> <p>같은 법 제34조</p> <p>같은 법 제35조</p> <p>같은 법 제36조</p> <p>같은 법 제38조</p> <p>같은 법 제37조</p> <p>같은 법 제41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p> <p>같은 법 제42조</p> <p>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p> <p>같은 법 제44조, 제45조</p> <p>같은 법 제82조의 제1항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p>	<p>시장· 군수</p>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환경 안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8. 청문(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li> <li>9. 과태료 부과 징수 등(위임된 권한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다만 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 제2항제4호, 제7호는 도에서도 병행)</li> <li>10. 오염물질 누출, 투기행위자에 대한 방제조치 이행명령 및 대집행</li> <li>11. 하천·호소 구역안 특정농작물의 경작 권고</li> <li>12. 하천·호소 수질오염 경보제 시행</li> <li>13. 오염된 공공수역 행위제한 권고에 따른 조치</li> <li>14.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시행계획 수립, 이행평가 보고서 작성</li> <li>15. 고랭지 경작지에 대한 경작방법 권고</li> </ul>	<p>같은 법 제85조</p> <p>같은 법 제94조제2항, 제3항제1호 부터 제8호의2, 제4항제1호의2, 제2호</p> <p>「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법률」 제15조제3항, 제4항</p> <p>같은 법 제19조제1항, 제2항</p> <p>같은 법 제21조제1항</p> <p>같은 법 제21조의2</p> <p>같은 법 제56조제1항, 제2항</p> <p>같은 법 제59조제1항, 제2항</p>	시장· 군수
물산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공공하수처리시설(동 시설에 직접 연결된 차집관거 및 펌프장을 포함) 이외의 하수관거 설치인가</li> <li>2. 공공하수처리시설외의 하수관거의 설치공사 등에 대한 공사중지·변경 기타 필요한 조치명령</li> </ul>	<p>「하수도법」 제11조제3항</p> <p>같은 법 제25조</p>	시장· 군수
산림 자원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산림기술자 배치</li> <li>2. 청원 산림보호직원의 임용 (단, 도유림의 경우는 제외)</li> </ul>	<p>「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p> <p>「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7조</p>	시장· 군수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산 립 자 원 과	<p>3. 청원산림보호직원의 배치에 관한 다음 사항(단, 도유림의 경우는 제외)</p> <p>가. 직원의 배치</p> <p>나. 직원배치 보류 중지 등</p> <p>4. 보호수 관리 등에 관한 사항(경상북도 공유재산일 경우는 제외한다)</p> <p>가. 보호수 관리</p> <p>나. 보호수의 지정 및 지정해제, 보호수에 대한 행위제한, 보호수가 자라고 있는 토지의 매수 또는 교환 등</p> <p>5. 산림보호구역에 대한 다음의 권한(경상북도 공유재산일 경우는 제외한다)</p> <p>가. 산림보호구역의 지정</p> <p>나. 산림보호구역의 지정의 고시 등</p> <p>다.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 제한</p> <p>라.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p> <p>6. 산지관리 사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p> <p>가.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부과·징수·환급 및 감면</p> <p>나. 재해의 방지 등에 필요한 조사·점검 검사, 복구에 필요한 조치 명령, 복구대행 및 대집행, 비용충당 및 예치금의 예치</p> <p>다. 복구비의 예치 등</p>	<p>「청원산림보호직원의 배치에 관한 법률」 제2조 같은 법 제6조</p> <p>「산림보호법」 같은 법 제13조제1항 같은 법 제13조제2항</p> <p>「산림보호법」 같은 법 제7조 같은 법 제8조 같은 법 제9조 같은 법 제11조</p> <p>「산지관리법」 같은 법 제19조 및 제19조의2 같은 법 제37조 같은 법 제38조</p>	시장· 군수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산 립 자 원 과	<p>라. 산지전용지 등의 중간복구 명령 및 복구의무의 면제</p> <p>마. 복구설계서의 승인 등</p> <p>바. 복구의무자 이의신청 접수</p> <p>사. 복구의 대집행 등</p> <p>아. 복구준공검사,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명령 및 예치면제</p> <p>자. 복구비의 반환</p> <p>차. 불법산지전용지의 복구 등</p> <p>카. 불법전용산지 등의 조사 및 그 조사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의 명령</p> <p>타. 위임된 사항에 관한 법 제49조에 따른 청문과 법 제57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p> <p>7. 산림사업법인에 관한 사항</p> <p>가. 산림사업법인의 등록, 변경등록</p> <p>나. 산림사업법인의 시정명령, 영업정지,과징금 부과, 등록취소 등</p>	<p>같은 법 제39조제2항 및 제3항</p> <p>같은 법 제40조</p> <p>같은 법 제40조의2제4항</p> <p>같은 법 제41조</p> <p>같은 법 제42조</p> <p>같은 법 제43조</p> <p>같은 법 제44조제1항 및 제2항</p> <p>같은 법 제44조의2 제1항 및 제3항</p> <p>같은 법 제49조 및 제57조</p> <p>「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p> <p>같은 법 제24조</p> <p>같은 법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p>	시장· 군수
산 립 산 업 과	1. 가로수의 일반국도, 지방도(시의 읍·면, 군지역) 관리청	가로수 조성 및 관리 규정 제3조제2항	시장· 군수
사 회 복 지 과 노 인 효 복 지 과 장애인복 지 과 보 건 정 책 과 공통사항	<p>1. 사회복지법인의 정관변경 인가(법인의 설립 목적과 주요사업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제외)</p> <p>2. 사회복지법인 임원의 임면보고의 접수</p> <p>3. 사회복지법인 감사의 추천</p>	<p>「사회복지사업법」 제17조제2항</p> <p>같은 법 제52조제1항</p> <p>같은 법 제18조제6항 및 같은 법 제52조제1항</p> <p>같은 법 제18조제7항 및 같은 법 제52조제1항</p>	시장· 군수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사회복지과 노인효 복지과 장애인 복지과 보건정책과 공통사항	4. 사회복지법인 임시의사의 선임 5.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의 처분 등에 관한 허가 6. 사회복지법인 재산취득 보고의 접수	같은 법 제22조의3 제1항, 제3항 및 같은 법 제52조제1항 같은 법 제23조제3항 및 같은 법 제52조제1항 같은 법 제24조 및 같은 법 제52조제1항	시장· 군수
보건 정책과	1. 의료기관 및 의료인에 대한 지도와 명령	「의료법」 제59조제1항	시장· 군수
식품 의약품과	1. 의약품 등 제조업자의 영업소 등록 2. 의약품 등 판매업의 허가 및 변경 허가 등 3. 의약품 등 판매업의 허가증 갱신·재발급, 반납 4. 약종상, 한약종상, 매약상의 허가 증 교부, 허가대장 비치 영업소의 이전 허가 5. 마약류 도매업자의 판매 제한지에 대한 판매승인 6. 마약류관리자의 지정 및 변경 7. 마약취급자의 명부등재 및 허가 증 등의 교부·재교부 8. 동 휴·폐업 신고 및 재개업 신고 9. 마약류의 사고보고 10. 마약류취급 자격상실자의 양도 승인 11. 마약류취급업무 허가·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등 12. 마약류취급자의 사망, 무능력자 등 신고 수리 13. 마약취급자 명부에 관련사항 기재 14. 마약류 소매업자의 판매 보고 처리 15.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설정에 따른 협의	「약사법」 제31조제5항 「약사법」 제45조제1항 「약사법」 제8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0조, 제100조, 제103조 「약사법」 부칙 제4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같은 법 제6조제2항 같은 법 제7조 같은 법 제8조 같은 법 제12조 같은 법 제13조 같은 법 제44조 같은 법 제8조제3항 같은 법 제8조 같은 법 제29조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3조제2항	시장· 군수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도 시 계 획 과	<p>1.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중 법 제16조 제1항제3호 부터 제5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에 관한 다음권한</p> <p>가. 실시계획 승인</p> <p>나.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p> <p>다. 실시계획 승인에 관한 협의</p> <p>라. 공공시설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협의</p> <p>마. 국·공유재산의 용도 폐지 및 양도에 관한 협의</p> <p>바.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준공검사 및 공고, 보완시공 등 조치명령</p> <p>사. 준공인가 전 사용 사전승인</p> <p>아. 개발한 토지·시설 등의 처분 협의 및 승인</p> <p>자. 사업시행자의 업무에 대한보고 지시 및 검사(상기 가호부터 사호에 관한 다음 권한)</p> <p>차. 사업시행자에 대한 감독 처분 및 청문·고시(상기 가호부터 아호에 관한 권한)</p> <p>카. 30만㎡ 이상 일반산업단지의 산업단지계획 경미한 변경 중 다음 사항에 대한 변경 승인 및 고시</p> <p>1) 사업시행자의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p> <p>2) 법인인 사업시행자의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p> <p>3) 사업시행지역의 변동이 없는 범위에서 착오 등에 따른 사업 시행 면적을 100분의 10 미만의 범위에서 정정하는 경우</p>	<p>「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8조</p> <p>같은 법 제19조의2제1항</p> <p>같은 법 제21조제2항</p> <p>같은 법 제26조제3항</p> <p>같은 법 제27조제2항</p> <p>같은 법 제37조제2항 내지 제5항</p> <p>같은 법 제37조제8항</p> <p>같은 법 제38조 제1항, 제10항</p> <p>같은 법 제47조제1항</p> <p>같은 법 제48조</p> <p>「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제15조</p>	시장· 군수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도 시 계 획 과	<p>4) 사업시행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업을 분할하여 시행하기 위하여 그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p> <p>5) 산업단지내 산업시설용지 면적 중 배치된 주요 유치업종이 변경되는 면적이 100분의 10 미만인 경우</p> <p>6) 사업시행기간을 변경하는 경우</p> <p>2. 일반산업단지 관리업무에 관한 다음 권한</p> <p>가.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이하 "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및 그 집행에 관한 업무</p> <p>나. 공공시설, 지원시설 및 공동시설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그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업무</p> <p>다. 산업용지의 매각·임대, 그 사후 관리 및 산업단지의 입주에 관한 업무</p> <p>라.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을 위한 공장·지식산업센터 그 밖의 시설의 설치와 그 매각 및 임대에 관한 업무</p> <p>마.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을 위한 용수·전기·증기·가스 및 유류의 공급에 관한 업무</p> <p>바. 산업용지 및 시설의 설치·유지·보수 또는 개량에 따른 이용자로 부터의 비용징수에 관한 업무</p> <p>사. 산업단지구조조도화에 관한 업무</p>	<p>「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p> <p>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p> <p>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3호</p> <p>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4호</p> <p>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5호</p> <p>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6호</p> <p>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7호</p>	<p>시장·군수</p> <p>시장·군수 (경상북도 사무위탁조례제2조 및 경상북도 사무위탁조례제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는 제외)</p>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도 시 계 획 과	아. 입주기업에 대한 자금·기술·인력·판로 등의 지원에 관한 업무 자. 환경친화적 산업단지의 구축 및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업무 차. 산업단지안의 시설의 경비 및 산업 재해예방에 관한 업무 카. 기타 산업단지의 운영 및 입주기업체의 생산활동지원에 필요한 업무 3. 도시기반시설(도시·군계획시설)중 다음 시설에 대한 도시·군관리 계획의 결정 및 변경결정 및 고시 가. 도로(중로 이하, 도시지역외의 지역에서 관련 법상 도로관리청이 시장·군수인 도로에 한함) 나. 학교(고등학교 이하) 다. 공원(어린이공원, 소공원, 2만㎡ 미만 규모의 공원에 한함) 라. 도서관 마. 주차장 바. 궤도 사. 시장 아. 공공청사 자. 수도공급설비 차. 하수도 카. 도축장 타. 방풍설비 파. 사방설비 하. 방화설비 거. 방조설비 너. 연구시설 더. 문화시설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제8호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제9호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제10호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제11호 「국도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제30조	시장·군수 (경상북도 사무위탁조례 제2조 및 경상북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 제외) 시장·군수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도 시 계 획 과	리. 사회복지시설 머. 공공직업훈련시설 베틀.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 서. 광장(단, 교통광장은 중로 이하의 도로와 도시지역외의 지역에서 관련법상 도로관리청이 시장·군수인 도로에 접한 광장에 한함) 어. 하천(소하천정비법상 소하천) 저. 공공공지 처. 운동장(종합운동장 제외) 커. 전기공급시설 터. 장례식장 퍼. 저수지 허. 가스공급설비 고. 방수설비 노. 유수지 도. 폐차장 로. 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 모. 청소년수련시설 보. 공동묘지 소. 화장시설 오. 봉안시설 조. 체육시설(9홀 이상 골프장, 스키장, 자동차경주장 제외) 초. 폐기물처리시설	「국도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제30조	시장·군수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도 시 계 획 과	코. 자동차정류장 토. 열공급설비 포. 방송·통신시설 호. 공동구 구.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누. 자연장지 두. 종합의료시설 루. 수질오염방지시설 4. 경미한 도시·군관리계획(지구단위 계획 포함)의 변경결정 및 고시 5.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고시 6.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 의 승인 및 고시 7.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 시·군관리계획 결정의 실효고시 8.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 인가(변경, 폐지포함)·고시·협의 권 및 서류의 공람 9. 준공검사 필증교부, 공사완료도시· 군계획시설사업의 준공검사 및 공고와 협의권 10. 도시개발구역과 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및 고시 11.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인가 신청 기간의 연장 12. 도시개발사업의 규약을 정하게 할 수 있는 권한	같은 법 제30조제5항, 제6항 같은 법 제48조 같은 법 제32조 같은 법 제53조 같은 법 제88조, 제90조 부터 92조 같은 법 제98조 「도시개발법」 제4조, 제9조 같은 법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같은 법 제11조	시장· 군수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도 시 계 획 과	13. 도시개발사업시행의 신탁개발 승인	같은 법 제12조	시장· 군수
	14. 실시계획 인가 및 변경인가, 인가의 고시, 실시계획의 협의	같은 법 제17조, 제18조	
	15.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공사의 감리	같은 법 제20조	
	16. 선수금 승인	같은 법 제25조	
	17. 조성토지 등의 공급계획을 제출 받을 권한	같은 법 제26조	
	18. 도시개발사업의 준공검사 및 준공 검사 참여 요청	같은 법 제50조	
	19. 공사완료의 공고, 준공검사 필증의 교부, 보완시공 등의 조치	같은 법 제51조	
	20. 준공검사에 따른 협의	같은 법 제52조	
	21. 조성토지 등의 준공전 사용허가	같은 법 제53조	
	22. 도시개발구역밖의 도시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설치비용을 부담시키는 권한	같은 법 제58조	
	23. 공공시설의 귀속에 따른 공공시설의 관리청과의 협의 및 통보	같은 법 제66조	
	24. 국·공유지의 처분에 관한 협의	같은 법 제68조	
	25. 보고 및 자료의 제출 요구, 업무 및 회계의 검사	같은 법 제74조	
	26.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및 조치	같은 법 제75조	
	27. 청문 실시	같은 법 제76조	
	28. 도시공원조성계획의 결정 및 변경 결정 및 고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도 시 계 획 과	<p>2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외의 다른 법령에 의하여 시장·군수 권한 및 위임된 사무중 협의로써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및 변경을 의제하는 사무에 대한 협의 (단, 용도지역·지구·구역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및 변경 협의는 제외)</p> <p>30.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에 대한 공시송달 승인</p> <p>31.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시·군에 위임된 사무에 한함)</p>	<p>「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39조</p> <p>「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4조</p> <p>「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p>	시장·군수
도로철도 공 항 과	<p>1. 도로점용 등(국토교통부장관 관리 도로 제외)</p> <p>2. 권한의 위임·위탁</p> <p>3. 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p> <p>4. 공익을 위한 처분</p> <p>5. 지방도상 타 공작물의 공사시행</p> <p>6. 지방도상 공사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 명령</p> <p>7. 지방도상 접도구역의 지정 및 관리</p> <p>8. 지방도의 도로구조를 보전하거나 교통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p> <p>9. 지방도의 공사와 유지·관리 등</p> <p>10. 이행강제금 등의 부과·징수</p> <p>11. 재해발생 시 토지 등의 일시 사용 등</p>	<p>「도로법」 제61조부터 제63조, 제66조, 제68조부터 제70조, 제72조, 제74조 같은 법 제110조 같은 법 제96조 같은 법 제97조 같은 법 제33조 같은 법 제35조</p> <p>같은 법 제40조 같은 법 제45조 및 제46조 같은 법 제31조 같은 법 제100조 같은 법 제83조</p>	시장·군수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도로철도 공 항 과	<p>12. 건설기계 등록 등</p> <p>13. 등록사항의 변경신고</p> <p>14. 등록의 말소</p> <p>15. 건설기계 등록원부 보관</p> <p>16. 지방도에 관한 다음 사항  가. 공사 및 유지를 위한 타인 토지의  출입과 사용 및 장애물 제거  나. 지방도 폐도관리, 용도변경 또는  폐지  다. 지방도 폐도에 대한 사용, 수익허가</p> <p>17. 도가 시행하는 지방도로사업 편입용지  등에 대한 보상업무 중 다음의 사항  가.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나. 보상계획의 열람 등  다. 협의  라. 계약의 체결  마. 보상평가의 의뢰 및 평가, 재평가 등  바. 보상협의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  사. 편입토지 소유권 이전등기 업무</p> <p>18. 미불용지의 평가</p>	<p>「건설기계관리법」 제3조</p> <p>「건설기계관리법」 제5조</p> <p>「건설기계관리법」 제6조</p> <p>「건설기계관리법」 제7조</p> <p>「도로법」 제81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  령 제8조</p> <p>「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p> <p>「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1조  같은 법 제14조  같은 법 제15조  같은 법 제16조  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44조의2</p> <p>「부동산등기법」 제27조,  제28조</p> <p>「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p>	시장· 군수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도로철도 공 항 과	19. 등록번호표 봉인 등의 통지 및 등록번호표 재부착  20. 건설기계 구조의 변경 등 21. 등록번호표 반납 22. 건설기계 등록번호의 훼손금지 및 새김명령 등 23. 건설기계의 폐기 24. 건설기계의 강제처리 등 25. 건설기계 과태료처분 및 청문, 행정처분, 보고검사 등  26. 지방도 교차방법과 다른시설의 연결  27. 원인자 부담금 28. 수수료의 징수 29. 과오납금 반환 30. 변상금의 징수 31. 과태료 32. 도유재산 관리에 대한 다음의 사항  가. 도유재산(행정, 일반)의 실태조사 나. 도유행정재산에 대한 사용·수익허가	「건설기계관리법」 제8조 같은 법시행규칙 제17조, 제18조 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제9조 같은 법 제10조, 제11조 같은 법 제25조의2 같은 법 제34조의2 같은 법 제35조, 제35조의2, 제36조, 제44조 「도로법」 제51조, 제52조 「도로법」 제91조 「도로법」 제103조 「도로법」 제94조 「도로법」 제72조 「도로」 제117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4조 및 「경상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3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4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시장· 군수
건 축 디자인과	1. 감리자의 지정·보고, 감리자 교체 감리업무지정제한 등에 관한 권한 2. 주택건설사업의 착공신고서 처리 3.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한 다음의 권한	「주택법」 제24조  「주택법」 제16조	시장· 군수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건축 디자인과	<p>가.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를 걸쳐 운행하는 교통수단에 제작·표시·설치되는 광고물에 관한 허가 등</p> <p>나. 2 이상의 시·군 또는 자치구를 걸쳐 운행하는 교통수단에 제작·표시·설치되는 광고물에 관한 허가 등</p>	<p>「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의2 제1호</p> <p>같은 법 제3조의2 제2호</p>	시장·군수
하천과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하천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으로 발생한 권리 의무의 승계신고</li> <li>2. 하천의 구조·시설 및 유지·보수 등의 기준</li> <li>3. 하천시설의 관리규정</li> <li>4. 하천수의 사용·관리 및 기록 보관</li> <li>5. 하천공사 및 유지·보수 (단, 하천관리청이 직접 시행하는 하천공사 및 유지 보수는 제외)</li> <li>6. 하천관리청이 아닌자의 하천공사나 하천의 유지 관리</li> <li>7. 하천의 점용 허가(법 제33조제1항 제3호의 공작물중 교량(세월교포함) 취입보, 하천 복개제외) 및 고시</li> <li>8. 동 점용하천의 하천점용에 관한 공사의 대행</li> <li>9. 동 점용료 등의 징수(국가하천의 점용료 사용료 징수포함) 및 감면</li> <li>10. 지방하천 예정지 등에서의 행위 제한</li> <li>11. 부담금 등의 강제징수</li> <li>12. 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등</li> </ol>	<p>「하천법」 제5조제2항</p> <p>같은 법 제13조</p> <p>같은 법 제14조</p> <p>같은 법 제52조</p> <p>같은 법 제27조</p> <p>같은 법 제30조</p> <p>같은 법 제33조</p> <p>같은 법 제36조</p> <p>같은 법 제37조</p> <p>같은 법 제38조</p> <p>같은 법 제67조</p> <p>같은 법 제69조</p>	시장·군수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하 천 과	<p>13. 같은 법에 의한 허가나 승인을 얻은 자에 대하여 공익을 위한 처분이나 조치명령</p> <p>14. 하천관리원 임명, 위반사항조치명령 권한</p> <p>15. 같은 법에 필요한 보고, 출입, 검사의 권한</p> <p>16. 동 하천관리를 위한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사용, 장애물의 변경, 제거</p> <p>17. 하천 안에서의 금지행위 지정 및 고시</p> <p>18. 하천의 사용 금지 및 공고</p> <p>19. 동 원상회복, 면제, 비용의 예치</p> <p>20. 도가 시행하는 하천사업 편입용지 등에 대한 보상업무</p> <p>21. 같은 법에 의한 폐천부지 등의 고시</p> <p>22. 같은 법에 의한 청문의 실시</p> <p>23. 지방하천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과태료 부과·징수</p> <p>가. 제75조제2항 위반 타인토지 출입</p> <p>나. 제46조제6호 및 7호 위반행위</p> <p>다. 제5조제2항 신고의무 위반</p> <p>라. 제52조제1항부터 제3항 위반</p> <p>마. 제75조제1항에 따른 토지에의 출입 등에 대한 거부·방해</p>	<p>같은 법 제70조</p> <p>같은 법 제72조 「청원경찰법」 제5조제1항</p> <p>같은 법 제90조</p> <p>같은 법 제75조</p> <p>같은 법 제46조</p> <p>같은 법 제47조</p> <p>같은 법 제48조</p> <p>「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p> <p>같은 법 제84조</p> <p>같은 법 제91조</p> <p>같은 법 제98조</p>	시장·군수
수 산 진 흥 과	<p>1. 해양수산부의 예산지원으로 도지사가 시설한 수산시설의 관리책임 등</p>	<p>「해양수산 보조 및 용자사업에 관한 관리 규정 제32조」</p>	시장·군수

【별표 3】

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자치행정과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6급이하 일반직공무원의 직속기관내 전보 및 보직발령권 단, 농업기술원의 본원과 시험장간 및 보건환경연구원 본원과 지원간은 제외</li> <li>2. 연구관 및 지도관의 전보권 단, 농업자원관리원 및 잠사곤충 사업장은 제외</li> <li>3. 연구사 및 지도사의 임용권(승진후보자 명부작성권 포함) 단, 농업자원관리원 및 잠사곤충 사업장은 제외</li> <li>4. 연구직공무원의 직속기관내 전보권. 단, 보건환경연구원 본원과 지원간은 제외</li> </ol>	<p>「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p> <p>「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p> <p>「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p> <p>「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p>	<p>직속기관장</p> <p>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p> <p>직속기관장</p>
소방행정과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소방학교 또는 소방서소속 지방소방경 이하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호봉확정 및 승급</li> </ol>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6조	소방학교장, 소방서장
대응구조구급과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의 등록 등에 관한 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의 등록</li> <li>나. 시험자의 등록신청, 등록증교부</li> <li>다. 시험자의 등록취소, 공고, 등록증 회수</li> <li>라. 시험자의 중요사항 변경신고</li> </ol> </li> <li>2. 소방시설관리업에 관한 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소방시설관리업 등록 및 변경</li> <li>나. 지위승계신고 수리</li> <li>다. 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li> <li>라. 과징금 처분</li> <li>마.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의 재교부 및 반납</li> </ol> </li> </ol>	<p>「위험물안전관리법」 제16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 같은 법 제16조 제3항</p> <p>「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제31조 같은 법 제32조 같은 법 제34조 같은 법 제35조 같은 법 제29조 제3항</p>	소방서장

【별표 4】

사업소장 및 지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자치행정과	1. 6급이하 일반직공무원과 연구사 지도사의 본소와 지소(출장소 등 본소의 하부기관 포함)내의 전보	「지방공무원법」 제6조2항	사업소장 및 지소장
축산경영과	1. 축산물 작업장의 시설검사	「축산물위생처리법 시행규칙」 제18조	가축위생시험소장 (지소장 포함)
환경정책과	1. 도립공원에 관한 다음업무 (팔공산도립공원구역에 한함) 가. 공원구역내 산림 기타 자원의 보호 및 안전관리 대책 나. 도립공원사업의 시행 및 공원시설 관리 다. 비공원관리청의 공원사업 시행허가 및 공원시설 관리허가 라. 공원구역의 행위허가 마. 공원구역 원상회복 면제승인, 예치비용관리, 원상회복 조치  바. 공원입장료 및 공원시설 사용료의 징수와 공원시설 사용료징수 허가 사. 공원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징수 아. 부당이득금의 징수 자. 금지행위의 단속 차. 공원구역의 출입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사항 카. 자연자원의 조사 타. 영업 기타 행위의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사항	「자연공원법」 제3조  같은 법 제19조  같은 법 제20조  같은 법 제23조 같은 법 제24조  같은 법 제37조  같은 법 제38조 같은 법 제38조 같은 법 제27조 같은 법 제28조  같은 법 제36조 같은 법 제29조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환경 정책 과	파. 법령 등 위반에 대한 처분 하. 대집행 거. 사법경찰관리의 지명제청 너. 허가에 관한 협의 더. 타인의 토지의 출입과 사용등에 관한 사항 러. 공원보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머.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 버. 주민지원사업 서. 협의에 의한 토지 등의 매수 어. 토지매수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30조 같은 법 제31조 같은 법 제40조 같은 법 제34조 같은 법 제71조 같은 법 제72조 같은 법 제17조의2 같은 법 제73조 같은 법 제73조의2 같은 법 제76조 같은 법 제77조	팔공산도립 공원관리 사무소장
도로철도 공항과	1. 도로표지 정비 2. 지방도 접도구역내 도로변 휴게소 등 시설물 설치허가에 따른 협의 3. 지방도 점용허가에 따른 협의  4. 지방도에 따른 도로, 통로 기타의 신설 연결허가 협의	「도로법」 제52조 「도로법」 제50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3항 「도로법」 제40조 제1항 「도로법」 제54조 의6제2항	종합건설 사업소장

【별표 5】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투자 유치 실	1. 외국인 투자지역의 관리에 관한 권한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대구경북 경제자유 구역청장
청정 에너지 산업과	1.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가스용품 제조사업에 대한 다음의 권한 가. 허가 및 변경허가  나. 허가의 세부기준 설정 다. 사업의 휴지 등 신고의 수리 라. 사업자 등의 지위승계 등의 신고수리 마. 허가취소 및 사업정지 명령 또는 제한명령 바. 과징금의 부과·징수 사. 안전관리규정 수리 및 변경명령, 확인·평가 아. 안전관리 선임·해임·퇴직사실 신고 수리, 선임기간 연장승인, 해임요구 자. 위해방지 조치명령, 시설 등의 이전·사용정지 또는 사용제한명령, 시설 등의 안에 있는 액화석유가스 폐기 명령, 시설 등의 봉인 차.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집단공급사업자, 판매사업자에 대한 가스의 수급 및 안전 확보상 필요한 조정 명령 카.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제출 명령 및 시설·용기·용품·장부·서류 기타물건 조사 타. 청문 파. 위임사무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 같은 법 제4조 같은 법 제7조 같은 법 제8조제3항 같은 법 제9조  같은 법 제10조 같은 법 제12조  같은 법 제16조  같은 법 제29조  같은 법 제34조  같은 법 제38조  같은 법 제40조 같은 법 제52조	대구경북 경제자유 구역청장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청 정 에 너 지 산 업 과	<p>2. 석유판매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일반 대리점, 용제대리점 및 부생연료유 판매소는 제외한다)</p> <p>가. 석유판매업의 등록·신고 및 변경 등록·신고</p> <p>나. 조건부 등록 및 취소</p> <p>다. 사업의 개시·휴업 및 해업의 신고</p> <p>라. 등록의 취소 및 정지명령</p> <p>마. 과징금 부과·징수</p> <p>바. 유사석유제품의 제조·판매·운송·사용의 중지명령, 제조장·판매소·저장시설의 폐쇄·철거명령 및 대 집행</p> <p>사. 보고명령 및 검사·시료채취</p> <p>아. 청문</p> <p>자. 과태료 부과·징수(유사석유제품임을 알면서 사용한 자를 포함한다)</p> <p>3. 석유대체연료판매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다만, 석유대체연료대리점은 제외한다)</p> <p>가.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등록 및 변경 등록</p> <p>나. 등록의 취소 및 정지명령</p> <p>다. 과징금 부과·징수</p> <p>라. 보고명령 및 검사·시료채취</p>	<p>「석유 및 석유대체 연료사업법」 제10조</p> <p>같은 법 제11조</p> <p>같은 법 제12조제2항</p> <p>같은 법 제13조제3항</p> <p>같은 법 제14조</p> <p>같은 법 제30조</p> <p>같은 법 제38조</p> <p>같은 법 제49조</p> <p>같은 법 제33조</p> <p>같은 법 제34조</p> <p>같은 법 제35조</p> <p>같은 법 제38조</p>	<p>대구경북 경제자유 구역청장</p>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청 정 에 너 지 산 업 과	마. 청문 바. 과태료 부과·징수 4.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한 용기, 냉동기, 특정설비 제조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용기, 냉동기, 특정시설의 제조등록 및 변경등록 나. 허가·등록의 취소 등의 처분 다. 과징금의 부과·징수  라. 안전관리규정 변경 명령  마. 안전성 향상계획 변경 명령 바. 안전관리자의 선·해임신고 수리 사. 안전관리자의 해임요구 아. 기술자격의 취소, 정지 요청  자. 완성검사 차. 임시사용 허가 카. 용기 등의 검사 타. 용기 등의 품질보장 등 파. 위해 방지조치 등 하. 청문  5.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 용제대리점 및 부생 연료유판매소 제외)에 관한 사무중 석유판매 업자가 판매하는 석유제품의 품질검사 결과의 공표	같은 법 제40조 같은 법 제49조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5조 같은 법 제9조 같은 법 제9조의2  같은 법 제11조제4항  같은 법 제13조의2 제2항 같은 법 제15조제3항  같은 법 제15조제6항  같은 법 제15조제7항  같은 법 제16조제3항 같은 법 제16조제4항 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제18조 같은 법 제24조 같은 법 제35조의3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25조제7항	대구경북 경제자유 구역청장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관 광 진 흥 과	1. 관광(단)지의 지정 등 가. 관광지 및 관광단지 지정 나. 관광(단)지 지정 협의 다. 관광(단)지 지정 취소 또는 면적변경 라. 관광(단)지 지정 고시 2. 관광지 지정을 위한 해당지역 조사측량 실시 3.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 등 가.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 나.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변경 다. 조성계획 승인(변경) 협의 4. 관광지 조성계획승인 전 사업시행자의 토지 매입 승인 5. 관광지 지정 등의 실효 및 취소 등 가. 관광(단)지의 조성계획 승인 취소 및 개선명령 나. 조성계획 승인신청 또는 사업 착수 기한 연장 다. 관광(단)지 지정 실효 및 취소 고시	「관광진흥법」 제52조  같은 법 제53조 같은 법 제54조  같은 법 제55조  같은 법 제56조	대구경북 경제자유 구역청장
체 육 진 흥 과	1. 체육시설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등록체육시설업 사업계획 승인, 변경 승인  나. 등록체육시설업 사업계획 승인의 제한 다. 등록체육시설업 회원모집계획서 수리 라. 체육시설업 등록(조건부 등록), 변경 등록 마. 등록체육시설업 사업계획(변경) 승인에 따른 관계 기관간 협의, 승인취소 통보 바. 시정명령 사. 체육시설사업계획 승인 취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 법 제13조  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제19조  같은 법 제28조  같은 법 제30조 같은 법 제31조	대구경북 경제자유 구역청장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체 육 진 흥 과	아. 등록체육시설업자의 등록취소, 영업의 폐쇄 명령, 영업정지 자. 청문 실시 차. 과태료 부과·징수	같은 법 제32조  같은 법 제33조 같은 법 제40조	대구경북 경제자유 구역청장
환 경 정 책 과	1.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개선명령  나. 보고 및 검사 등 다. 과태료 부과·징수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제13조제1항·제2항 같은 법 제16조	대구경북 경제자유 구역청장
환 경 안 전 과	1.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및 배출량 조사  2. 사업장 등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규제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변경허 가 및 신고·변경신고의 수리  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 개시 신고의 수리 다. 측정기기의 운영·관리기준 미준수 사업자에 대한 조치명령 라. 조치명령 미이행 배출시설에 대한 조업 정지 명령 마. 배출허용기준 초과 배출시설 사 업자에 대한 개선명령 바. 배출시설에 대한 조업정지 등 의 명령 사. 배출부과금의 부과 및 징수  아. 허가의 취소, 배출시설의 폐쇄 명 령 및 조업명령 자.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대기환경보전법」 제17조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제1항 제1호  같은 법 제3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제32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3호  같은 법 제32조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4호  같은 법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5호  같은 법 제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7호  같은 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8호  같은 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9호	대구경북 경제자유 구역청장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환경 안전 과	차. 위법시설에 대한 폐쇄조치 등 카. 환경기술인의 임명 및 변경임명 신고의수리 타. 개선계획서의 접수 3. 연료용 유류 등에 대한 대기오염 물질 배출 규제에 관한 권한 가. 황 함유기준 초과하는 연료의 공급·판매 사용하는 자에 대한 사용금지 등 필요한 조치명령 나. 연료의 제조·판매·사용금지 등 조치 명령 다. 이행완료보고서 접수 라. 고체연료 사용제한 및 사용금지 마. 고체연료 사용승인신청서 수리, 고체연료 사용승인서 발급 바. 청정연료 외의 연료에 대한 사용금지 명령 사. 청정연료의 사용대상 시설에 대한 연료용 유류의 공급 또는 판매금지 명령 아. 과태료 부과·징수 등 4.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다만, 환경부장관 관할사업장은 제외) 가.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 신고·변경신고 수리, 신고증명서 발급 나. 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명령 다. 기존배출시설 설치신고·변경신고 수리 라. 조치기간 연장 승인	같은 법 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10호 같은 법 제4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1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3항, 제4항, 제63조제1항제16호 같은 법 제41조제4항 같은 법 제42조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3항, 같은 법시행규칙 제56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2항 같은 법 제94조,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대기환경보전법」 제44조제1항부터 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 같은 법 제44조제7항 같은 법 제45조제1항부터 제3항 같은 법 제45조제4항	대구경북 경제자유 구역청장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환 경 안 전 과	<p>마. 같은 조 제1항제2호부터 제5호, 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검사</p> <p>바. 청문</p> <p>5. 보고 및 검사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보고명령, 자료제출 요구, 출입, 채취, 검사(사업자 제외)</p> <p>나. 청문</p> <p>다. 과태료의 부과·징수</p> <p>6. 환경기술인 교육대상자 선발 및 통지</p> <p>7. 환경기술인 교육대상자 선발 및 등록</p>	<p>같은 법 제82조</p> <p>같은 법 제85조</p> <p>같은 법 제82조제1항부터 제3호,</p> <p>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12호·제13호</p> <p>같은 법 제85조,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14호 같은 법 제94조,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15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27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6조</p>	대구경북 경제자유 구역청장
보 건 정 책 과	<p>1. 의료기관(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부속병원)에 대한 다음의 권한 가. 개설허가 및 개설장소 이전·개설에 관한 신고 또는 허가사항 변경 허가</p> <p>나. 의료보수의 신고</p>	<p>「의료법」 제3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및 제28조</p> <p>같은 법 제45조</p>	대구경북 경제자유 구역청장
식 품 의 약 과	<p>1. 마약류 도·소매업자, 의료업자, 마약류 관리에 대한 다음의 권한 가. 마약류취급자의 허가(변경)·지정</p> <p>나. 마약류 관리자의 지정 및 변경 지정</p> <p>다. 허가증, 지정서의 교부 및 재교부</p> <p>라. 마약류취급자의 폐업·휴업·재개업신고</p>	<p>「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p> <p>같은 법 제6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부터 제12조 같은 법 제7조제1항, 제2항 같은 법 제8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p>	대구경북 경제자유 구역청장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식품의약품	<p>마. 마약류취급자의 사망, 무능력자가 된 때 및 법인이 해산한 경우 신고</p> <p>바. 마약구입서 및 마약판매서 교부</p> <p>사. 사고 마약류의 처리</p> <p>아. 자격상실자의 마약류 처분</p> <p>자. 마약류도매업자의 마약 등 판매승인</p> <p>차. 마약의 도매보고</p> <p>카. 마약의 소매보고</p> <p>타. 마약류관리자의 마약류 인계·인수 신고</p> <p>파. 허가 등의 제한</p> <p>하. 출입·검사와 수거</p> <p>거. 폐기 명령 등</p> <p>니. 업무보고 등</p> <p>더.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정지</p> <p>리. 청문</p> <p>머. 과징금 처분</p> <p>2. 의약품 판매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p> <p>가. 의약품 판매업 허가, 변경허가</p> <p>나. 의약품도매상의 휴업·폐업·재개업 신고 수리</p> <p>다. 보고 지시와 검사</p> <p>라. 업무 개시 명령 등</p> <p>마. 폐기 명령 등</p> <p>바. 검사명령</p> <p>사. 개수명령</p> <p>자. 허가·승인·등록의 취소, 업무정지 명령</p> <p>차. 청문</p> <p>카. 약사감시원 등 임명</p> <p>타. 허가증 갱신</p> <p>파. 과징금 부과·징수</p> <p>하. 과태료 부과·징수</p>	<p>같은 법 제8조제3항</p> <p>같은 법 제10조</p> <p>같은 법 제12조</p> <p>같은 법 제13조</p> <p>같은 법 제26조제1항, 제2항</p> <p>같은 법 제27조</p> <p>같은 법 제29조</p> <p>같은 법 제33조제2항</p> <p>같은 법 제37조</p> <p>같은 법 제41조</p> <p>같은 법 제42조</p> <p>같은 법 제43조</p> <p>같은 법 제44조</p> <p>같은 법 제45조</p> <p>같은 법 제46조</p> <p>「약사법」 제45조</p> <p>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p> <p>같은 법 제69조</p> <p>같은 법 제70조제1항</p> <p>같은 법 제71조제1항부터 제3항</p> <p>같은 법 제73조</p> <p>같은 법 제74조</p> <p>같은 법 제76조제1항</p> <p>같은 법 제77조</p> <p>같은 법 제78조</p> <p>같은 법 제80조</p> <p>같은 법 제81조</p> <p>같은 법 제98조</p>	<p>대구경북 경제자유 구역청장</p>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도 시 계 획 과	<p>1.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다음의 권한</p> <p>가.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변경) 및 고시 협의 권한</p> <p>나.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승인 및 고시</p> <p>2.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대한 다음의 권한</p> <p>가.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고시</p> <p>나.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실시 계획인가 (변경, 폐지포함), 고시, 협의권한 및 서류의 공람</p> <p>다.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의 준공검사 및 준공 검사 필증교부, 공사완료 공고와 협의 권한</p> <p>3. 도시공원조성계획의 결정 및 변경결정 및 고시</p> <p>4.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p> <p>가. 도시개발구역 지정(개발계획 수립 및 변경 포함) 및 고시, 협의 권한</p> <p>나.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신청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청회개최(시장·군수의 요청에 의하여 지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p> <p>다.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해제 및 고시</p> <p>라. 도시개발사업의 규약을 정하게 할 수 있는 권한</p> <p>마.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 신청기간의 연장</p> <p>바. 도시개발사업시행의 신탁개발 승인</p> <p>사. 조합설립의 인가(변경)</p> <p>아.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협의권</p> <p>자. 선수금 승인</p> <p>차. 조성토지 등의 공급계획을 제출받을 권한</p> <p>카. 환지계획의 인가(변경)</p> <p>타. 청산금의 징수위탁 수행</p>	<p>「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30조</p> <p>같은 법 제32조</p> <p>같은 법 제48조</p> <p>같은 법 제88조, 제90조부터 제92조</p> <p>같은 법 제98조</p> <p>「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p> <p>「도시개발법」 제3조, 제4조, 제9조</p> <p>같은 법 제7조</p> <p>같은 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p> <p>같은 법 제11조제3항</p> <p>같은 법 제11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p> <p>같은 법 제12조제4항</p> <p>같은 법 제13조</p> <p>같은 법 제17조</p> <p>같은 법 제25조</p> <p>같은 법 제26조</p> <p>같은 법 제28조</p> <p>같은 법 제46조</p>	대구경북 경제자유 구역청장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도 시 계 획 과	파. 도시개발사업의 준공검사 및 준공검사 참여요청 하. 공사완료의 공고, 준공검사 필증의 교부, 보완시공 등의 조치 거. 준공검사에 따른 협의 너. 조성토지 등의 준공전 사용허가 더. 도시개발구역밖의 도시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설치비용을 부담시키는 권한 러. 공공시설의 귀속에 따른 공공시설의 관리청과의 협의 및 통보 머. 국·공유지의 처분에 관한 협의  버. 보고 및 자료의 제출 요구, 업무 및 회계의 검사 서.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및 조치 어. 청문 실시  5.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중 법 제16조제1항 제1호부터 제5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업 시행자 지정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실시계획 승인  나.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다. 실시계획 승인에 관한 협의 라. 공공시설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협의 마. 국공유재산의 용도 폐지 및 양도에 관한 협의 바. 개발사업이 준공인가 및 준공검사를 위한 검사 의뢰 사.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공고 및 통지, 보완 시공 등 조치명령 아. 사업시행자의 업무에 대한 보고 지시 및 검사 (상기 가호부터 사호에 관한 다음권한) 자. 사업시행자에 대한 감독 처분 및 청문·고시(상기 가호부터 아호에 관한 권한) 6. 기초조사의 실시 7. 국가산업단지 지정협의	같은 법 제50조 제1항부터 제3항 같은 법 제51조  같은 법 제52조 제3항 같은 법 제53조 같은 법 제58조 제1·3·4항 같은 법 제66조 제3항 같은 법 제68조 제2항  같은 법 제74조제1항 같은 법 제75조 같은 법 제76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 제18조  같은 법 제19조의2 제1항 같은 법 제21조제2항 같은 법 제26조제3항 같은 법 제27조제2항 같은 법 제37조제2항 같은 법 제37조제5항 같은 법 제47조제1항 같은 법 제48조  같은 법 제4조 같은 법 제6조	대구경북 경제자유 구역청장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도 시 계 획 과	8. 30만제곱미터 이상의 일반산업단지의 지정 및 고시 9. 지정된 산업단지안에서의 행위허가 및 변경 허가, 원상회복명령 10. 10만제곱미터 이상의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및 고시 11. 30만제곱미터 이상의 일반산업단지 또는 10만제곱미터 이상의 도시첨단산업단지의 해제, 전환 및 고시 12. 30만제곱미터 이상의 일반산업단지 개발 실시계획의 승인 13. 10만제곱미터 이상의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 실시계획의 승인 14.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 실시계획의 승인고시, 의제 및 준공인가 15. 산업단지내 토지에의 출입 등 16. 산업단지내 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17. 산업단지내 국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18. 개발한 토지, 시설 등의 처분합의 19. 산업단지개발사업에 따른 검사 등 20.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인가·승인의 취소, 중지 처분 등 21. 국가산업단지의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 22.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관리 23. 산업단지공단에 대한 다음의 권한 가. 산업단지 관리기관 업무의 위임·위탁 나.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 다.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이의제기 법원 통보 24. 산업단지계획의 승인 및 고시 25. 자전거 이용시설의 정비 26.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같은 법 제7조, 제7조의4  같은 법 제12조  같은 법 제7조의2, 제7조의4  같은 법 제13조, 제13조의2  같은 법 제18조  같은 법 제18조의2  같은 법 제19조의2, 제21조, 제37조  같은 법 제25조 같은 법 제26조 같은 법 제27조 같은 법 제38조 같은 법 제47조 같은 법 제48조  같은 법 제49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제31조 같은 법 제33조 같은 법 제55조제1항·제3항·제5항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제15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	대구경북 경제자유 구역청장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도로철도 공 항 과	<p>1. 도로법에 의한 다음의 권한(지방도에 한함.) (단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에 의함.)</p> <p>가. 도로공사계획 수립 및 공고 나. 지방도상 공사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명령 다. 도로표지의 설치·관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수립·시행 등</p> <p>2. 도로점용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도로부지 점용 양도신고 나. 지방도 도로점용공사의 대행 및 통지 다. 도로점용료의 징수 라. 도로점용자의 원상복구면제 승인</p>	<p>「도로법」 시행령 제24조의 3 같은 법 제31조</p> <p>같은 법 제57조 및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조</p> <p>「도로법」 제4조 같은 법 제40조</p> <p>같은 법 제41조 같은 법 제43조</p>	대구경북 경제자유 구역청장
건축 디자인과	<p>1. 주택건설사업의 시행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사업계획의 승인 나.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 등의 의제 등 협의 다. 토지에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 보상 라. 주택의 감리 등 마. 부실감리자에 대한 조치 바. 공유지 등의 우선매각 및 임대</p> <p>2.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권한</p>	<p>「주택법」 제16조 같은 법 제17조</p> <p>같은 법 제19조</p> <p>같은 법 제24조 같은 법 제24조의3 같은 법 제25조</p> <p>「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p>	대구경북 경제자유 구역청장
토지 정보과	<p>1. 지적관리를 위한 다음의 권한 가. 지번변경의 승인 나. 지정공부의 반출 승인 다. 지정공부의 복구 라. 도면의 제작성 승인 마.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활용에 관한 승인 바. 축척변경의 승인 사. 지적측량성과의 검사 아. 지적측량기준점성과의 관리 자. 지적측량기준점성과의 열람 및 등본교부</p>	<p>「지적법」 제4조제2항 같은 법 제8조제2항 같은 법 제12조 같은 법 제13조제1항 같은 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같은 법 제23조제1항 같은 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같은 법 제39조, 같은 법시행령 제45조</p>	대구경북 경제자유 구역청장

경상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장 대 진

2015년 6월 26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4]

행정정보공개 수수료 기준표

공개 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열람·시청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문서·도면·사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열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일 1시간 이내: 무료</li> <li>-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본(종이출력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3 이상 300원</li> <li>· 1장 초과마다 100원</li> <li>- B4 이하 250원</li> <li>· 1장 초과마다 50원</li> </ul> </li> </ul>
필름·테이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li> <li>·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li> <li>-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li> <li>·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li> </ul> </li> <li>○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li> <li>·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li> <li>-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li> <li>·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li> <li>· 1개마다 5,000원</li> <li>-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li> <li>· 1건마다 3,000원</li> <li>※ 매체비용은 별도</li> </ul> </li> <li>○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li> <li>· 1롤마다 5,000원</li> <li>-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li> <li>· 1편마다 3,000원</li> <li>※ 매체비용은 별도</li> </ul> </li> </ul>

<p>필름· 테이프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화필름의 시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li> </ul> </li> <li>-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li> </ul> </li> </ul> </li> <li>○ 사진필름의 열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장: 200원</li> <li>· 1장 초과마다 50원</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진필름의 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컷마다 6,000원</li> <li>※ 매체비용은 별도</li> </ul> </li> <li>○ 사진필름의 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컷마다 500원</li> <li>· 1장 초과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3"×5" 200원</li> <li>5"×7" 300원</li> <li>8"×10" 400원</li> </ul> </li> </ul> </li> </ul>
<p>마 이 크 필름· 슬라 이드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건(10컷 기준)1회: 500원</li> <li>·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li> </ul> </li> <li>○ 슬라이드의 시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컷마다 200원</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본(종이출력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3 이상 300원</li> <li>· 1장 초과마다 200원</li> <li>- B4 이하 250원</li> <li>· 1장 초과마다 150원</li> </ul> </li> <li>○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롤마다 1,000원</li> <li>※ 매체비용은 별도</li> </ul> </li> <li>○ 슬라이드의 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컷마다 3,000원</li> <li>※ 매체비용은 별도</li> </ul> </li> </ul>
<p>전 과 자 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일 1시간 이내 : 무료</li> <li>-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본(종이출력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3 이상 300원</li> <li>· 1장 초과마다 100원</li> <li>- B4 이하 250원</li> <li>· 1장 초과마다 50원</li> </ul> </li> </ul>

전 자 파 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시청·청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편: 1,500원</li> <li>·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건 1MB(메가바이트) 이내: 무료</li> <li>- 1MB 초과 시 1MB마다 100원 (다만, 10장마다 100원을 초과할 수 없음)</li> <li>-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li> <li>-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li> </ul> </li> <li>※ 매체비용은 별도</li> <li>○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li> <li>-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li> </ul> </li> <li>※ 매체비용은 별도</li> </ul>
------------------	---	---

〈 비 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 한다.

경상북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장 대 진

2015년 6월 26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 경상북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에 성공적으로 적응하여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2.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활동을 하는 비영리법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시책을 추진

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 결정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언어·기초학력 및 사회 적응 교육
2. 생활고충·법률·취업 등의 상담 및 지원
3. 생활편의 제공 및 의료지원
4.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개최
5.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 개선 사업
6. 북한이탈주민의 수 및 생활수준 등 실태조사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협의회 구성 등)** ① 도지사는 북한이탈주민 지원 시책과 관련된 필요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북한이탈주민지원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도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경상북도 업무담당 국장, 북한이탈주민 다수 거주지역 시·군 업무담당 국장 또는 과장, 경상북도교육청·경북지방경찰청·대구지방고용노동청의 부서책임자
2. 위촉직 위원 : 북한이탈주민지원 업무와 관련된 기관·단체

에 근무하는 사람, 북한이탈주민 지원 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고, 간사는 북한이탈주민 소관업무 과장으로 하며, 서기는 북한이탈주민 소관업무 사무관으로 한다.

**제6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주요사항
2.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을 위한 민·관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장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개최할 수 있다. 다만, 특별

한 사유가 있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③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협의회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비밀엄수 의무)** 협의회 위원은 회의 및 사업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제반 정보에 대해서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수당 등)** 경상북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협의회에 출석한 전문가 및 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업무의 위임 및 위탁)** ① 도지사는 제4조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경상북도 사무위임조례」 또는 「경상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북한이탈주민 지원 단체에 업무의 일부를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는 경우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도를 할 수 있다.

**제12조(포상)** ① 도지사는 북한이탈주민 지원에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를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경상북도 포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장 대 진

2015년 6월 26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7호 중 “광역시·도 시군의 읍·면지역에 위치한 공유지”를  
“도 공유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b>제40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b>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의한 수의 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6. (생략)</p> <p>7.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서 <b>광역시·도 시·군의 읍·면지역에 위치한 공유지</b>를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자에게 1만 제곱미터 범위에서 매각하는 경우</p>	<p><b>제40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b>  _____</p> <p>_____</p> <p>_____</p> <p>1. ~ 6. (현행과 같음)</p> <p>7. _____도 공유지_____</p> <p>_____</p> <p>_____</p> <p>_____</p>

##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15년 6월 16일

제안자 : 행정보건복지위원장

### 1. 수정이유

- 경북도의 공유지 중 동지역의 공유지와 10개 시의 공유지 중 동지역 공유지를 확인한 결과 대부분이 5천제곱미터 이하 규모의 농림지역에 해당되는 것으로 파악됨.  
그러나 향후 동지역의 개발 수요 및 동지역의 지가(地價) 등을 고려하고 수의계약의 특혜성 논란 및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동지역은 5천제곱미터로 규모 제한의 필요성이 있어 수정함.

### 2. 주요 내용

-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서 도 공유지를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사람에게 매각하는 경우 동지역 5천제곱미터, 읍·면지역 1만제곱미터 함(안 제40조제7호).

### 3. 참고사항 : 없음

##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40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서 도 공유지를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사람에게 다음 각 목의 범위에서 매각하는 경우
  - 가. 동지역 5천제곱미터
  - 나. 읍·면지역 1만제곱미터

##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p>제40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생략)</p> <p>1. ~ 6. (생략)</p> <p>7.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서 <u>광역시·도시·군의 읍·면지역에 위치한 공유지</u>를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자에게 1만 제곱미터 범위에서 매각하는 경우</p>	<p>제40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현행과 같음)</p> <p>1. ~ 6. (현행과 같음)</p> <p>7. ----- --- <u>도 공유지</u> --- ----- ----- ----- ----- ----- ----- -----</p>	<p>제40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현행과 같음)</p> <p>1. ~ 6. (현행과 같음)</p> <p>7.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서 <u>도 공유지</u>를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사람에게 다음 각 목의 범위에서 매각하는 경우</p> <p>가. 동지역 5천제곱미터</p> <p>나. 읍·면지역 1만 제곱미터</p>

경상북도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장 대 진  
2015년 6월 26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경상북도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를 “경상  
북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7조”를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사용예정일 60일전부터”를 “사용예정일 30일전  
부터”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입장료 면제”를 “입장료 및 주차료 면제”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입장료”를 “입장료 및 주차료”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을 “법 시행령 제8조제2항”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5조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를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자”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소지자”를 “또는 치매

서포터즈증 소지자”로 하고, 같은 조 제9호를 제10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경상북도 한복착용 문화 진흥 조례」 제5조에 따른 한복 착용자 제8조제2항 중 “도지사가 발급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에게는 주차료를 면제할 수 있고, 도 자원봉사센터 및 시군 자원봉사센터에”를 “도 및 시군 자원봉사센터에”로 한다.

제9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전염병 질환자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제4조제1항 관련)

구 분		기 준	요 금 (원)		비 고	
			개 인	단 체		
입 장 료	어 른	1인/1일	1,000	600		
	청소년	"	600	400		
	어린이	"	300	200		
시 설 사 용 료	주차장	경형 자동차	1일/1대	1,000		
		중·소형 자동차	"	2,000		
		대형 자동차	"	4,000		
	캠핑장	야영장	1일/1개소	5,000		
		야영데크	"	10,000		
		오토캠핑장	"	15,000		
		카라반	18㎡ 미만	1일/1대	100,000	
	18㎡ ~ 22㎡		"	120,000		
	숙박 시설	18㎡ 미만(3인 이하)	1일/1동·실	40,000		입장료 및 주차료 면제
		18㎡ 이상 28㎡ 미만(4인 이하)	"	50,000		
28㎡ 이상 41㎡ 미만(6인 이하)		"	60,000			
41㎡ 이상 51㎡ 미만(8인 이하)		"	80,000			
51㎡ 이상 61㎡ 미만(10인 이하)		"	90,000			
61㎡ 이상 71㎡ 미만(12인 이하)		"	100,000			
71㎡ 이상 81㎡ 미만(14인 이하)		"	120,000			
81㎡ 이상(15인 이상)		"	150,000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경상북도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 징수조례</u></p>	<p><u>경상북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u></p>
<p><b>제 1 조(목적)</b> 이 조례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경상북도가 운영하는 자연휴양림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b>제 1 조(목적)</b>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p> <p>—————</p> <p>—————</p>
<p><b>제 5 조(입장료 등의 징수 및 예약)</b></p> <p>① (생 략)</p> <p>② 숙박시설의 사전 예약은 <u>사용예정일 60일전부터</u> 예약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사용료는 예약 후 1일 이내 납부하여야 한다.</p> <p>③ ~ ④ (생 략)</p>	<p><b>제 5 조(입장료 등의 징수 및 예약)</b></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 <u>사용예정일 30일전부터</u> —————</p> <p>—————</p> <p>③ ~ ④ (생 략)</p>
<p><b>제 7 조(입장료 면제)</b> 관리·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u>입장료</u>를 면제할 수 있다.</p> <p>1. 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p> <p>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p>	<p><b>제 7 조(입장료 및 주차료 면제)</b> ——</p> <p>————— <u>입장료 및 주차료</u> ———</p> <p>—————</p> <p>1. 법 시행령 제8조제2항 —————</p> <p>—————</p> <p>2. ————— <u>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자.</u></p>

현행	개정안
<p>3. ~ 5. (생략)</p> <p>6. 도지사가 발급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p> <p>7.·8. (생략)</p> <p>〈신설〉</p> <p>9. (생략)</p> <p><b>제 8 조(시설사용료 면제) ① (생략)</b></p> <p>② 도지사가 발급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에게는 주차료를 면제할 수 있고, 도 자원봉사센터 및 시군 자원봉사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단체에 대해서는 시설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p> <p><b>제 9 조(입장 제한) 관리·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연휴양림의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b></p> <p>1. 전염병질환자 및 정신병자</p> <p>2. ~ 6. (생략)</p>	<p>3. ~ 5. (현행과 같음)</p> <p>6. _____ 또는 치매서포터즈증 소지자</p> <p>7.·8. (현행과 같음)</p> <p>9. 「경상북도 한복착용 문화 진흥 조례」 제5조에 따른 한복 착용자</p> <p>10. (현행 제9호와 같음)</p> <p><b>제 8 조(시설사용료 면제) ① (현행과 같음)</b></p> <p>② 도 및 시군 자원봉사센터에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p> <p><b>제 9 조(입장 제한) _____</b> _____ _____.</p> <p>1. 전염병 질환자</p> <p>2. ~ 6.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별표]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제4조제1항 관련)					[별표]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제4조제1항 관련)				
구 분	기 준	요 금 (원)		비 고	구 분	기 준	요 금 (원)		비 고
		개 인	단 체				개 인	단 체	
입장료	어 른	1인/1일	1,000	600	입장료	어 른	1인/1일	1,000	600
	청소년	*	600	400		청소년	*	600	400
	어린이	*	300	200		어린이	*	300	200
주차장	경형 자동차	1일/1대	1,000		주차장	경형 자동차	1일/1대	1,000	
	중·소형 자동차	*	2,000			중·소형 자동차	*	2,000	
	대형 자동차	*	4,000			대형 자동차	*	4,000	
캠핑장	야영장	1일/1개소	2,000		캠핑장	야영장	1일/1개소	5,000	
	아영테크	*	4,000			아영테크	*	10,000	
	오토캠핑장	*	8,000			오토캠핑장	*	15,000	
시설	카라반	18㎡ 미만	1일/1대	신설	시설	카라반	18㎡ 미만	1일/1대	100,000
		18㎡~22㎡	*	신설			18㎡~22㎡	*	120,000
사용료	숙박 시설	18㎡ 미만 (3인 이하)	1일/1동·실	35,000	입장료 및 주차료 면제	숙박 시설	18㎡ 미만 (3인 이하)	1일/1동·실	40,000
		18㎡ 이상 28㎡ 미만 (4인 이하)	*	40,000			18㎡ 이상 28㎡ 미만 (4인 이하)	*	50,000
		28㎡ 이상 41㎡ 미만 (6인 이하)	*	55,000			28㎡ 이상 41㎡ 미만 (6인 이하)	*	60,000
		41㎡ 이상 51㎡ 미만 (8인 이하)	*	70,000			41㎡ 이상 51㎡ 미만 (8인 이하)	*	80,000
		51㎡ 이상 61㎡ 미만 (10인 이하)	*	85,000			51㎡ 이상 61㎡ 미만 (10인 이하)	*	90,000
		61㎡ 이상 71㎡ 미만 (12인 이하)	*	100,000			61㎡ 이상 71㎡ 미만 (12인 이하)	*	100,000
		71㎡ 이상 81㎡ 미만 (14인 이하)	*	120,000			71㎡ 이상 81㎡ 미만 (14인 이하)	*	120,000
		81㎡ 이상 (15인 이상)	*	150,000			81㎡ 이상 (15인 이상)	*	150,000

※ 비고

1. 숙박시설의 면적을 산출할 때는 침실, 거실, 주방, 화장실·샤워실 등 전용객실의 모든 면적과 다락 면적 및 대청마루 면적의 2분의 1만 포함한다. 다만 별도 난방시설을 갖춘 다락은 전체 면적을 숙박 시설의 면적에 포함한다.
2. 발코니, 베란다, 데크, 보일러실 등은 숙박시설 면적에서 제외한다.

※ 비고 <삭제>

경상북도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장 대 진

2015년 6월 26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 경상북도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환경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경상북도환경기본조례”를 “경상북도 환경기본조례”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 다음 각호”를 “뜻은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상태(생태계를)”을 “상태(생태계 및 자연경관을)”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대기, 물”을 “대기, 물, 토양”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기타”를 “및 그 밖의”로, “발생되는”을 “발생하는”으로, “소음·진동, 악취”를 “방사능 오염, 소음·진동, 악취, 일조 방해”로 하며, 같은 조 제4호의2 중 “교란, 자연경관의 훼손”을 “교란, 자연경관의 훼손, 표토의 유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환경기준”이라 함은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가 달성하고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환경상의 조건 또는 질적인 수준을 말한다.

제4조제1항제8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10조제2항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1조제2항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응하여야”를 “따라야”로 한다.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각호의”를 “각 호의”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환경부”를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의2제1항 전단 중 “제12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2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2조제3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16조 중 “보호·복원을 위한 시설”을 “보호·복원을 위한 시설, 오염된 토양·지하수의 정화를 위한 시설”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19조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20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21조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시책추진”을 “다음과 같은 시책사업 추진”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환경의 날 기념행사 및 녹색문화제 등 환경의식 증진에 관한 사업

2. 환경문화 활성화 및 환경문화 예술보급 추진에 관한 사업
3. 환경관리 실태평가 및 보고에 관한 사업
4. 기후변화 적응 및 생활부문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사업
5. 기후변화 대응 녹색마을 만들기 사업
6. 물 절약 실천을 위한 물의 날 행사 추진 사업
7. 그 밖에 지속가능한 환경보전 활동을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연구 등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3조제2항 중 “환경보전사업”을 “다음과 같은 환경보전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생태계 교란 동·식물 퇴치사업
2. 지속가능한 환경보전과 환경문화 활성화를 위한 사업
3.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관리를 위한 사업
4. 환경관련 사업장 시설개선 등 기술지원 사업
5. 환경오염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3조제3항 중 “기술지도, 조언 또는”을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환경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기술지도·지원에 관한 사업
2. 중소기업 환경애로 기술 컨설팅에 관한 사업
3. 녹색성장을 위한 환경정책 제안 및 컨설팅·심포지엄에 관한 사업
4. 녹색생활 실천 및 환경보전 활동에 관한 사업

5. 유해 외래생물 퇴치 및 생물다양성 확보에 관한 사업
  6. 생태문화탐방 및 자연환경 해설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업
  7. 기후변화 적응 및 친환경 생활 실천에 관한 사업
  8. 환경인 안전결의 및 교류 등 환경사고예방을 위한 협력에 관한 사업
  9. 민·관 환경감시네트워크 운영 및 단속활동에 관한 사업
  10. 폐기물 처리 및 감량 활동에 관한 사업
  11. 그 밖에 도지사가 환경보전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23조의2의 제목“(녹색경북21 추진협의회 지원)”을“(경상북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맑고 푸른 경북만들기의”를 “지속가능한 경북만들기와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으로, “녹색경북21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 라)”를 “경상북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로,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녹색경북21”을 “협의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광역·기초의제 활성화 사업 및 세미나·캠페인 사업비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27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u>경상북도환경기본조례</u></p> <p><b>제 3 조(정의)</b>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p> <p>1. (생 략)</p> <p>2. “자연환경” 이라 함은 지하·지표(해양을 포함한다)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u>상태(생태계를 포함한다)</u>를 말한다.</p> <p>3. “생활환경” 이라 함은 <u>대기, 물, 폐기물, 소음 진동, 악취, 일조</u>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p> <p>4. “환경오염” 이라 함은 사업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u>소음·진동, 악취</u>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p> <p>4의2. “환경훼손”이라 함은 야생동·식물의 남획 및 그 서식지의 파괴, 생태계질서의 <u>교란, 자연경관의 훼손</u></p>	<p style="text-align: center;"><u>경상북도 환경기본조례</u></p> <p><b>제 3 조(정의)</b> —————          — 뜻은 다음 각 호 —————.</p> <p>1. (현행과 같음)</p> <p>2. —————          —————          ————— 상태(생태계 및 자연경관을 ————.</p> <p>3. ————— <u>대기, 물, 토양,</u> —————          —————.</p> <p>4. ————— 및 그 밖의 ————— 발생하는 —————          ————— <u>방사능 오염, 소음·진동, 악취, 일조 방해</u> —————          —————.</p> <p>4의2. —————          —————          ————— <u>교란, 자연경관의 훼손,</u></p>

현 행	개 정 안
<p>등으로 인하여 자연환경의 본래적 기능에 중대한 손상을 주는 상태를 말한다.</p> <p>5. (생 략) 〈신 설〉</p> <p><b>제 4 조(도의 책무) ①</b> 도는 환경보전 및 새로운 생활환경의 창조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기본적이며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p> <p>1. ~ 7. (생 략)</p> <p>8. 기타 환경오염·훼손의 방지와 오염·훼손된 환경의 회복·복원 및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피해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p> <p>②·③ (생 략)</p> <p><b>제10조(환경백서) ①</b> (생 략)</p> <p>② 제1항의 환경백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p><u>표토의 유실</u> ----- ----- -----.</p> <p>5. (현행과 같음)</p> <p>6. “<u>환경기준</u>”이라 함은 도민의 건강을 <u>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가 달성하고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환경상의 조건 또는 질적인 수준을 말한다.</u></p> <p><b>제 4 조(도의 책무) ①</b> ----- ----- ----- -----.</p> <p>1. ~ 7. (현행과 같음)</p> <p>8. <u>그 밖의</u> ----- ----- -----</p> <p>②·③ (현행과 같음)</p> <p><b>제10조(환경백서) ①</b> (현행과 같음)</p> <p>② ----- -----.</p>

현 행	개 정 안
<p>1.·2. (생 략)</p> <p>3.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p> <p><b>제11조(보고) ① (생 략)</b></p> <p>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p>1. ~ 3. (생 략)</p> <p>4.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p> <p>③ 도지사는 제1항의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관계 시·군에 요청할 수 있으며 시·군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p> <p><b>제12조(환경보전계획의 수립) ① (생 략)</b></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되어야 한다.</p> <p>1. ~ 4. (생 략)</p> <p>5.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p> <p>③ (생 략)</p> <p>④ 도지사는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환경부, 시장·군수의 의견을 수립하고 경상북도 환경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p>	<p>1.·2. (현행과 같음)</p> <p>3. 그 밖에 _____</p> <p><b>제11조(보고) ① (현행과 같음)</b></p> <p>② _____ _____.</p> <p>1. ~ 3. (현행과 같음)</p> <p>4. 그 밖에 _____</p> <p>③ _____ _____ _____ 따라야 _____.</p> <p><b>제12조(환경보전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b></p> <p>② 제1항에 따른 _____ _____ 각 호의 _____.</p> <p>1. ~ 4. (현행과 같음)</p> <p>5. 그 밖에 _____</p> <p>③ (현행과 같음)</p> <p>④ _____ _____ 환경부장관 _____ _____.</p>

현행	개정안
<p>⑤·⑥ (생략)</p> <p><b>제12조의2(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 시행 계획의 수립등)</b> 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계획 및 환경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확정한 환경보전중기 종합계획에 따라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 연도별 경상북도 시행계획(이하 "시행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p> <p>② (생략)</p> <p><b>제13조(지역환경기준의 설정)</b> ① 도지사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의 환경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역환경기준을 설정하고 이의 유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별 환경기준은 지역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부의 기준보다 확대·강화된 별도의 기준을 따로 조례로 설정할 수 있다.</p> <p><b>제16조(환경보전시설의 설치·관리 등)</b>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대기오염의 저감을 위한 녹지대, 폐·하수 및 폐기물의</p>	<p>⑤·⑥ (현행과 같음)</p> <p><b>제12조의2(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 시행 계획의 수립등)</b> ① 제12조에 따른 _____  _____</p> <p>② (현행과 같음)</p> <p><b>제13조(지역환경기준의 설정)</b> ① _____ 제12조제3항에 따라 _____</p> <p>② 제1항에 따라 _____</p> <p><b>제16조(환경보전시설의 설치·관리 등)</b> _____</p>

현행	개정안
<p>처리를 위한 시설, 소음·진동 및 악취의 방지를 위한 시설, 야생동·식물·생태계의 <u>보호·복원을 위한 시설</u> 등 환경보전을 위한 공공시설의 설치·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p> <p><b>제18조(자원의 순환적이용 등의 추진)</b>  ① (생략)  ② 도지사는 환경오염·훼손방지를 위하여 공공시설의 건설 및 유지·관리, <u>기타</u> 사업의 실시에 있어 제1항과 같은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p> <p><b>제19조(환경교육 홍보 등의 진흥)</b> 도지사는 시·군과 교육기관 <u>기타</u>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교육 및 홍보활동을 충실히 함으로써 도민 및 사업자의 환경보전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자발적인 환경보전 활동이 촉진되고 생활 속에서 실천될 수 있도록 인재의 육성, 자료의 제작·보급 및 도민환경교육 등 이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p> <p><b>제20조(환경조사 및 환경과학기술의 진흥 등)</b> ① 도지사는 환경상태를 적정하게 조하기 위한 감시·측정·시험 및 분석 등의 체제를 유지하고 지역 내</p>	<p>_____</p> <p>_____</p> <p>— <u>보호·복원을 위한 시설, 오염된 토양·지하수의 정화를 위한 시설</u> —</p> <p>_____.</p> <p><b>제18조(자원의 순환적이용 등의 추진)</b>  ① (현행과 같음)  ② _____  _____ <u>그 밖의</u>  _____.</p> <p><b>제19조(환경교육 홍보 등의 진흥)</b> —  _____ <u>그 밖의</u> _____</p> <p>_____</p> <p>_____</p> <p>_____</p> <p>_____</p> <p>_____</p> <p>_____.</p> <p><b>제20조(환경조사 및 환경과학기술의 진흥 등)</b> ① (삭제)</p>

현행	개정안
<p><u>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의 현황, 환경질의 변화 등 환경상태를 상시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와 도민, 관련단체 등을 조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u></p> <p>② (생략)</p> <p><b>제21조(분쟁의 처리 및 피해구제)</b> 도지사는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분쟁 기타 환경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그 분쟁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되도록 하고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피해를 원활히 구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p> <p><b>제23조(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등)</b> ① 도지사는 환경보전을 위한 시책 추진에 소요되는 경비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신설〉</p> <p>〈신설〉</p> <p>〈신설〉</p>	<p>② (현행과 같음)</p> <p><b>제21조(분쟁의 처리 및 피해구제)</b> —      _____      _____ <u>그 밖의</u> _____      _____      _____      _____.</p> <p><b>제23조(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등)</b> ① _____ 다음과 같은 시책사업 추진 _____      _____.</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환경의 날 기념행사 및 녹색문화제 등 환경의식 증진에 관한 사업</li> <li>2. 환경문화 활성화 및 환경문화 예술 보급 추진에 관한 사업</li> <li>3. 환경관리 실태평가 및 보고에 관한 사업</li> </ol>

현행	개정안
〈신설〉	4. 기후변화 적응 및 생활부문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사업
〈신설〉	5. 기후변화 대응 녹색마을 만들기 사업
〈신설〉	6. 물 절약 실천을 위한 물의 날 행사 추진 사업
〈신설〉	7. 그 밖에 환경보전 활동을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연구 등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시행하는 환경보전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_____ 다음과 같은 환경보전사업 _____ _____.
〈신설〉	1. 생태계 교란 동·식물 퇴치사업
〈신설〉	2. 지속가능한 환경보전과 환경문화 활성화를 위한 사업
〈신설〉	3.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관리를 위한 사업
〈신설〉	4. 환경관련 사업장 시설개선 등 기술 지원 사업
〈신설〉	5. 환경오염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
〈신설〉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현 행	개 정 안
<p>③ 도지사는 도민, 사업자, 민간환경 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자주적인 환경보전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기술 지도, 조연 또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p>	<p>③ _____ _____ _____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_____.</p>
<p>〈신 설〉</p>	<p>1. 환경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기술지도·지원에 관한 사업</p>
<p>〈신 설〉</p>	<p>2. 중소기업 환경애로 기술 컨설팅에 관한 사업</p>
<p>〈신 설〉</p>	<p>3. 녹색성장을 위한 환경정책 제안 및 컨설팅·심포지엄에 관한 사업</p>
<p>〈신 설〉</p>	<p>4. 녹색생활 실천 및 환경보전 활동에 관한 사업</p>
<p>〈신 설〉</p>	<p>5. 유해 외래생물 퇴치 및 생물다양성 확보에 관한 사업</p>
<p>〈신 설〉</p>	<p>6. 생태문화탐방 및 자연환경 해설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업</p>
<p>〈신 설〉</p>	<p>7. 기후변화 적응 및 친환경 생활 실천에 관한 사업</p>
<p>〈신 설〉</p>	<p>8. 환경인 안전결의 및 교류 등 환경 사고예방을 위한 협력에 관한 사업</p>

현행	개정안
<p>〈신설〉</p> <p>〈신설〉</p> <p>〈신설〉</p> <p>④ (생략)</p> <p><b>제23조의2(녹색경북21 추진협의회 지원)</b> <u>맑고 푸른 경북만들기의 민관 협력체인 녹색경북21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활동을 활성화하고 민간 주도적 역할을 유도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다음 각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생략)</li> <li>2. <u>녹색경북21</u> 실천 사업비</li> <li>3. <u>기타</u>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li> </ol> <p>〈신설〉</p> <p><b>제27조(규칙)</b>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9. <u>민·관 환경감시네트워크 운영 및 단속활동에 관한 사업</u></p> <p>10. <u>폐기물 처리 및 감량 활동에 관한 사업</u></p> <p>11. 그 밖에 도지사가 환경보전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p> <p>④ (현행과 같음)</p> <p><b>제23조의2(경상북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b> <u>지속가능한 경북만들기와 기후 변화 적응을 위한 ————— 경상북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u>  <u>————— 각 호—————</u>  <u>—————.</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현행과 같음)</li> <li>2. <u>협의회</u> ——— ———</li> <li>3. <u>광역·기초의제 활성화 사업 및 세미나·캠페인 사업비</u></li> <li>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li> </ol> <p><b>제27조(규칙)</b> ————— 시행에 ———  <u>—————.</u></p>

경상북도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장 대 진  
2015년 6월 26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경상북도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 제7조의2,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 제2조까지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세먼지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미세먼지(PM-10)는 입자의 크기가  $10\mu\text{m}$  이하인 먼지를 말한다.

나. 미세먼지(PM-2.5)는 입자의 크기가  $2.5\mu\text{m}$  이하인 먼지를 말한다.

2. “예보”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미세먼지의 농도를 예측하여 경상북도민 (이하 “도민”이라 한다)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3. “경보”란 법 제8조에 따라 도지사가 미세먼지 농도가 환경 기준을 초과하여 도민의 건강·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때 이를 도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4. “미세먼지(PM-10, PM-2.5) 농도”란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시·군의 대기측정소에서 실시간으로 측정된 미세먼지의 시간 평균값을 말한다.

**제 3 조(도지사의 책무 등)** ① 도지사는 미세먼지의 예보·경보에 관한 상황전파, 경보의 발령 및 해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도민의 건강상 조치 및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민은 도가 시행하는 미세먼지 줄이기 및 대응조치 등에 대해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 2 장 미세먼지의 예보 및 경보

**제 4 조(예보에 따른 조치)** 도지사는 도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하여 법 제7조의2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예측·발표하는 미세먼지 예보결과를 언론기관 및 유관기관 등에 알릴 수 있다.

**제 5 조(경보의 대상지역)** 경보의 대상지역은 도내 대기측정소가 설치되어 있는 시·군 권역을 대상으로 한다.

**제 6 조(경보의 내용 및 기준)** ① 도지사는 경보의 발령 또는 해제시에는 방송매체 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속하게 전파하여야 한다.

1. 대기오염경보의 대상지역
  2. 대기오염경보단계 및 대기오염물질의 농도
  3. 대기오염경보단계별 조치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도지사는 도민이 미세먼지 농도를 상시 확인할 수 있는 정보제공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환경부장관이 구축한 정보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제 7 조(경보 등에 따른 조치)** ① 도지사는 경보를 발령한 때에는 별표 1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경보 발령시 어린이, 노약자, 환자 등 취약계층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병원, 보건소, 약국 등의 야간운영, 응급환자 이송체계 운영 등을 권고할 수 있다.
- ③ 경보에 따라 조치 명령을 받은 기관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④ 도지사는 경보가 발령되어 그에 대한 조치를 시행한 때에는 그 시행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 제3장 대기오염 개선노력 등

**제 8 조(대기오염 개선노력)**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 또는 공사장 등을 운영하는 자는 사업장 환경개선, 연료사용량 감축, 조업시간 조정 등 미세먼지 발생량 감소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 9 조(시·도간 협력)** 도지사는 경보 발령에 따른 도민 건강 보호 및 대기오염개선을 위하여 인근 시·도와 협력하여 조치 사항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제10조(예산의 지원)** 도지사는 미세먼지 경보를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미세먼지 경보에 따른 조치사항(제7조제1항 관련)

경보단계	도민 건강보호	대기오염 개선 노력
주의보	<p>가. 민감군(어린이·노인·폐질환 및 심장 질환자)은 실외활동 제한 및 실내생활 권고</p> <p>나. 일반인은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 활동을 줄임(특히, 눈이 아프거나, 기침 또는 목의 통증이 있는 경우 실외활동 자제)</p> <p>다. 부득이 외출 시 황사(보호)마스크 착용 (폐기능 질환자는 의사와 충분한 상의 후 사용권고)</p> <p>라. 교통량이 많은 지역 이동 자제</p> <p>마. 유치원·초등학교 실외수업 자제</p> <p>바. 공공기관 운영 야외 체육시설 운영 제한</p> <p>사. 공원·체육시설·고궁·터미널·철도 및 지하철 등을 이용하는 도민에게 과격한 실외활동 자제 홍보</p> <p>아. 그 밖에 도민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p>	<p>가. 행정기관 관용차량 운행 감축 (비상용차량 제외)</p> <p>나. 자동차 운행 자제 및 대중교통 이용 권장</p> <p>다. 공공기관 운영 대형 사업장 조업시간 단축</p> <p>라. 주·정차시 공회전 금지</p> <p>마. 도로 물청소 또는 진공청소 등 시행</p> <p>바. 사업장의 연료사용량 감축 권고</p> <p>사. 공사장의 조업시간 단축 또는 일부 작업중지 권고</p> <p>아. 그 밖에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필요한 사항</p>
경보	<p>가. 민감군(어린이·노인·폐질환 및 심장 질환자)은 실외활동 금지(실외활동시 의사와 상의)</p> <p>나. 일반인은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자제(기침 또는 목의 통증이 있는 경우 실내생활 유지)</p> <p>다. 부득이 외출시 황사(보호) 마스크 착용</p> <p>라. 교통량이 많은 지역 가급적 이동 금지</p> <p>마. 유치원·초등학교 실외수업 금지, 수업 단축 또는 휴교</p> <p>바. 중·고등학교 실외수업 자제</p> <p>사. 공공기관 운영 야외 체육시설 운영 중단</p> <p>아. 공원·체육시설·고궁·터미널·철도 및 지하철 등을 이용하는 도민에게 과격한 실외활동 금지 홍보</p> <p>자. 그 밖에 도민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p>	<p>가. 행정기관 관용차량 운행 제한 (비상용차량 제외)</p> <p>나. 자동차 운행 제한(부제 운행 등)</p> <p>다. 공공기관 운영 대형 사업장 조업시간 단축</p> <p>라. 주·정차 시 공회전 금지</p> <p>마. 도로 물청소 또는 진공청소 등 강화</p> <p>바. 사업장의 연료사용량 감축 명령</p> <p>사. 공사장의 조업시간 단축 또는 일부 작업중지 명령</p> <p>아. 그 밖에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필요한 사항</p>

경상북도 천연가스자동차 구입 의무화 시행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장 대 진  
2015년 6월 26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천연가스자동차 구입 의무화 시행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경상북도 천연가스자동차 구입 의무화 시행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농식품 수출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장 대 진  
2015년 6월 26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 경상북도 농식품 수출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의 농식품 수출촉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경상북도 농식품 수출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식품”이라 함은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임산물 및 그 가공제품을 말한다.
2. “품목별수출협의회”라 함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농식품을 생산하여 수출하는 농어업인 및 생산자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단체를 말한다.
3. “수출촉진자금”이라 함은 품목별수출협의회에서 해당품목의 수출촉진을 위하여 조성한 자금을 말한다.

**제 3 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도 및 시군의 출연금
2. 기금운용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출연금을 매 회계연도마다 일반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 4 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제2조제3호에서 규정한 수출촉진자금 조성 지원
2. 그 밖에 농식품 수출촉진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 5 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도지사는 기금을 도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하되, 적립원금과 수익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③ 기금은 도 금고에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경상북도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조례」 제13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④ 제4조 각 호에서 규정한 사업 및 활동은 기금의 원금과 이자 수익금으로 한다.

**제 6 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① 도지사는 회계연도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기금사용계획
3. 기금의 대상사업 선정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  
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 7 조(회계공무원)** ① 도지사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농식품 수출업무담당 국장
2. 기금출납원 : 농식품 수출업무담당 사무관

②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  
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 8 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① 도지사는 기금의 관리·  
운용을 위하여 경상북도농식품수출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③ 위원장은 도의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도 농식품 수출업무담당 국장
2. 도의회 추천 의원
3. 농식품 수출 정책에 관한 전문가
4. 금융·회계분야 등 기금 전문가
5. 품목별수출협의회 대표

⑤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위원장이 정한다.

**제 9 조(위원의 위촉 해제)**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경우
3. 위원이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 등을 손상시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서의 사항
2. 해당연도 기금 사용계획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3.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4. 기금 관리·운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

- 제11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도지사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안건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긴급을 요하거나 심의내용이 경미하여 위원회 소집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 ④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한다.

-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해당 위원을 제외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제척 여부를 결정한다.

**제13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정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식품 수출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경상북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기금의 존속기한)** 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시행일로부터 10년까지로 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장 대 진

2015년 6월 26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전통식품”이란 「식품산업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라 국산  
농수산물을 주원료 또는 주재료로 하여 예로부터 전승되어  
오는 원리에 따라 제조·가공·조리되어 우리 고유의 맛·  
향 및 색을 내는 식품을 말한다.

제6조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전통식품 경쟁력 강화 및 홍보지원 사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b>제 2 조(정의)</b>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4. (생 략)</p> <p>〈<u>신 설</u>〉</p>  <p><b>제 6 조(지원대상 사업)</b> 도지사는 도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을 주원료로 하는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p> <p>1. ~ 9. (생 략)</p> <p>〈<u>신 설</u>〉</p> <p>10. (생 략)</p>	<p><b>제 2 조(정의)</b> _____ _____.</p> <p>1. ~ 4. (현행과 같음)</p> <p>5. “<u>전통식품</u>”이란 「<u>식품산업진흥법</u>」 제2조 제4호에 따라 국산 농수산물을 주원료 또는 주재료로 하여 예로부터 전승되어 오는 원리에 따라 제조·가공·조리되어 우리 고유의 맛·향 및 색을 내는 식품을 말한다.</p>  <p><b>제 6 조(지원대상 사업)</b> _____ _____ _____ _____.</p> <p>1. ~ 9. (현행과 같음)</p> <p>10. <u>전통식품 경쟁력 강화 및 홍보지원 사업</u></p> <p>11. (현행 제10호와 같음)</p>

경상북도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장 대 진  
2015년 6월 26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 경상북도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시군학교급식지원센터”로 한다.  
제2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광역학교급식지원센터”란 시군학교급식지원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통합적으로 조정 및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한 운영 체계를 말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광역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도지사는 친환경 학교급식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경상북도 광역학교급식지원 센터(이하 “광역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 ② 광역센터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제3조에 따른 광역센터 관련 계획수립 및 관리

2. 시군 단위 과부족 품목에 대한 수급 조절과 광역 단위 계약 생산 추진
  3. 친환경학교급식을 위한 학교, 산지, 가공 및 유통 시설 등에 대한실태조사 및 관련자료 수집·분석
  4. 학교급식 식자재의 생산, 물류, 공급 등 급식조달시스템과 관련한 정책 지원
  5. 학교와 연계한 식생활지도 교육 및 학교급식프로그램 지원
  6. 전년도 지원계획의 추진실적 분석 및 평가
  7. 시군학교급식지원센터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 및 지원사업
  8. 그 밖에 친환경학교급식 지원과 관련한 사항
- ③ 도지사는 광역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센터 업무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 법인 또는 생산자단체 등에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
- ④ 제3항의 위탁에 관한사항은 「경상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5조의3(광역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위원회) ① 도지사는 광역 센터 운영과 관련한 실무중심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역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교육청 친환경학교급식 업무관련 담당 과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담당과장, 광역센터의 장

으로,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도지사가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

1. 초·중등학교 교장 각 1명
2. 초·중등학교 행정실장 각 1명
3. 초·중등학교 영양교사 각 1명
4. 초·중등학교 학부모 대표 각 1명
5. 생산자 단체 대표 1명
6. 그 밖에 학교급식, 물류·유통관련 전문가 등으로 도지사나 교육청이 필요하다고 추천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경상북도 친환경학교급식 업무관련 담당과장이 되며, 부위원장 1명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광역센터장이 지정하는 소속 직원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위촉직 위원 중 초·중등학교 교장, 행정실장, 영양교사, 학부모 대표는 교육청의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⑤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 식자재 품목별 공급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2. 학교급식 식자재 배송관리에 관한 사항
3. 학교급식 식자재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학교급식 식자재 가격관리에 관한 사항
5. 광역센터 위탁사업자에 대한 평가, 재계약, 취소에 관한 사항 등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5인”을 “15명”으로, “각 호의 자 중 도지사가 위촉한 자로”를 “각 호의 사람 중 도지사가 위촉한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부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부위원장 1명과 간사 1명”으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b>제 2조(정의)</b>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 4. (생 략)</p> <p>5. “학교급식지원센터”란 학교 급식에 안전하고, 우수한 식자재를 공급하기 위하여 시장 또는 군수가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친환경 농·수·축산물의 원활한 생산과 물류·공급관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운영체계를 말한다.</p> <p>〈신 설〉</p>  <p>〈신 설〉</p>	<p><b>제 2조(정의)</b> _____ _____.</p> <p>1. ~ 4. (현행과 같음)</p> <p>5. “<u>시군학교급식지원센터</u>”_____</p> <p>_____</p> <p>_____</p> <p>_____</p> <p>_____</p> <p>_____</p> <p>6. “<u>광역학교급식지원센터</u>”란 시군학교 급식지원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통합적으로 조정 및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한 운영체계를 말한다.</p> <p><b>제5조의2(광역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운영)</b> ① 도지사는 친환경학교급식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경상북도 광역 학교급식지원센터(이하 “광역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p> <p>② 광역센터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p> <p>1. 제3조에 따른 광역센터 관련 계획 수립 및 관리</p>

현행	개정안
	<p>2. 시군 단위 과부족 품목에 대한 수급 조절과 광역 단위 계약생산 추진</p> <p>3. 친환경학교급식을 위한 학교, 산지, 가공 및 유통 시설 등에 대한 실태 조사 및 관련자료 수집·분석</p> <p>4. 학교급식 식자재의 생산, 물류, 공급 등 급식조달시스템과 관련한 정책 지원</p> <p>5. 학교와 연계한 식생활지도 교육 및 학교급식프로그램 지원</p> <p>6. 전년도 지원계획의 추진실적 분석 및 평가</p> <p>7. 시군학교급식지원센터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 및 지원사업</p> <p>8. 그 밖에 친환경학교급식 지원과 관련한 사항</p> <p>③ 도지사는 광역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센터 업무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 법인 또는 생산자단체 등에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p> <p>④ 제3의 위탁에 관한사항은 「경상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p>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b>제5조의3(광역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위원회)</b> ① 도지사는 광역센터 운영과 관련한 실무중심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u>광역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 위원회”라 한다)</u>를 둔다.</p> <p>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은 <u>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교육청 친환경학교 급식 업무관련 담당과장,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경북지원 담당과장, 광역센터 장으로,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도지사가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초·중등학교 교장 각 1명</li> <li>2. 초·중등학교 행정실장 각 1명</li> <li>3. 초·중등학교 영양교사 각 1명</li> <li>4. 초·중등학교 학부모 대표 각 1명</li> <li>5. 생산자 단체 대표 1명</li> <li>6. 그 밖에 학교급식, 물류·유통관련 전문가 등으로 도지사나 교육청이 필요하다고 추천하는 사람</li> </ol> <p>③ 위원장은 <u>경상북도 친환경학교급식 업무관련 담당과장이 되며, 부위원장 1명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u></p>

현행	개정안
<p>제 8 조(친환경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구성) ① (생략)</p> <p>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심의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p>	<p>광역센터장이 지정하는 소속 직원으로 한다.</p> <p>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위촉직 위원 중 초·중등학교 교장, 행정실장, 영양교사, 학부모 대표는 교육청의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도지사가 위촉한다.</p> <p>⑤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학교급식 식자재 품목별 공급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li> <li>2. 학교급식 식자재 배송관리에 관한 사항</li> <li>3. 학교급식 식자재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li> <li>4. 학교급식 식자재 가격관리에 관한 사항</li> <li>5. 광역센터 위탁사업자에 대한 평가, 재계약, 최소에 관한 사항 등</li> </ol> <p>제 8 조(친환경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구성) ① (현행과 같음)</p> <p>② _____ 15명 _____ _____</p>

현 행	개 정 안
<p>위원은 행정부지사,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교육청 친환경학교급식 업무관련 담당국장, 경상북도의회 추천의원으로,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 도 지사가 위촉한 자로 한다. 다만, 민간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1/2 이상이어야 한다.</p> <p>1. ~ 6. (생략)</p> <p>③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며, 부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두되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친환경학교급식지원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p> <p>④·⑤ (생략)</p>	<p>_____</p> <p>_____</p> <p>_____</p> <p>_____ <u>각 호의 사람 중 도 지사가 위촉한 사람으로</u> _____.</p> <p>_____.</p> <p>1. ~ 6. (현행과 같음)</p> <p>③ _____ 부위원장 1명과 간사 1명 _____.</p> <p>_____.</p> <p>④·⑤ (현행과 같음)</p>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장 대 진

2015년 6월 26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대변인, 미래전략기획단, 투자유치실, 기획조정실, 창조경제 산업실, 일자리민생본부 및 그 지도감독을 받는 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제3조제2항제3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감사관, 여성가족정책관, 인재개발정책관, 자치행정국, 복지 건강국, 공무원교육원, 경북도립대학교 및 그 지도감독을 받는 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제3조제2항제6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도민안전실, 도청신도시본부, 지역균형건설국, 소방본부 및 그 지도감독을 받는 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b>제 3 조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b></p> <p>① (생략)</p> <p>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p> <p>1. (생략)</p> <p>2. 기획경제위원회</p> <p style="padding-left: 20px;">가. <u>대변인, 미래전략기획단, 경북개혁추진단, 투자유치실, 기획조정실, 창조경제산업실, 일자리민생본부 및 그 지도감독을 받는 사업소 소관에 관한 사항</u></p> <p>3. 행정보건의복지위원회</p> <p style="padding-left: 20px;">가. <u>감사관, 여성가족정책관, 인재개발정책관, 안전행정국, 복지건강국, 공무원교육원, 경북도립대학교 및 그 지도감독을 받는 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u></p> <p>4. ~ 5. (생략)</p> <p>6. 건설소방위원회</p> <p style="padding-left: 20px;">가. <u>도청신도시본부, 지역균형건설국, 소방본부 및 그 지도감독을 받는 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u></p> <p>7. (생략)</p>	<p><b>제 3 조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b></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_____.</p> <p>1. (현행과 같음)</p> <p>2. _____</p> <p style="padding-left: 20px;">가. <u>대변인, 미래전략기획단, 투자유치실, 기획조정실, 창조경제산업실, 일자리민생본부 및 그 지도감독을 받는 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u></p> <p>3. _____</p> <p style="padding-left: 20px;">가. <u>감사관, 여성가족정책관, 인재개발정책관, 자치행정국, 복지건강국, 공무원교육원, 경북도립대학교 및 그 지도감독을 받는 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u></p> <p>4. ~ 5. (현행과 같음)</p> <p>6. _____</p> <p style="padding-left: 20px;">가. <u>도민안전실, 도청신도시본부, 지역균형건설국, 소방본부 및 그 지도감독을 받는 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u></p> <p>7. (현행과 같음)</p>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장 대 진  
2015년 6월 26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11조제2항 중 “교육과정과장, 교원지원과장, 과학직업교육과장”을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과학직업과장”으로 한다.

별지서식 제1호, 제2호, 제3호, 제5호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b>제11조(공적심사위원회 설치)</b></p> <p>① (생 략)</p> <p>② 교육감 소속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정책국장이 되며, 위원은 행정지원국장, 기획조정관, 감사관, 교육정책과장, <u>교육과정과장</u>, <u>교원지원과장</u>, <u>과학직업교육과장</u>, 체육건강과장, 총무과장, 학교지원과장이 된다.</p> <p>③ ~ ⑦ (생 략)</p>	<p><b>제11조(공적심사위원회 설치)</b></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_____            _____            _____            _____ <u>초등교육과장</u>,  <u>중등교육과장</u>, <u>과학직업과장</u>, _____            _____.</p> <p>③ ~ ⑦ (현행과 같음)</p>

[별지 제1호 서식] (제5조제1항 관련)

제 호

표 창 장

주소 또는 소속  
직·성명

( 문 안 )

년 월 일

경상북도교육감 ○○○ (인)  
(또는 ○○교육지원청교육장 ○○○ (인))

[별지 제2호 서식] (제5조제1항 관련)

제 호

상 장

주소 또는 소속  
직·성명

( 문 안 )

년 월 일

경상북도교육감 ○○○ (인)  
(또는 ○○교육지원청교육장 ○○○ (인))

[별지 제3호 서식] (제5조제1항 관련)

제 호

# 감 사 장

주소 또는 소속  
직·성명

( 문 안 )

년 월 일

경상북도교육감 ○○○ (인)  
(또는 ○○교육지원청교육장 ○○○ (인))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모범공무원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장 대 진  
2015년 6월 26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모범공무원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모범공무원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공무원중에서”를 “공무원 중에서”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4 조(선발)** 모범공무원은 매년 20명 이내로 선발하며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서 정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교육감이 선발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휴직자 등에 대한 수당 지급)** ①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1항제1호,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휴직기간에도 수당을 지급한다.

②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2호부터 제11호까지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복직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잔여분의 수당을 지급한다.

제6조제1항 중 “다음달부터”를 “다음 달부터”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무효 또는”를 “무효화 되거나”로 한다.

제6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7조제3항 중 “당해 모범공무원”을 “해당 공무원”으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b>제 2 조(선발)</b> ① 모범공무원은 교사 및 일반직 6급 이하 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중에서 선발한다.</p> <p>② (생략)</p> <p><b>제 4 조(선발)</b> ① 모범공무원은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서 정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교육감이 선발한다.</p> <p>② 모범공무원은 매년 20명 이내로 선발한다.</p> <p>〈신 설〉</p>	<p><b>제 2 조(선발)</b> ① _____ _____ 공무원 중에서 _____.</p> <p>② (현행과 같음)</p> <p><b>제 4 조(선발)</b> 모범공무원은 매년 20명 이내로 선발하며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서 정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교육감이 선발한다.</p> <p><b>제5조의2(휴직자 등에 대한 수당 지급)</b></p> <p>①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1호,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휴직 기간에도 수당을 지급한다.</p> <p>②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2호부터 제11호까지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복직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잔여분의 수당을 지급한다.</p>

현행	개정안
<p><b>제 6 조(수당지급의 중단)</b> ①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수당지급을 중단한다.</p> <p>1. ~ 3. (생략)</p> <p>② 지급중단 사유가 <u>무효 또는 취소된 때에는</u> 복귀되는 날이 속하는 달부터 수당을 재지급하되, 지급중단 사유로 인하여 그동안 지급하지 아니한 수당은 복귀되는 날에 일괄 지급한다.</p> <p>③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1호,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휴직기간 중 수당을 지급하며,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과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2호부터 제11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제3항에 의하여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복직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잔여분의 수당을 매월 지급한다.</p> <p><b>제 7 조(산업시찰 실시)</b></p> <p>① ~ ② (생략)</p> <p>③ 동반가족의 여비지급은 공무원여비규정상 당해 모범공무원의 등급을 적용한다.</p>	<p><b>제 6 조(수당지급의 중단)</b> ① —————</p> <p>————— 다음 달부터 —————.</p> <p>1.~3. (현행과 같음)</p> <p>② ————— 무효화 되거나 —————</p> <p>—————</p> <p>—————</p> <p>—————</p> <p>③ &lt;삭제&gt;</p> <p><b>제 7 조(산업시찰 실시)</b></p> <p>① ~ ②(현행과 같음)</p> <p>③ —————</p> <p>— 해당 공무원—————.</p>

경상북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장 대 진  
2015년 6월 26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경상북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설치된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의 시설 사용과  
사용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속기관”이라 함은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9조부터 제33조에 따라 설치된 기관을 말한다.

2.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이라 함은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34조부터 제36조에 따라 설치된 기관을 말한다.

**제 3 조(사용허가 신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각급기관의 장(이하 “각급기관장”이라 한다)에게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후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4 조(사용허가)** ① 각급기관의 시설은 설치 목적에서 정한 자가 이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공공기관, 사회단체, 일반인 등의 사용허가 신청이 있을 때는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각급기관장은 해당 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각급기관장은 사용허가 시 해당 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사용신청을 받은 각급기관장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법으로 사용자를 결정하고 사용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 5 조(사용허가의 제한 등)** ① 각급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제한하거나 취소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전염성 질환이 있거나 타인에게 위험 또는 방해가 되는 물품 등을 휴대하거나 반입한 경우

4. 사용허가 목적이나 조건을 위반한 경우
  5.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사실이 판명된 경우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공연·행사·전시라고 판단되는 경우
  7. 사용료를 납입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8. 각급기관의 시설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9. 그 밖에 시설 사용에 적합하지 않다고 각급기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 ② 각급기관장은 제1항제1호에서 제7호까지의 사유에 따른 사용허가 취소 또는 사용 정지 처분으로 인한 사용자의 손실에 대해서는 보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6 조(사용료 등)** ① 각급기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허가서에서 정한 기한까지 별표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각급기관의 시설 사용료는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와 같다.

② 각급기관장은 별표에 명시되지 않은 시설에 대한 사용허가 요청이 있을 때는 해당 시설의 사용허가에 필요한 경비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제 7 조(사용료의 감면 등)** ① 각급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1. 경상북도교육청 및 그 직속기관이 주관하는 행사
2. 교육지원청 및 그 소속기관이 주관하는 행사
3. 경상북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특수학교 포함) 학생 또는 교직원이 주체가 되는 행사로서 해당 기관장이 신청하는 경우

4. 그 밖에 각급기관장이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사용료 감면 및 면제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은 각급기관장이 정한다.

**제 8 조(사용료의 반환)** ①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각급기관의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 또는 중지되었을 경우
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3. 시설 사용자가 사용예정일 이전에 취소원을 제출하고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② 사용료 반환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은 각급기관장이 정한다.

**제 9 조(사용자의 의무 등)** ①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허가 조건을 준수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각급기관의 시설물이나 설비, 물품, 자료 등이 훼손 또는 멸실되어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는 사용자가 이를 원상태로 복구하거나 변상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의 과실로 인한 안전사고와 재산상 손해에 대해서는 각급기관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0조(권리양도 등 금지)**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각급기관장의 허가를 받은 때는 예외로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신청을 하였거나, 사용허가를 받고 그 사용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1] (제6조제1항 관련)

### 기관별 시설 등 사용료

대상 기관	구 분		사용료	비 고	
경상북도교육정보센터 경상북도립도서관 경상북도학생문화회관 공공도서관	복사료 (1매당)	B5, A4	단면	40원	흑백
			양면	70원	
		B4, A3	단면	60원	
			양면	110원	
	인쇄료 (1매당)	B5, A4	단면	50원	흑백
			양면	80원	
		B4, A3	단면	80원	
			양면	140원	
		A4	단면	500원	칼라
	회의실		20,000원	1일 기준	
	시청각실		40,000원	4시간까지	
			80,000원	4시간 초과	

※ 경상북도학생문화회관의 회의실·시청각실 시설 사용료는 [별표 2] 적용

[별표 2] (제6조제1항 관련)

**경상북도학생문화회관 시설 사용료**

구분	단위	사용료	비고
공연장	오전	130,000원	1. 토요일 및 관공서의 공휴일은 사용료의 50% 가산 2. 연습을 위한 무대 사용은 사용료의 50% 적용 3. 기본 설비 : 전기·음향 포함
	오후	169,000원	
	야간	234,000원	
	1일	494,000원	
전시실	1일(1실당)	19,500원	1실 기준은 100㎡ 적용
체육관	오전	39,000원	1. 토요일 및 관공서의 공휴일은 사용료의 50% 가산 2. 기본 설비 : 전기·음향 포함
	오후	65,000원	
	야간	104,000원	
	1일	156,000원	
다목적홀	오전	39,000원	1. 토요일 및 관공서의 공휴일은 사용료의 50% 가산 2. 기본 설비 : 전기·음향 포함
	오후	52,000원	
	야간	65,000원	
	1일	104,000원	

※ 1. 기준 시간

- 오전: 08:00 ~ 12:00
- 오후: 13:00 ~ 17:00
- 야간: 18:00 ~ 22:00
- 1일: 08:00 ~ 22:00

2.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유사 항목의 기준에 의하거나 실비액을 징수

[별표 3] (제6조제1항 관련)

화랑교육원·경상북도학생해양수련원·학생수련원 시설 사용료 등

구 분			①학생	②교직원, 공무원, 그 가족		③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비 고			
숙박비	학생 숙소	10인실 (인당)	비수기	2,000원	5,000원	6,000원		<input type="checkbox"/> 1실 1박 기준 <input type="checkbox"/> ①학생은 1인당 사용료이며, 타 시·도 학생도 같은 금액을 적용 <input type="checkbox"/> 10인실 사용자가 6인 미만인 경우 6인 숙박비 정수 <input type="checkbox"/> 해당 실 인원 초과 시 초과 인원 1인당 ①은 2,000원, ②와 ③은 각 5,000원 추가			
			성수기	2,000원	6,000원	7,000원					
	장애인 숙소	6인실 (인당)	장애인	1,000원	2,000원	장애인	2,000원		5,000원	3,000원	6,000원
			일반인	2,000원	5,000원	일반인	3,000원		6,000원		
	콘도형 숙소	2인실	비수기	3,000원	30,000원		40,000원				
			성수기	3,000원	40,000원		50,000원				
		4인실	비수기	3,000원	40,000원		50,000원				
			성수기	3,000원	50,000원		60,000원				
시설 사용료	다목적강당		실비					<input type="checkbox"/> 냉·난방비 등을 포함하며, 사용시간에 따라 정수			
	시 청 각 실		실비								
	세 미 나 실		실비								
	다 목 적 실		실비								
	활 동 실		실비								
	식 비		실비								

- ※ 1. 학생이 숙박시설 사용을 개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학교장 추천을 받은 자에 한함.  
 2. 학생수련원은 안동·상주·청도학생수련원에만 적용하며, 기타 학생수련원에 대해서는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사용료를 적용  
 3. 성수기 사용료는 경상북도학생해양수련원에만 적용하며, 성수기는 고래불해수욕장 개장기간을 말함.

경상북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장 대 진  
2015년 6월 26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경상북도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교육장, 학교장 및 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할구역”이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교육지원청이 위치한 시·군을 말한다.
2. “소속학교”란 교육지원청 관할구역 내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말한다.
3. “관내학교”란 교육지원청 관할구역 내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와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특수학교를 말한다.
4. “직속기관”이란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9조부터

제33조에 따라 설치된 기관을 말한다.

5.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이란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34조부터 제36조에 따라 설치된 기관을 말한다.
6. “거점교육지원청”이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라 학교교육의 효과적인 지원을 위하여 교육지원청 관할구역 사무 일부를 통합하여 수행하는 교육지원청을 말한다.

**제 3 조(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다음의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한다.

1. 공·사립 소속학교의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
  - 가. 과학·기술교육의 진흥
  - 나. 특수교육, 학교 부적응 학생 교육, 진로지도 및 저소득층 학생 지원 등 교육복지
  - 다. 학생의 안전 및 건강
  - 라. 학생 통학 구역
  - 마. 평생교육 등 교육·학예 진흥
  - 바. 학급편제 및 증설인가
2. 공·사립 소속학교와 일반고등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
  - 가. 현장 맞춤형 장학 지원
  - 나. 장학자료 개발
  - 다. 독서교육 지도
3. 사립 소속학교의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
  - 가. 학교의 운영 관리와 예·결산에 관한 지도·감독
  - 나. 학교법인과 사립학교경영자의 운영 관리와 예·결산에 관한 지도·감독 및 차입금 승인

- 다. 학교법인의 임원 취임 승인(임시이사 선임 제외) 및 이사회 소집 승인
  - 라.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매도·증여·교환·용도변경·담보·의무 부담 및 권리의 포기 허가
  - 마. 개인인 사립학교경영자에 대한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규칙인가
  - 바. 교원의 임용 보고 수리(受理) 및 징계 요구
4. 공·사립 관내학교의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
- 가. 학교 건물 안에서의 공기질의 측정과 학교 먹는 물 수질검사
  - 나. 학교급식 운영평가 및 위생·안전 점검
  - 다.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출입·검사·수거 등, 행정처분 등의 요청 및 과태료 부과·징수
  - 라.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정비구역 내 학습환경 조사
  - 마. 학부모의 학교 참여, 연수·상담 및 학교 운영위원회 운영
5. 관할구역 내 공·사립 초등학교·중학교, 거점교육지원청(시설 업무) 권역 내 공립 고등학교·특수학교의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 다만, 공립 고등학교·특수학교의 신축·전면 개축 및 이전 업무는 제외한다.
- 가. 시설사업 시행계획 협의 및 승인
  - 나. 시설의 건축신고·승인 및 사용승인
  - 다. 시설 안에서의 행위에 관한 협의
6. 학교의 운영·관리에 대한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
- 가. 유치원·공민학교의 설립·폐지인가
  - 나. 교육장 소관 예산에 계상된 각종 보조금의 보조 결정 및 교부

- 7. 평생교육 진흥에 대한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
  - 가. 학원·교습소의 설립·폐지 및 지도·감독
  - 나. 평생교육 시설(학교 형태의 평생교육 시설 제외)의 설립·폐지 및 지도·감독
- 8. 교육지원청과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의 운영·관리에 대한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
  - 가. 청사 건축 협의 및 완료 신청
  - 나. 청사 실시계획 인가 신청
  - 다. 학생수련원의 운영 지도·감독
  - 라. 도서관의 운영 지도·감독
- 9. 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및 공립 소속학교 공무원에 대한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
  - 가. 공무원의 공무 국외여행 허가(교육장 제외), 공무원증 발급
  - 나. 지방공무원(교육장 제외)의 겸직허가, 정기승급 및 호봉 재확정
  - 다.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의 임용(신규·승진 임용 및 강임 제외), 경징계 및 대우공무원 선발
  - 라. 임시회계직 공무원의 임면
- 10. 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공립 관내학교 및 관할구역 내 직속기관의 교육실무직원에 대한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
  - 가. 교육실무직원의 징계
  - 나. 교육실무직원 중 교무행정사,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 특수교육실무사에 대한 채용, 전보, 해고

**제 4 조(학교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의 권한을 학교장에게 위임한다.

1.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교육실습생 배정 동의 및 지도·감독
2. 학생운동 경기 대회 참가
3. 고등학교·특수학교 소속 일반직 공무원의 정기승급과 호봉 재획정

**제 5 조(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의 권한을 직속 기관장에게 위임한다.

1. 지방공무원(직속기관장 제외)의 정기승급과 호봉 재획정
2. 지방공무원(5급 이상 및 직속기관장 제외)의 근무부서 지정 및 보직부여
3. 교육전문직원(직속기관장 제외)의 6개월 미만의 휴·복직

**제 6 조(준용 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않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장 대 진  
2015년 6월 26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처분등에”를 “처분 등에”로, “규정함으로써”를 “규정하여”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본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본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로,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1관서:본청의 소속교육기관”을 “제1관서: 본청의  
소속 교육기관”으로, “후생기관등을”을 “후생기관 등을”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교육지원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교육지원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로, “의한 하급교육  
행정기관인”을 “따른 하급교육행정기관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제2관서:교육지원청의 소속교육기관”을 “제2관서: 교육지원청의  
소속 교육기관”으로, “도서관,”을 “도서관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관서의 장:제1관서와”를 “관서의 장: 제1관서와”로 한다.

제3조제1항 및 제2항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처리하게 하기”를 “처리하기”로, “소속공무원중에서”를 “소속 공무원 중에서”로, “소속기관”을 “소속 기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다목 중 “당해”를 “해당”으로, “수리 기타”를 “수리·그 밖의”로 하며,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당해”를 “해당”으로, “수리 기타”를 “수리·그 밖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물품의 종류)”를 “(물품의 분류)”로 하고, 같은 조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6조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1일부터 동년”을 “1일에 시작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소속년도”를 “소속연도”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8조의 제목 “(물품매입등의 요구)”를 “(물품 매입 등의 요구)”로 하고, 같은 조 중 “주관과장”을 “주관부서의 장”으로, “물품매입 수리·제조품의”를 “물품 매입·수리·제조 품의”로 한다.

제9조의 제목 “(물품매입요구등의 심사)”를 “(물품 매입 요구 등의 심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주관과장”을 “주관부서의 장”으로, “의거, 물품매입요구를”을 “따라 물품 매입 요구를”로, “의하여 정수책정물품에”를 “따른 정수책정 물품에”로, “매입토록

하여야”를 “매입하여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서식에 의거”를 “서식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당해”를 “해당”으로, “서식에 의거”를 “서식으로”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소모품으로서 정리하는 물품)”을 “(소모품으로 정리하는 물품)”으로 하고, 같은 조 중 “급여”를 “공급”으로, “소모품으로서”를 “소모품으로”로 한다.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관리전환에 의한”을 “관리전환”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제1호 내지 제5호”를 “제1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제1호 내지 제5호의 물품으로서”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물품으로”로, “등재후”를 “등재 후”로 한다.

제15조 중 “대하여”는 “대해서”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을 “(물품의 불용결정과 불용품의 소요조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한 후 소요기관이 없는 때와 임산물, 축산물 기타”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과 임산물, 축산물, 그 밖의”로, “때”를 “경우”로, “불용결정통보서에 의거”를 “불용결정통보서에”로, “불용의”를 “불용”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물품으로서”를 “물품으로”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물품으로서”를 “물품으로”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물품으로서”를

“물품으로”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제1호 내지 제7호”를 “제1호 부터 제7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불용품 중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소요조회를 생략할 수 있다.

제16조제2항제4호 중 “물품으로서”를 “물품으로”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기타 내구년수”를 “그 밖에 내용연수”로 한다.

제1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의 규정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10백만원이상인”을 “1천만원 이상인”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10백만원미만인”을 “1천만원 미만인”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불용품의 소요조회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또는 본청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하여”를 “따라”로, “물품으로서”를 “물품으로”로, “각 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이를 매각 처분하여야”를 “매각처분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2이상”을 “둘 이상”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제3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총량중 물품당 장부상”을 “장부상”으로,

“물품에 대하여는 영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은 “물품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규정에 의한 감정기관에서”를 “감정기관에서”로, “의하여”를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본문 중 “년2회(4월, 9월)이상”을 “연 2회(4월, 9월) 이상”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불용품폐기(해체)조서를 작성하고 이를”을 “불용품폐기(해체)조서를 작성 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입회”를 “참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물품출납원 명령으로 한다”를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보관상 이를”을 “보관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용품중”을 “공용품 중”으로, “전용품으로”를 “전용품으로,”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전용품에 대하여는”을 “전용품은”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금고 기타”를 “금고, 그 밖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물품출납원은”을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22조의 제목 “(물품의 망실훼손 보고)”를 “(물품의 망실·훼손 보고)”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그 보관의”를 “보관”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보관물품으로써”를 “보관물품으로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그 보관의”를 “보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교육감에게”를 “교육감에게,”로 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감”을 “교육감 및 교육장”으로, “때에는”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보관책임자에게”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가액”을 “가액을”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단서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거”를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제24조제3항 중 “의한 장부이외에”를 “따른 장부 이외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25조의 제목 “(표준서식의 작성)”을 “(장부의 작성)”으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매년도별로”를 “매년도 별도”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물품관리관이”를 “물품관리관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소속직원중에서”를 “소속 직원중에서”로 한다.

제28조의 제목 “(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를 “(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참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받을”을 “받을”로, “소속직원중에서”를 “소속 직원 중에서”로, “입회”를 “참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기타의”를 “그 밖의”로, “입회”를 “참관”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검수”를 “검사”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의하여”를 “따른”으로, “2통 작성하고 1통을 당해”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해당”으로, “입회자”를 “참관자”로 하며, “1통은”을 “1부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입회자”를 “참관자”로 한다.

제31조 중 “경질”을 “변경”으로, “5일이내에”를 “5일 이내에”로 한다.

제32조제1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인계전일로서”를 “인계 전일로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장부목록 3통과 물품재고내역을”을 “장부목록과 물품재고내역을 3부”로, “입회”를 “참관”으로, “1통씩”을 “1부씩”으로, “1통은”을 “1부는”으로, “사무인계보고서를 작성”을 “사무인계보고서에 첨부하여”로 한다.

제33조의 제목 “(타직원에 의한 인계)”를 “(다른 직원에 의한 인계)”로 하고, 같은 조 중 “사망 기타의 사고로 말미암아”를 “사망, 그 밖의 사고로”로, “직원중에서”를 “직원 중에서”로,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34조 중 “제31조 내지 제33조”를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로 한다.

별표 1 중 “물품의 종류”를 “물품의 분류”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b>제 1 조(목적)</b> 이 조례는 경상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 처분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p> <p><b>제 2 조(정의)</b>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u>본청</u>: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감과 그 보조기관을 말한다.</p> <p>2. <u>제1관서</u>:본청의 소속교육기관(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교육연구기관, 교육연수·수련기관, 도서관과 교원·학생복지 후생기관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중 교육지원청과 제2관서를 제외한 기관을 말한다.</p> <p>3. <u>교육지원청</u>: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하급교육 행정기관인 교육지원청을 말한다.</p> <p>4. <u>제2관서</u>:교육지원청의 소속교육기관(초등학교, 중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유치원과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p>	<p><b>제 1 조(목적)</b> _____          _____  <u>처분 등에</u> _____ <u>규정하여</u> _____          _____.</p> <p><b>제 2 조(정의)</b> _____          _____.</p> <p>1. <u>본청</u>: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_____ <u>따른</u> _____.</p> <p>2. <u>제1관서</u>: 본청의 소속 교육기관 _____          _____          _____          _____ <u>후생기관 등을</u> _____          _____.</p> <p>3. <u>교육지원청</u>: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_____ <u>따른 하급교육 행정기관인</u> _____.</p> <p>4. <u>제2관서</u>: <u>교육지원청의 소속 교육기관</u> _____          _____</p>

현 행	개 정 안
<p>및 교육행정기관, 교육연구기관, 교육연수·수련기관, <u>도서관</u>, 교원·학생복지 후생기관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p> <p>5. 관서의 장: 제1관서와 제2관서의 장을 말한다.</p> <p><b>제 3 조(관리책임과 사무의 위임) ①</b>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u>당해</u> 교육비특별회계에 속하는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야 한다.</p> <p>② 교육감은 그에 속하는 물품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되 교육지원청과 제1관서 및 제2관서에 속하는 물품에 관한 사무를 각각 <u>당해</u> 교육장과 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p> <p>③ 교육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임 사무를 <u>처리하게 하기</u> 위하여 소속공무원 <u>중에서</u> 물품관리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으며 <u>소속기관</u>에 설치된 관직을 지정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p> <p><b>제 4 조(위임사무) ①</b> 교육감이 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u>의하여</u> 교육장 및 관서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다음과 같다.</p>	<p>----- ----- <u>도서관과</u> ----- ----- -----</p> <p>5. 관서의 장: 제1관서와 ----- -----</p> <p><b>제 3 조(관리책임과 사무의 위임) ①</b> ----- ----- <u>해당</u> ----- -----</p> <p>② ----- ----- ----- <u>해당</u> ----- -----</p> <p>③ ----- <u>따른</u> ----- ----- <u>처리하기</u> ----- <u>소속 공무원</u> <u>중에서</u> ----- ----- <u>소속 기관</u> ----- -----</p> <p><b>제 4 조(위임사무) ①</b> ----- ----- <u>따라</u> ----- ----- -----</p>

현행	개정안
<p>1.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가.·나. (생략) 다. 당해 교육지원청에 속하는 물품의 관리·청구·검수·반환·수리 기타 출납보관에 관한 사무</p> <p>2. 관서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가. 당해 관서에 속하는 물품의 관리·청구·검수·반환·수리 기타 출납보관에 관한 사무</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처리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p> <p><b>제 5 조(물품의 종류)</b> 물품의 품종·상태의 구분은 별표 1에 의한다.</p> <p><b>제 6 조(물품의 정리구분)</b> 물품의 정리구분은 별표 2에 의한다.</p> <p><b>제 7 조(연도구분)</b> ① 물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에 종료한다. ② 물품출납의 소속연도는 그 출납을 집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의한다.</p> <p><b>제 8 조(물품매입등의 요구)</b> 물품을 매입·수리·제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주관</p>	<p>1. _____ 가.·나. (현행과 같음) 다. 해당 _____ _____수리·그 밖의 _____</p> <p>2. _____ 가. 해당 _____ _____수리·그 밖의 _____</p> <p>② _____ 따른 _____.</p> <p><b>제 5 조(물품의 분류)</b> _____ _____ 따른다.</p> <p><b>제 6 조(물품의 정리구분)</b> _____ _____ 따른다.</p> <p><b>제 7 조(연도구분)</b> ① _____ _____ 1일에 시작하여 _____.</p> <p>② _____ 소속연도 _____ _____ 따른다.</p> <p><b>제 8 조(물품 매입 등의 요구)</b> _____ _____ 주관</p>

현행	개정안
<p>과장은 물품출납원을 거쳐 경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u>물품매입수리·제조품의</u> 요구서에 의하여 요구하여야 한다.</p> <p><b>제9조(물품매입요구등의 심사)</b> ① 주관과장이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물품매입요구를 하였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7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수책정물품에 포함되었는지의 여부와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인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토록 하여야 한다.</p> <p>② (생략)</p> <p><b>제10조(기증품의 취득)</b> ①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주관부서의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는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거 기증 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교육감, 교육장 또는 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 그 취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당해 기증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거 기증품</p>	<p>부서의 장 _____ _____ <u>물품 매입·수리·제조 품의</u> _____.</p> <p><b>제9조(물품 매입 요구 등의 심사)</b> ① 주관부서의 장 _____ 따라 물품 매입요구를 _____ _____ _____ 따른 정수책정 물품에 _____ _____ 매입하여야 _____.</p> <p>② (현행과 같음)</p> <p><b>제10조(기증품의 취득)</b> ① _____ _____ _____ _____ 서식으로 _____ _____ _____ _____.</p> <p>② _____ 따라 _____ _____ 해당 _____ _____ 서식으로 _____</p>

현행	개정안
수령증을 교부함과 동시에 수령사실을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_____
<p><b>제13조(소모품으로서 정리하는 물품)</b>  비품의 수리 또는 보충의 목적으로 수입한 물품 및 급여하는 물품은 <u>소모품으로서</u> 정리할 수 있다.</p>	<p><b>제13조(소모품으로 정리하는 물품)</b> —  _____</p> <p>_____ <u>공급</u> _____ <u>소모품으로</u>  _____.</p>
<p><b>제14조(물품의 가격)</b> 물품의 가격은 다음 구분에 의한다.</p> <p>1. ~ 4. (생략)</p> <p>5. <u>관리전환에 의한</u> 물품은 그 인계서의 기재액</p> <p>6. <u>제1호 내지 제5호에</u> 해당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 가격이 불분명한 것은 견적가격</p> <p>7. <u>제1호 내지 제5호의 물품으로서</u> 그 가격이 장부에 최초 등재후 현저하게 오르거나 내렸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이 정하는 추정가격</p>	<p><b>제14조(물품의 가격)</b> _____  _____ 따른다.</p> <p>1. ~ 4. (현행과 같음)</p> <p>5. <u>관리전환</u> _____  _____</p> <p>6. <u>제1호부터 제5호까지</u> _____  _____</p> <p>7. <u>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물품으로</u> —  _____ <u>등재 후</u> _____  _____</p>
<p><b>제15조(잔품의 이월)</b> 물품출납원은 연도 말 현재의 물품에 대하여는 이월의 출납 명령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다음 연도의 동일품목에 이월하여야 한다.</p>	<p><b>제15조(잔품의 이월)</b> _____  _____ <u>대해서</u> _____  _____.</p>

현행	개정안
<p><b>제16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b></p> <p>① <u>물품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한 후 소요기관이 없는 때와 입산물, 축산물 기타 생산물을 매각하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불용결정 통보서에 의거 교육감의 결재를 받아 불용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u>물품으로서</u>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것</li> <li>2. ~ 4. (생략)</li> <li>5. 시설물에서 제거된 <u>물품으로서</u> 활용할 수 없는 물품</li> <li>6. (생략)</li> <li>7. 수선을 요하는 <u>물품으로서</u>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li> <li>8. 제1호 내지 제7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li> </ol> <p>② <u>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용품의 소요조회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소요조회를 생략할 수 있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 3. (생략)</li> </ol>	<p><b>제16조(물품의 불용결정과 불용품의 소요조회)</b> ① <u>—————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과 입산물, 축산물, 그 밖의</u></p> <p>—————</p> <p>————— <u>경우</u>————— 불용결정 통보서에 <u>—————</u></p> <p><u>불용</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 물품으로</u> —————</li> <li>2. ~ 4. (현행과 같음)</li> <li>5. <u>————— 물품으로</u> —————</li> <li>6. (현행과 같음)</li> <li>7. <u>————— 물품으로</u> —————</li> <li>8. <u>제1호부터 제7호까지</u>—————</li> </ol> <p>② <u>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불용품 중 재판매가 가능한 물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소요조회를 생략할 수 있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 3. (현행과 같음)</li> </ol>

현 행	개 정 안
<p>4.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합이 비경제적인 물품</p> <p>5. 기타 내구년수가 초과된 물품으로 재활용이 비경제적인 물품</p> <p>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용품의 소요조회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동일 도(시·군 포함)와 정부 각 부처, 타 시·도에 소요조회는 단위당 물품 취득가격(장부가격기준)이 <u>10백만원 이상인 경우</u></p> <p>2. 동일 도(시·군 포함)에 소요조회는 단위당 물품취득가격(장부가격기준)이 <u>10백만원미만인 경우</u></p> <p>〈신 설〉</p> <p>제17조(불용품의 매각) 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용품매각처분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매각 처분하여야 한다.</p> <p>1. ~ 3. (생 략)</p>	<p>4. <del>물품으로</del></p> <p>5. <u>그 밖에 내용연수</u></p> <p>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p> <p>1. <u>1천만원 이상인</u></p> <p>2. <u>1천만원 미만인 경우</u></p> <p>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불용품의 소요조회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또는 분청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p> <p>제17조(불용품의 매각) ① <del>물품으로</del> 따라 <del>각 호의 어느 하나</del> 매각처분하여야 <del>한다</del>.</p> <p>1. ~ 3.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처분을 하였을 때는 물품출납원은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그 대금이 완납된 후 수령증을 받고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p> <p>③ 물품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1의 방법으로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p> <p>1. (생략)</p> <p>2. 2이상 물품의 총량</p> <p>3.·4. (생략)</p> <p>④ 불용품을 처분하는 때에는 시가를 참작하여 그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총량 중 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1천만원 이상인 물품에 대하여는 영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의 감정평가액을 참작하여야 한다.</p> <p>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기관에서 감정을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감정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 상대방 또는 제3자로부터 직접 조사한 견적가격 또는 거래실례가격에 의하여 결정한다.</p>	<p>② _____ 따라 _____</p> <p>_____</p> <p>_____.</p> <p>③ _____ 각 호의 어느 하나 _____</p> <p>_____.</p> <p>1. (현행과 같음)</p> <p>2. 둘 이상 _____</p> <p>3.·4. (현행과 같음)</p> <p>④ _____</p> <p>_____.</p> <p>_____ 장부상 _____</p> <p>_____ 물품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_____</p> <p>_____.</p> <p>⑤ _____ 감정기관에서 _____</p> <p>_____</p> <p>_____</p> <p>_____ 따라 _____</p> <p>_____.</p>

현행	개정안
<p>⑥·⑦ (생략)</p> <p>⑧ 불용품의 매각처분은 <u>년2회(4월, 9월)이상</u> 실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 매각처분할 수 있다.</p> <p><b>제18조(불용품의 폐기)</b> ①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물품관리관이 규칙이 정하는 <u>불용품폐기(해체)조서</u>를 작성하고 이를 소각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처분은 물품관리관이 지정하는 공무원의 <u>입회</u>하에 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의 불용품폐기조서는 <u>물품출납원명령</u>으로 한다.</p> <p><b>제19조(보관의 구분)</b> ① 물품은 <u>보관상</u> 이를 재고품·공용품의 2종으로 구분한다.</p> <p>② <u>공용품</u>중 각자 전용하는 것은 <u>전용품</u>으로 공동 사용하는 것은 <u>공용품</u>으로 한다.</p> <p><b>제20조(보관책임)</b> ① (생략)</p> <p>② 제1항의 <u>전용품</u>에 대하여는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전용자로부터 규칙이 정하는 공차증을 받아야 한다.</p> <p>③ (생략)</p>	<p>⑥·⑦ (현행과 같음)</p> <p>⑧ ----- <u>연 2회(4월, 9월) 이상</u> ----- . ----- .</p> <p><b>제18조(불용품의 폐기)</b> ① ----- ----- <u>불용품폐기(해체)조서</u>를 작성 후 ----- .</p> <p>② ----- <u>따른</u> ----- ----- <u>참관</u> ----- .</p> <p>③ ----- <u>물품출납명령</u>으로 본다.</p> <p><b>제19조(보관의 구분)</b> ① ----- <u>보관상</u> ----- .</p> <p>② <u>공용품</u> 중 ----- <u>전용품</u>으로, ----- .</p> <p><b>제20조(보관책임)</b> ① (현행과 같음)</p> <p>② ----- <u>전용품</u>은 ----- ----- .</p> <p>③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b>제21조(일시보관)</b> ① 물품출납원은 물품의 보관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육감, 교육장 또는 관서의 장의 결재를 받아 금고 기타 신용이 확실한 자에게 물품을 일시 보관시킬 수 있다.</p> <p>② 물품출납원은 물품을 일시보관할 때에는 물품수탁서를 받은 다음 수취인에게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p> <p><b>제22조(물품의 망실·훼손 보고)</b> ① 분임 물품출납원 또는 전용자는 <u>그 보관의</u> 물품을 망실·훼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사유를 상세히 기입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물품출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자의 <u>보관물품으로써</u> 분임물품출납원으로부터 교부받은 것일 때에는 그 분임 물품출납원을 경유하여야 한다.</p> <p>② (생략)</p> <p>③ 물품출납원은 <u>그 보관의</u> 물품을 망실·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상세히 기입하여 교육감, 교육장 또는 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④ 관서의 장이 물품출납원으로부터 제2항 및 제3항의 보고서를 받았을 때에 제1관서에 있어서는 <u>교육감에게</u> 제2관서에</p>	<p><b>제21조(일시보관)</b> ① _____</p> <p>_____</p> <p>_____</p> <p>_____ <u>금고, 그 밖의</u> _____</p> <p>_____.</p> <p>② <u>제1항에 따라</u> _____</p> <p>_____.</p> <p><b>제22조(물품의 망실·훼손 보고)</b> ① _____ <u>보관</u> _____</p> <p>_____</p> <p>_____.</p> <p>_____ <u>보관물품으로써</u> _____</p> <p>_____.</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_____ <u>보관</u> _____</p> <p>_____</p> <p>_____.</p> <p>④ _____</p> <p>_____</p> <p>_____ <u>교육감에게</u>.</p>

현행	개정안
<p>있어서는 교육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p> <p><b>제23조(물품보관자의 변상책임) ① 교육</b>  <b>감</b>은 제22조의 보고를 받았을 경우 사실을 조사하여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인정하였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p> <p>1. 물품을 망실하였을 때에는 대품을 납입시키거나 또는 상당한 <u>가액</u> 변상시킨다.</p> <p>2. 물품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물품을 수리하거나 또는 수리비용을 변상시킨다. 다만,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호의 예에 의한다.</p> <p>② (생략)</p> <p><b>제24조(물품출납원의 장부) ①</b> 물품출납원 및 분임물품출납원은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거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p> <p>1. ~ 3. (생략)</p> <p><u>4. 소모품대장</u></p> <p>5. (생략)</p> <p>② (생략)</p>	<p>-----  -----.</p> <p><b>제23조(물품보관자의 변상책임) ① 교육</b>  <b>감 및 교육장</b>-----  -----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보관책임자에게 -----.</p> <p>1. -----  ----- <u>가액</u> -----  -----.</p> <p>2. -----  -----  -----  ----- 따른다.</p> <p>② (현행과 같음)</p> <p><b>제24조(물품출납원의 장부) ①</b> -----  -----  ----- 따라 -----  -----.</p> <p>1. ~ 3. (현행과 같음)</p> <p><u>4. &lt;삭제&gt;</u></p> <p>5.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이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부를 비치할 수 있다.</p>	<p>③ <del>————— 따른 장부 이외에</del> <del>—————</del>.</p>
<p>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하는 장부의 내용을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전산입력 처리로 장부비치를 갈음한다.</p>	<p>④ <del>————— 따라</del> <del>—————</del> <del>—————</del> <del>—————</del>.</p>
<p><b>제25조(표준서식의 작성)</b> 비품관계 장표를 제외한 장부는 <u>매년도별로</u>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기재사항이 적은 장부는 연도 구분을 명백히 하여 구장부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p>	<p><b>제25조(장부의 작성)</b> <del>—————</del> <del>————— 매년도별로</del> <del>—————</del> <del>—————</del> <del>—————</del>.</p>
<p><b>제27조(물품출납사무의 검사)</b> ① 영 제 90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출납원의 장부 검사는 <u>물품관리관이</u> 관서의 경우에는 관서의 장이 하여야 한다.</p>	<p><b>제27조(물품출납사무의 검사)</b> ① <del>—————</del> <del>————— 따른</del> <del>—————</del> <del>————— 물품관리관이.</del> <del>—————</del> <del>—————</del>.</p>
<p>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육감, 교육장 또는 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u>소속직원중에서</u> 검사원을 임명하여 물품의 출납사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p>	<p>② <del>—————</del> <del>—————</del> <del>————— 소속 직원 중에서</del> <del>—————</del> <del>—————</del>.</p>
<p><b>제28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b> ① 제27조의 검사를 집행함에 있어서 검사를 받은 물품출납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p>	<p><b>제28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참관)</b> ① <del>—————</del> <del>————— 받을</del> <del>—————</del> <del>—————</del></p>

현 행	개 정 안
<p>검사원은 <u>소속직원중에서</u> 지정한 자로 하여금 <u>입회</u>하게 하여야 한다.</p> <p>② 물품의 매입·수리·수선·기타의 검사 또는 검수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행하고 회계부서 관계공무원이 <u>입회</u>한다. 다만,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경리관이 따로 <u>견수</u> 또는 <u>검수</u>자를 지정할 수 있다.</p> <p>③ (생략)</p>	<p>----- <u>소속 직원 중에서</u> -----  ----- <u>참관</u> -----.</p> <p>② ----- <u>그 밖의</u> -----  -----  ----- <u>참관</u> -----.</p> <p>----- <u>검사</u> -----.</p> <p>③ (현행과 같음)</p>
<p><b>제29조(물품검사서)</b> ① 검사원은 제27조 및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u>의하여</u>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한 물품검사서를 2통 작성하고 1통을 <u>당해</u> 물품출납원 또는 <u>입회자</u>에게 교부하고 다른 1통은 교육감, 교육장 또는 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의 검사서에는 검사원과 <u>당해</u> 물품출납원 또는 <u>입회자</u>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p>	<p><b>제29조(물품검사서)</b> ① -----  ----- <u>따른</u> -----  -----  ----- <u>2부</u> 작성하여, 1부는 <u>해당</u> ----- <u>참관자</u> -----  ----- <u>1부</u>는 -----  -----.</p> <p>② ----- <u>해당</u> -----  ----- <u>참관자</u> -----  -----.</p>
<p><b>제31조(물품출납사무의 인계)</b> 물품출납원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인계자는 발령일로부터 <u>5일</u>이내에 그 사무를 인수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p>	<p><b>제31조(물품출납사무의 인계)</b> -----  ----- <u>변경</u> -----  ----- <u>5일</u> 이내에 -----  -----.</p>
<p><b>제32조(인계의 절차)</b> ① 제31조의 규정에 <u>의한</u> 인계를 할 때에는 <u>인계전일</u>로서</p>	<p><b>제32조(인계의 절차)</b> ① -----  <u>따른</u> ----- <u>인계 전일</u>로서</p>

현 행	개 정 안
<p>물품출납부를 마감하여 인계연월일을 기입하고 인계인수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p> <p>② 인계자는 인계할 장부목록 3통과 물품 재고내역을 작성하여 인수자의 입회하에 수수한 후 현 재고내역 및 목록에 수수 연월일과 "수수를 필하였음"이라고 기재 하여 인계인수자가 연서 날인한 후 각 1통씩 보관하고 1통은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한 물품출납원 사무인계보고서를 작성 교육감, 교육장 또는 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b>제33조(타직원에 의한 인계)</b> 물품출납원이 사망 기타의 사고로 말미암아 본인이 인계할 수 없을 때에는 교육감, 교육장 또는 관서의 장이 그 소속 직원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인계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p> <p><b>제34조(기구개편에 수반하는 사무인계)</b> 물품출납원은 기구개편으로 인하여 그에 속하는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소속을 달리할 때에는 제31조 내지 제33조의 규정에 준하여 인계하여야 한다.</p>	<p>----- ----- -----</p> <p>② ----- 장부목록과 물품 재고내역을 3부 ----- <u>참관</u> ----- ----- ----- ----- 1부씩 ----- 1부는 ----- ----- <u>사무인계보고서</u>에 첨부하여 ----- -----</p> <p><b>제33조(다른 직원에 의한 인계)</b> ----- ----- <u>사망, 그 밤의 사고로</u> ----- ----- ----- <u>직원 중에서</u> ----- ----- ----- <u>따른</u> -----</p> <p><b>제34조(기구개편에 수반하는 사무인계)</b> ----- ----- ----- <u>제31조부터 제33조까지</u> ----- -----</p>

## ▣ 규 칙 안

- 경상북도의회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경상북도의회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장 대 진  
2015년 6월 26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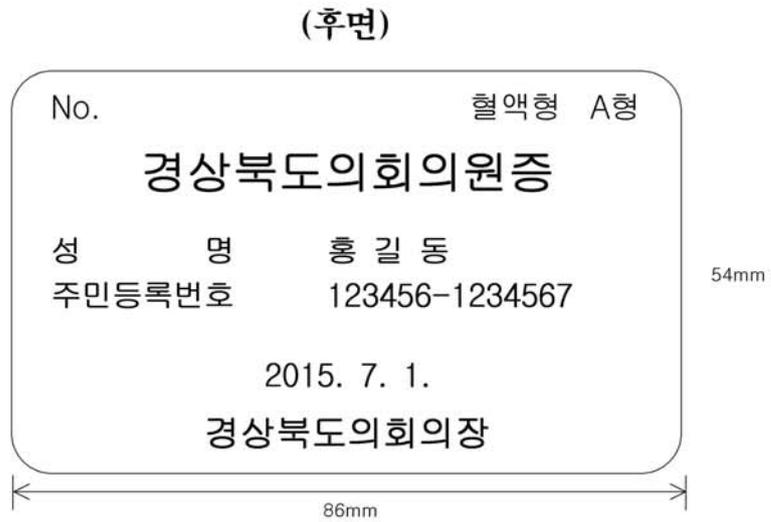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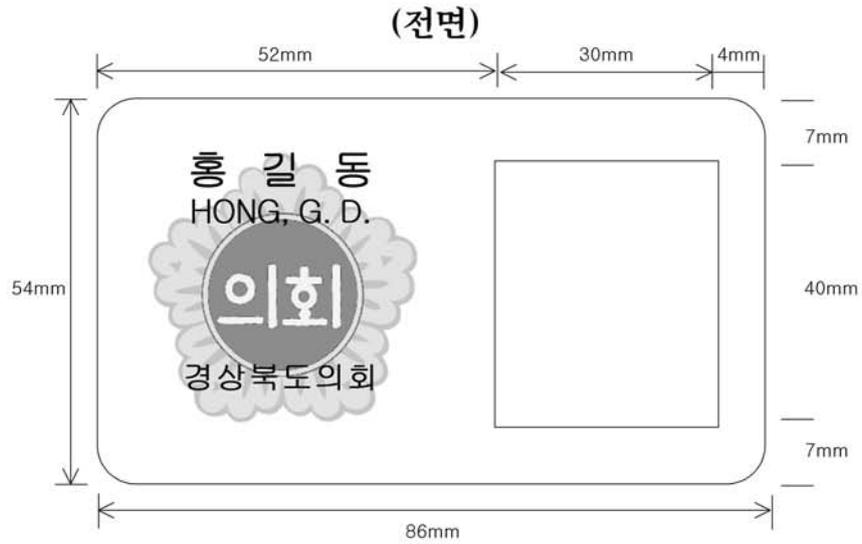
### 경상북도의회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경상북도의회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주) 1. 사진규격 등

- ① 사진(30mm × 40mm)
- ② 한글성명
- ③ 영문성명 : 이름은 처음 글자만 표기(예 : HONG, G. D.)

2. 글자의 크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구 분	글자의 크기	글자의 종류
한글성명(전면)	18포인트	굴림체(진하게)
영문성명(대문자)	12포인트	신명태고딕체
경상북도의회	16포인트	굴림체(진하게)
발급번호, 혈액형	12포인트	굴림체
경상북도의회의원증	16포인트	굴림체(진하게)
성명, 주민등록번호, 발급일자	12포인트	굴림체
경상북도의회의장	14포인트	굴림체(진하게)

3. 지질은 인쇄용지 190g/m<sup>2</sup> 또는 P.V.C로 한다.

4. 지질로 인쇄한 경우 P.V.C(투명한 것)로 포장한다.

## 二 예 · 결산안

- 2015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 2014회계연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 2014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15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예산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장 대 진  
 2015년 6월 26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2015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 세입예산 총괄

(단위 : 백만원, %)

과 목	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 감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합 계	3,846,802	100.0	3,555,772	100.0	291,030	8.2
이전수입	3,268,187	85.0	3,148,352	88.5	119,835	3.8
중이양정부 이전수입	2,879,434	74.9	2,781,852	78.2	97,581	3.5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383,705	10.0	365,960	10.3	17,744	4.8
기타이전수입	5,048	0.1	539	0.0	4,509	836.1
자체수입	46,807	1.2	37,133	1.0	9,674	26.1
교수-학습 활동수입	27,037	0.7	27,037	0.8	0	0.0
행정활동수입	920	0.0	842	0.0	78	9.3
자산수입	2,911	0.1	1,007	0.0	1,904	189.0
이자수입	8,234	0.2	8,234	0.2	0	0.0
금융자산회수	0	0.0	0	0.0	0	순증
기타수입	7,704	0.2	13	0.0	7,691	60,158.4
차입	395,258	10.3	327,181	9.2	68,077	20.8
지방교육채	395,258	10.3	327,181	9.2	68,077	20.8
기타	136,550	3.5	43,106	1.2	93,444	216.8
전년도이월금	136,550	3.5	43,106	1.2	93,444	216.8

□ 세출예산 총괄

(단위 : 백만원, %)

사업별(부문, 정책)	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 감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b>합 계</b>	<b>3,846,802</b>	<b>100.0</b>	<b>3,555,772</b>	<b>100.0</b>	<b>291,030</b>	<b>8.2</b>
<b>유아 및 초중등교육</b>	<b>3,696,658</b>	<b>96.1</b>	<b>3,422,134</b>	<b>96.2</b>	<b>274,525</b>	<b>8.0</b>
인적자원운용	1,825,029	47.4	1,816,958	51.1	8,071	0.4
교수-학습 활동지 지원	192,078	5.0	137,261	3.9	54,816	39.9
교육복지지원	376,554	9.8	322,448	9.1	54,105	16.8
보건/급식/동 체육활동	29,942	0.8	13,929	0.4	16,014	115.0
학교계정리 지원관	862,505	22.4	852,118	24.0	10,388	1.2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	410,550	10.7	279,420	7.9	131,130	46.9
<b>평생·직업교육</b>	<b>5,923</b>	<b>0.2</b>	<b>4,406</b>	<b>0.1</b>	<b>1,517</b>	<b>34.4</b>
평생교육	5,512	0.1	3,995	0.1	1,517	38.0
직업교육	411	0.0	411	0.0	0	0.0
<b>교육일반</b>	<b>144,220</b>	<b>3.7</b>	<b>129,233</b>	<b>3.6</b>	<b>14,988</b>	<b>11.6</b>
교육행정일반	31,075	0.8	28,824	0.8	2,251	7.8
기관운영관리	58,907	1.5	46,126	1.3	12,781	27.7
지방채상환 리스크	37,854	1.0	39,762	1.1	△1,907	△4.8
예비비 및타	16,384	0.4	14,521	0.4	1,863	12.8

□ 수정가결 : 수정조서 붙임

2015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수 정 조 서

【 삭감조서 】

(단위 : 천원)

쪽	소관부서	내용(부기)	요구예산액	수정예산액	감 액	비 고
	합계		1,235,610	700,000	△535,610	
238	중등교육과	중등미술교과연구회전	10,000	0	△10,000	
404	포항교육지원청	수업분석용영상기기구입	101,000	0	△101,000	
609	체육건강과	급식학교노후기구교체 (공립초등학교)	1,000,000	700,000	△300,000	
782	공보관	홍보사전데이터베이스구축	83,000	0	△83,000	
841	학교지원과	사립학교사무직원자체연수	38,610	0	△38,610	
887	총무과	청사이전위원참석수당	1,000	0	△1,000	
887	총무과	청사환경구성공모포상금	2,000	0	△2,000	

【 증액조서 】

(단위 : 천원)

쪽	소관부서	내용(부기)	요구예산액	수정예산액	증 액	비 고
	합계		1,766,585	2,302,195	535,610	
910	기획조정관	예비비	1,766,585	2,302,195	535,610	

2014회계연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장 대 진  
2015년 6월 26일

2014회계연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총괄

(단위 : 백만원)

회 계 명	예 산 현 액 (A)	결 산 액			잉 여 금 내 역			
		세 입 (B)	세 출 (C)	차인잔액 (B-C)	이월액	국 고 보 조 금 집행잔액	순세계 잉여금	
합 계	7,641,718	7,873,218	6,947,010	926,208	344,981	20,954	560,273	
일 반 회 계	6,493,076	6,704,948	5,999,393	705,555	343,290	15,384	346,881	
특 별 회 계	1,148,642	1,168,270	947,617	220,653	1,691	5,570	213,392	
공 기 업 특 별 회 계	532,178	562,639	364,238	198,401	0		198,401	
기 타 특 별 회 계	소 계	616,464	605,631	583,379	22,252	1,691	5,570	14,991
	의료급여기금	463,440	452,122	447,799	4,323	0	5,570	△1,247
	치수사업	45,225	44,842	40,181	4,661	1,551		3,110
	경북도립대학	9,650	9,661	9,479	182	0		182
	광역교통시설	9,900	9,449	9,239	210	0		210
	원자력발전지역	58,891	59,703	47,424	12,279	140		12,139
	학교용지부담금	29,358	29,854	29,257	597	0		597

2014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장 대 진  
2015년 6월 26일

2014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 경상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총괄

(단위 : 백만원)

회 계 명	예 산 현 액 (A)	결 산 액			잉 여 금 내 역		
		세 입 (B)	세 출 (C)	차인잔액 (B-C)	이월액	지방채 상 환	순세계 잉여금
특별회계	3,977,213	4,010,413	3,668,104	342,309	184,314	21,445	136,550

## 二 동의·승인안

- 2015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2015년도 수시분(2차)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15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장 대 진  
2015년 6월 26일

2015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취득재산 67,373,332천원
  - 토지 : 14,000m<sup>2</sup> 2,000,000천원( 1건)
  - 건물 : 28,048m<sup>2</sup> 65,373,332천원(15건)
- 마이스터고 지정에 따른 부지매입( 1건)
  - 영천상업고등학교 14,000m<sup>2</sup>(약 4,200평) 2,000,000천원
- 통폐합 및 마이스터고 지정 등에 따른 교사동 증·개축(3건)
  - 금천초등학교 연면적 4,069m<sup>2</sup> 9,473,458천원  
(본관, 부속동 및 강당 개축)
  - 영천상업고등학교 연면적 3,405m<sup>2</sup> 8,001,260천원  
(실습동 및 생활관 증축)
  - 한국원자력마이스터고 연면적 2,832m<sup>2</sup> 6,701,407천원  
(후관동 개축)
- 안전체험관 신축 (1건)
  - 학생종합안전체험관 연면적 4,020m<sup>2</sup> 8,900,000천원

○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권장시설(11건)

- 용강초 다목적강당(증축)	연면적 1,308m <sup>2</sup>	3,059,020천원
- 원호초 다목적강당(증축)	연면적 969m <sup>2</sup>	2,914,888천원
- 형일초 다목적강당(증축)	연면적 969m <sup>2</sup>	2,245,445천원
- 야은초 다목적강당(증축)	연면적 969m <sup>2</sup>	2,637,097천원
- 군위초 다목적강당(개축)	연면적 880m <sup>2</sup>	2,036,490천원
- 청송초 다목적강당(증축)	연면적 880m <sup>2</sup>	2,297,000천원
- 풍기중 다목적강당(증축)	연면적 969m <sup>2</sup>	2,451,000천원
- 구미고 생활관(증축)	연면적 1,210m <sup>2</sup>	2,622,646천원
- 상산전자고 급식소 및 생활관(증축)	연면적 1,300m <sup>2</sup>	3,000,000천원
- 사동고 생활관(증축)	연면적 2,268m <sup>2</sup>	4,833,621천원
- 한국원자력마이스터고 교직원연립사택 (신축)	연면적 2,000m <sup>2</sup>	4,200,000천원

□ 처분재산 7,310,143천원

- 토지 : 80,065m<sup>2</sup> 6,156,089천원
- 건물 : 5,544m<sup>2</sup> 1,012,025천원
- 공작물 : 61식 137,577천원
- 입목죽 : 83주 4,452천원

○ 폐교재산 매각 (3건)

- 청동초등학교(상주시)	15,051m <sup>2</sup> (4,560평)	3,059,020천원
- 야성초등학교(영덕군)	9,458m <sup>2</sup> (2,866평)	2,914,888천원
- 봉화중봉성분교(봉화군)	10,909m <sup>2</sup> (3,305평)	2,245,445천원

○ 일반재산 매각 (2건)

- 이동중학교 강당부지(포항시)	2,830m <sup>2</sup> (857평)	3,412,718천원
- 울릉학생체육관 부지(울릉군)	1,806m <sup>2</sup> (547평)	1,170,000천원

2015년도 수시분(2차)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장 대 진  
2015년 6월 26일

**2015년도 수시분(2차)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① 『경북 북부권 환경에너지 종합타운』 부지 및 건물 취득
  - 취득재산(위치) :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1210번지 일원
  - 사업규모 : 부지면적 67,093㎡, 건물 연면적 23,301㎡  
(지상 4층, 지하 2층)
  - 사 업 비 : 183,264백만원(국비 60,329, 도비 22,208,  
민자 92,253, 기타 8,474)
  - 사업기간 : 2014. 1. ~ 2018. 3.
  - 사업방식 : 민간제안방식(BTO)
  
- ② 『구미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에 따른 산업시설용지 매입
  - 취득재산(위치) : 구미하이테크밸리(구미 국가5산업단지)  
7-1-1블럭
  - 사업규모 : 53,932㎡(총면적 269,660㎡의 20%)  
※ 총면적 : 269,660㎡(국 161,796, 도 53,932, 시 53,932)
  - 사 업 비 : 14,109백만원(총사업비 70,545백만원의 20%)  
※ 총사업비 : 70,545백만원(국 42,327, 도 14,109, 시 14,109)
  - 사업기간 : 2014. 12. ~ 2016. 12.

- ③ 『경주술거미술관』 기부채납에 의한 건물 취득
- 취득재산(위치) : 경주시 경감로 614(경주세계문화엑스포공원 내)
  - 사업규모 : 1,566㎡(지상 2층, 지하 1층)
  - 기 부 자 : 재단법인 문화엑스포
  - 취득가액 : 2,500백만원(재산가액 5,000백만원의 50%)
- ④ 『경북도립대학교 기숙사』 건물 신축
- 취득재산(위치) : 예천군 예천읍 도립대학길 114(대학부지 내)
  - 사업규모 : 건물 연면적 1,817㎡(지상 2층, 지하 1층), 40실 (156명 수용)
  - 사 업 비 : 4,200백만원(도비 100%)
  - 사업기간 : 2015. 9. ~ 2017. 2.
- ⑤ 『국가 가축 유전자원센터』 건물 신축
- 취득재산(위치) : 영주시 안정면 대룡산로 186(축산기술연구소 내)
  - 사업규모 : 건물 연면적 2,130㎡(건물 4개동)
  - 사 업 비 : 2,475백만원 (국비 100%)
  - 사업기간 : 2015. 5. ~ 12.
- ⑥ 『한해성 특화품목 양식시설 건립』 신축 건물 취득
- 취득재산(위치) : 영덕군 병곡면 고래불로 178(수산자원연구소 내)
  - 사업규모 : 건물 연면적 1,997㎡(건물 3개동)
  - 사 업 비 : 7,000백만원(국비 50% 도비 50%)
  - 사업기간 : 2014. 1. ~ 2016. 4.

⑦ 폐천부지 매각

- 처분재산(위치) : 구미시 고아읍 대망리 822-118
- 처분면적 : 5,259㎡(전)
- 기준가격 : 224백만원(개별공시지가 기준)
  - ※ 매수신청자 : 강시화(구미시 고아읍 대망리 217) /  
대부기간 : '06. 11. 1. ~ '16. 10. 31.

□ 총괄표

(단위 : m<sup>2</sup>, 천원)

구 분		건 수	수 량	금 액	비 고	
취 득	계	토지 건물 기타	2 5	121,025 30,801	36,316,879 177,231,000	
	1. 매 입	토지 건물 기타	2 3	121,025 5,944	36,316,879 13,675,000	
	2. 교 환	토지 건물 기타				
	3. 기타취득	토지 건물 기타	2	24,857	163,556,000	
처 분	계	토지 건물 기타	1	5,259	224,033	
	4. 매 각	토지 건물 기타	1	5,259	224,033	
	5. 교 환	토지 건물 기타				
	6. 기타처분	토지 건물 기타				

## □ 취득대상 재산목록

(단위 : 천원)

연번	재산소재지	목적	용도	사업기간 (취득시기)	소요예산	사업규모	기준가격 명세 (산출내역)	계약방법	비고
1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1210 일원	경북 북부권 생활 폐기물 처리시설 부지 확보	경북 북부권 환경에너지 종합타운	2014. 1. ~ 2018. 3. (2018. 3.)	22,207,783	67,063㎡	67,063㎡ × 331천원/㎡ = 22,207,783	수의계약	부지매입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1210 일원	경북 북부권 생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경북 북부권 환경에너지 종합타운	2014. 1. ~ 2018. 3. (2018. 3.)	161,056,000	연면적 23,301㎡ (지상 4층, 지하 2층)	23,301㎡ × 6,912천원/㎡ = 161,056,000	민간계산 사업 (BTO)	건물신축 (민간계산사업에 의한 취득)
2	구미하이테크밸리 7-1-1 블럭	외국인투자기업 유치	외국인 투자 기업에 무상 임대	2014. 12. ~ 2016. 12. (2016. 12.)	14,109,096	53,932㎡	53,932㎡ × 261,609원/㎡ = 14,109,096	수의계약	부지매입
3	경주시 경감로 614	반대성 화배 기동품 및 지역 미술인의 작품 전시	미술관	(2015. 6.)	2,500,000	연면적 1,556㎡ (지상 2층, 지하 1층)	1,556㎡ × 3,214천원/㎡ × 1/2(도 지분율) = 2,500,000	수의계약	기부채난 (도 및 경주시 공동 취득)
4	예천군 예천읍 도립대학길 114	학생의 충분한 수용을 위한 기숙사 신축	공동주택 (기숙사)	2015. 9. ~ 2017. 2. (2017. 2.)	4,200,000	연면적 1,817㎡ (지상 2층, 지하 1층)	1,817㎡ × 2,312천원/㎡ = 4,200,000	제한경쟁 입찰	건물신축
5	영주시 안평면 대룡산로 186	주요 종족 및 유전자원 분산 및 보존	국가 가족 유전자원센터	2015. 5. ~ 2015. 12. (2015. 12.)	2,475,000	연면적 2,130㎡ (건물 4층)	2,130㎡ × 1,162천원/㎡ = 2,475,000	제한경쟁 입찰	건물신축
6	영덕군 병곡면 고래밭로 178	한해성 아차원의 인공포도 생산기술 개발	한해성 특화 품목 양식 시설	2014. 1. ~ 2016. 4. (2016. 4.)	7,000,000	연면적 1,997㎡ (건물 3층)	1,997㎡ × 3,506천원/㎡ = 7,000,000	제한경쟁 입찰	건물신축
7	구미시 고아읍 대망리 822-118	폐천부지 매각	폐천부지 매각	2015. 8.	224,033	5,259㎡	5,259㎡ × 42,600원/㎡ = 224,033	수의계약	개발공시 지가 기준

# 의정 활동 보고서

(제278회 정례회)



2015. 9. 인쇄 / 2015. 9. 발행

발행 / 경상북도의회

편집 / 의사담당관실

전화 : 602-5146

FAX : 602-5140



<비매품>